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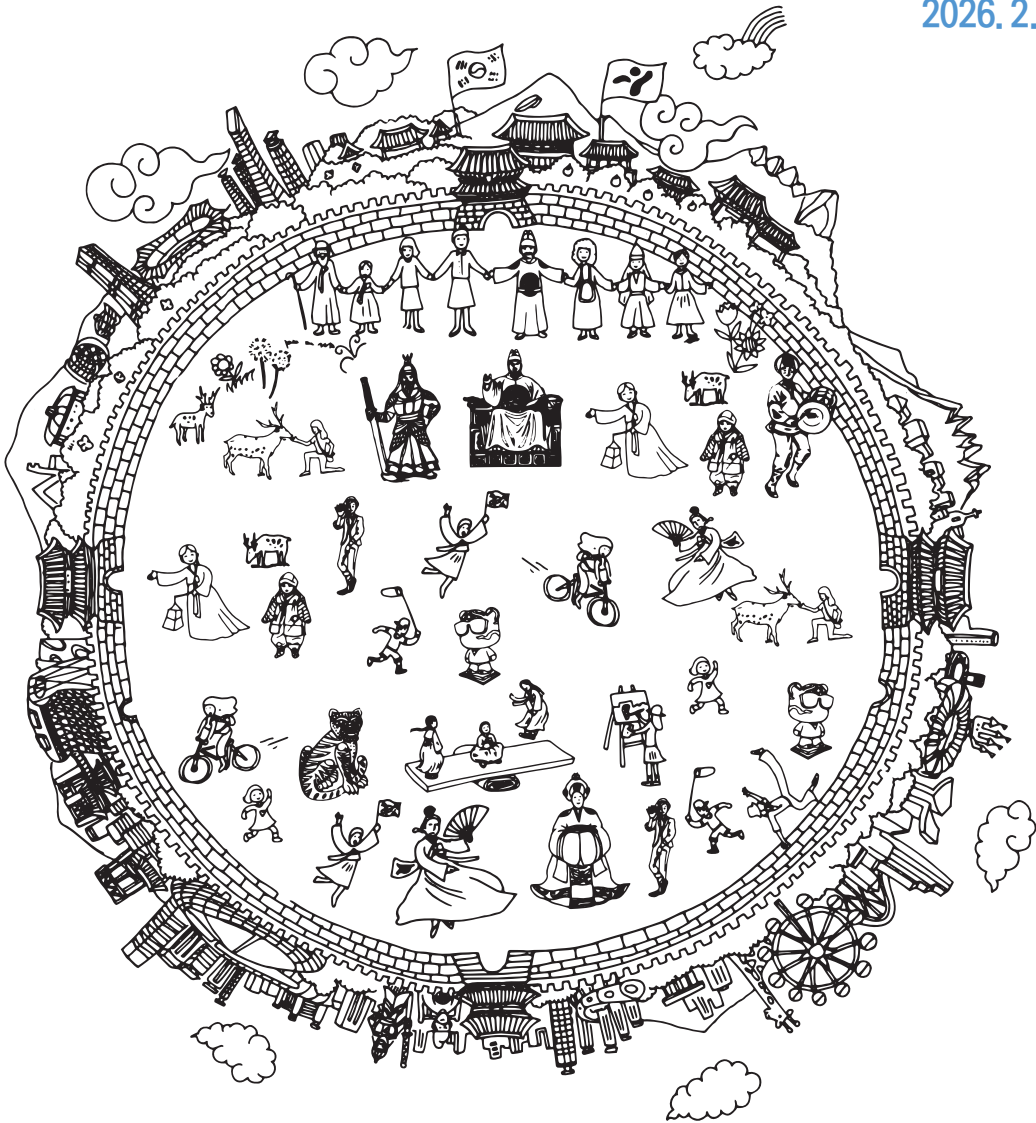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4127호
2026. 2. 19.(목)



목 차

◆ 자치법규 등

[입법예고]

제2026-527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3
제2026-488호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9

◆ 고 시

제2026-79호	매현시민의숲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2
제2026-81호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38
제2026-84호	서초구 양재동 산17-7일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지구계획 승인(변경) 고시	41
제2026-85호	서초구 양재동 산17-7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변경) 고시	43
제2026-86호	여의도 공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44
제2026-87호	도시관리계획(명동관광특구 등 63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45
제2026-90호	도시관리계획(온수역일대 지구단위계획, 한주물류센터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98
제2026-88호	청과 제1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해제(일몰) 기한 연장 고시	116

◆ 공 고

제2026-517호	도시관리계획(동부화물터미널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117
제2026-530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119

◆ 서울특별시교육청

[입법예고]

제2026-57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기록관 운영 규정 폐지규정안」 입법예고	120
-----------	---------------------------------------	-----

◆ 구 고 시

제2026-28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변경)작성 취소 고시(성북구)	122
제2026-24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사업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강서구)	124
제2026-22호	영등포구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영등포구)	126

◆ 구 공 고

제2026-183호	서소문역사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중구)	129
제2026-29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완료 공고(강북구)	147
제2026-285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 열람 변경공고 (마포구)	210

◆ 사업소고시

제2026-5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213
제2026-5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213

◆ 기 타

제2026-6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214
-----------	--------------------------	-----

자치법규 등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527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2월 19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 가. 한강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신규 스포츠 종목에 대한 시민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한강공원 내 피클볼장을 도입하기 위한 이용 기준을 추가하고
- 나. 장기간 조례 미개정과 제도·이용 환경 변화로 인해 일부 조문의 해석상 혼선이 발생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명확히 하고 법적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미운영·미설치 등으로 실효성이 없는 ‘기타 선박’, ‘야외원형극장’ 및 타 요금제 적용 가능한 ‘야외무대 사용’ 조항 삭제(안 별표 1 제1호 가, 제4호)
- 나. 민간대관 활성화를 위한 ‘여의도 물빛무대’ 요금체계 단순화(안 별표 1 제1호 나)
- 다. ‘서울수상레포츠센터’ 이용료 부과 근거의 시행규칙 반영(안 별표 1 제1호 다)
- 라. ‘테니스장’은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여 문구를 수정하고 신규 시설인 ‘피클볼장’을 추가(안 별표 1 제2호)
- 마. ‘강변물놀이장’을 ‘물놀이장’으로 문구를 수정(안 별표 1 제3호)
- 바. ‘체육행사’에 대한 장소사용료 부과 근거 마련(안 별표 1 제8호)
- 사. 조문 체계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띄어쓰기 및 문구 수정(안 별표 2 제2호)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미래한강본부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미래한강본부 기획예산과(전화: 02-3780-0752, FAX: 02-3780-0740, 이메일: meeya12@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 · 이메일 · 등기우편 · 온라인

- (1) FAX: 02-3780-0740
- (2) E-mail: meeyal2@seoul.go.kr
- (3) 우편: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미래한강본부 기획예산과
-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기획예산과 ☎02-3780-0752)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원이용시설 이용료 및 이용시간(제7조 관련)

1. 수상이용시설

가. 선박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이용시간
한강 르네상스호	1회 승선 · 어린이·청소년(6~18세) · 성 인(19세 이상)	3,000원 5,000원	00:00 ~ 24:00
	1회 대여(운항) · 어린이·청소년(6~18세) · 성 인(19세 이상) - 4시간 이내 운항(70명 기준) 700,000원 - 3시간 이내 운항(70명 기준) 525,000원 - 2시간 이내 운항(70명 기준) 350,000원 정박대여(4시간 이내) 350,000원		

나. 여의도 물빛무대

1) 무대이용료

문화공연	기타 대관	기준
750,000원 (4시간)	1,500,000원 (4시간)	1회사용
※ 무대 설치·준비 및 철수 시간은 제외하고, 실제로 무대에서 공연한 시간만을 기준으로 적용 <신규>		

2) 부속시설 이용료

구 분	내 용
시스템사용료 (조명, 음향, LED 등 일체 시스템 포함)	100만원

다. 서울수상레포츠센터<신설>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비 고
서울 수상 레포츠 센터	수상계류장		일간이용료		월간이용료	1.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이용료는 수탁자 또는 사용허가 대상자와 협의하여 본 조례에서 정하는 이용료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고, 해당 이용료를 공고한다. 2. 체험 프로그램의 이용료는 당일 1인 1회(2시간 이내) 기준이며, 교육 프로그램(10명 이상 신청 시 운영)의 이용료는 1인 기준이며 교육 횟수 및 시간 등은 따로 정한다. 3. 경사면(슬립웨이) 이용료는 당일 왕복 기준의 금액이다. 다만, 계류장 이용료를 납부한 경우 경사면(슬립웨이) 이용료는 면제한다. 4. 그 밖에 규정하지 않은 이용료는 유사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이용료에 준하여 부과한다. 5. 다음 각 목의 경우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가. 풍수해 등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시설물 정비 등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 각종 행사(국제대회, 축제, 공연 등)가 개최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7,000~35,000원		131,000~460,000원	
	육상계류장		일간이용료		월간이용료	
			6,000~18,000원		119,000~302,000원	
	장비보관함		1일	4,000~10,000원		
			1개월	50,000~110,000원		
			1년	280,000~420,000원		
	수상레포츠 프로그램		어린이 (6~12세)	청소년 (13~18세)	성인 (19세 이상)	
	체험	무동력	8,000~30,000원	10,000~36,000원	10,000~48,000원	
		동력	20,000~50,000원			
교육	무동력	40,000~100,000원				
경사면 (슬립웨이)		1일	6,000~20,000원			

2. 체육시설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이용시간
축 구 장	면당 1회 2시간 이내, 단체 독점 사용 시 (조명시설이 설치된 경우 야간 사용 시) 월간 정기사용 시(조조시간에 한하며 1일 2시간 이내 사용)	12,000원 (25,000원) 225,000원	*동절기 (1,2,3,10,11,12월) :07:00~17:00 *하절기 (4월~9월) :06:00~20:00 ※ 조명시설이 설치된 시설의 이 용시간은 동절기 07:00 ~21:00, 하절기 06:00~22:00로 한다.
어 린 이 야 구 장	면당 1회 2시간 이내, 단체 독점 사용 시 월간 정기사용 시(조조시간에 한하며 1일 2시간 이내 사용)	8,000원 120,000원	
성인야구장	면당 1회 3시간 이내, 단체 독점 사용 시	80,000원 (광나루 야구장은 평일 20,000원, 주말 및 공휴일 26,000원)	
배 구 장 축 구 장 농 구 장	면당 1회 2시간 이내, 단체 독점 사용 시 월간 정기사용 시(조조시간에 한하며 1일 2시간 이내 사용)	4,000원 75,000원	
배드민턴장	면당 1회 2시간 이내, 단체 독점 사용 시 월간 정기사용 시(조조시간에 한하며 1일 2시간 이내 사용)	2,000원 30,000원	
테니스장 피클볼장	면당 1회 2시간 이내 - 주중 주간 - 주중 야간시간 및 조조시간(조명 사용 시) - 토요일·공휴일 월간 정기사용 시(조조시간에 한하며 1일 2시간 이내 사용) 1면 1회 10시간 이내 전용사용(체육경기) 시 - 주중 - 토요일·공휴일	8,000원 10,400원 10,400원 120,000원 90,000원 117,000원	06:00~22:00 ※ 주·야간 구분은 절기 등에 따 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국궁장	1일(3시간 이내) 코스체험 1회 1개월	5,000원 5,000원 40,000원	09:00 ~ 19:00
축구교육장	1개월 (월 4회 기준, 1회 50분)	60,000원	09:00 ~ 18:00
이촌 인라인 롤리스케이트장	어린이(6~12세) ·1회 청소년(13~18세) ·1회 성 인(19세 이상) ·1회	1,000원 1,500원 2,000원	09:00 ~ 19:00
파크골프장	어린이(6세 이상 12세 이하) 1회당 청소년(13세 이상 18세 이하) 1회당 성 인(19세 이상) 1회당	2,000원 3,000원 4,000원	06:00~20:00 ※ 절기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 영할 수 있음.
파크골프장 물품대여료	클럽(1회당, 개당)	1,000원	06:00~20:00

3. 휴양시설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이용시간
캠핑장	캠핑장	1박 기준 · 1면당(일반 2인용) · 1면당(일반 4인용) · 1면당(프리 4인용)	15,000원 20,000원 15,000원	14:00 ~ 다음 날 11:00
	글램핑장	1박 기준 · 1면당	100,000원	15:00 ~ 다음 날 11:00
	캠프시설	바비큐 · 1면당(4인용) · 1면당(8인용) · 1면당(12인용)	10,000원 15,000원 20,000원	1차 11:00~16:00 2차 17:00~22:00
		캠프파이어 · 1면당(8인용) · 1면당(15인용)	5,000원 10,000원	1차 17:30~20:00 2차 20:30~23:00
물놀이장	어린이(6~12세) 청소년(13~18세) 성 인(19세 이상)	1,000원 2,000원 3,000원		09:00~20:00
수영장	어린이(6~12세) 청소년(13~18세) 성 인(19세 이상)	3,000원 4,000원 5,000원		09:00~22:00

4. 학습시설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이용시간
기획전시실	기본(5일 이내) 1일 추가 시	200,000원 25,000원	09:00~18:00
강 연 홀	1시간 기준 1일 사용 시	10,000원 100,000원	09:00~18:00

5. 시민편익시설<삭제>

6. 유희시설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이용시간
자전거대여소	1시간 기준 · 1인승 · 2인승 · 다인승(3~4인) · 전기동력 · 기타(유아동승, MTB 등) 추가요금(10분당) · 1인승 · 2인승 · 다인승(3~4인) · 전기동력 · 기타(유아동승, MTB 등)	3,300원 6,600원 20,000원 9,000원 5,000원 500원 1,000원 3,300원 1,500원 1,000원	◦ 3,4,9,10월 : 오전9시~오후6시 ◦ 5월~8월 : 오전9시~오후7시 ◦ 11월~다음해2월 : 오전9시~오후5시
레이싱경기장 MTB 경기장 익스트림장	1회당(4시간 기준) 단체 독점 사용	50,000원	09:00~18:00

7. 공원편의시설(주차장)

구 분	기준 및 이용료				이용시간	비 고
주차요금	1회 주차(1구획)		1일 최대	월정기권	06시 ~24시	1.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및 2일)은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부터 16일까지)은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기본요금	초과 10분당				
여의도 한강공원	최초30분 2,000원	300원	15,000원	여의도샹그라쵸 (4, 5주차장) 80,000원 한강본류호안쪽 (1, 2, 3주차장) 100,000원		
광나루잠실뚝섬잠원반포이촌양화망원난지강서한강공원	최초30분 1,000원	200원	10,000원	50,000원		

※ 여의도한강공원 1, 2, 3, 4, 5주차장 중 2주차장(마포대교 남단, 한강본류호안쪽)의 주차요금은 1일 최대 요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8. 그 밖의 시설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이용시간
영화촬영	1회당 - 주 간 (08:00 ~ 18:00) - 야 간 (18:00 ~ 다음 날 08:00)	130,000원 260,000원	00:00~24:00
녹 화	1시간당 초과시간당	26,000원 13,000원	00:00~24:00
잔디발행사	100명 이상 독점 모임행사는 2시간 기준	30원/1㎡당	00:00 ~ 24:00
도로점용 행 사	5km당(1일 이내) 행사집결지에 대하여는 잔디발행사는 별도로 징수함	50,000원	00:00~24:00
입 장 권 발매행사	입장권을 발매하는 상업성 행사 (체육행사, 콘서트전시회 및 기타공연)	입장권 발매 총액의 10%	
	비 고 : 여의도 물빛무대에서 개최되는 행사에는 10%이내를 징수한다.		
서울함공원	어린이(6~12세) 청소년(13~18세) 성 인(19세 이상) 단 체(20인 이상) - 어린이(6~12세) - 청소년(13~18세) - 성 인(19세 이상)	1,000원 2,000원 3,000원 700원 1,400원 2,000원	◦ 하절기(3~10월) - 평일 10:00~19:00 - 토요일, 공휴일 10:00~20:00 ◦ 동절기(11월~다음해 2월) - 평일 10:00~17:00 - 토요일, 공휴일 10:00~18:00

[별표 2]

이용료 감면범위(제8조 관련)

1. 별표 1의 이용시설

감 면 대 상	감면율(%)
가. 한강의 보전 및 이용과 관련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100
나. 한강의 보전 및 이용과 관련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100 이내
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다만, 동행하는 보호자에 대한 감면 시설 및 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50
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해당 법률에 의한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관련 증서를 제시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으로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 가족증 등 관련 증서를 제시한 사람	50
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증서를 제시한 사람	50 (다만, 별표 1 제2호 체육시설에 한함)
사. 65세 이상의 노인(신분증을 소지한 자에 한함)	50
아. 6세 미만의 영유아(증빙자료 소지한 자에 한함)	50
자.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50
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로 관련 서류를 제시한 사람	50
카. 시장이 인정하는 「한강을 보전·이용하는 공동체활동」 참여자 ※ 한강공동체 활동 참가자 확인증을 소지한 단체에 한함	50 (다만, 별표 1 제6호 유희시설, 제7호 공원편의시설(주차장)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함)
타.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한 교육기관의 장이 추천한 토요일 교외체험학습 참여자 50인 이하(방학기간 제외) ※ 신청서(표준서식 본부 홈페이지 참조) 승인자에 한함	100 (다만, 별표 1 제6호 유희시설, 제7호 공원편의시설(주차장)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함)
파.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으로서 해당 시설장이 신청한 10인 이상 50인 이하 이용자 ※ 신청서(표준서식 본부 홈페이지 참조) 승인자에 한함	50 (다만, 별표 1 제6호 유희시설, 제7호 공원편의시설(주차장)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함)

※ 주차장, 여의도 물빛무대, 한강르네상스호 대여, 서울수상레포츠헤터 감면규정은 별도로 정함

※ 별표 1의 이용시설 중 감면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항목 1개만 적용함

※ 체육시설의 이용료 감면은 팀 구성원 50% 이상의 인원이 감면대상에 해당할 시 적용함

※ 감면은 현장 감면에 한함 (추후 감면 불가)

2. 주차장

감 면 대 상	감면율(%)	비 고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후원하는 행사 차량	100	
나.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100	
다.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제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100	발행일로부터 1년간
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록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80	
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해당 법률에 의한 관련 증서를 제시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3호·제15호,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 사람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사자로서 의사자증을 제시한 경우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로서 독립유공자 유족증을 제시한 경우	80	독립유공자 유족 중 선순위자 50%
바.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이륜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50	
사.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가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50	1시간 범위 내 100%
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 사람	20	
자.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경우	20	
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50	
카. 한강공원을 3시간 초과하여 이용하는 시민의 차량의 경우 3시간 초과시간에 대한 이용료	30	다만, 여의도한강공원 2주차장(마포대교 남단, 한강본류호 안쪽)은 적용 제외
타.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하는 차량	30	
파.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두자녀 이상)	50	

3. 여의도 물빛무대

감 면 대 상	감면율(%)	비 고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사업예산을 후원하는 행사	100 이내	부속시설 사용료에는 적용하지 않음
나.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에서 규정한 교육기관 주관행사(학생단체 주관 포함)	100	
다. 비영리단체 주관 비수익성 행사	100	

4. 한강르네상스호 대여

감 면 대 상	감면율(%)	비고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100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거나 사업예산을 지원하는 행사 등	100 이내	

5. 서울수상레포츠센터

감 면 대 상	감면율(%)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100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100 이내
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다만, 동행하는 보호자에 대한 감면 시설 및 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50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3호·제15호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자	50
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증서를 제시한 자	50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0
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서울특별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을 200시간 초과한 자	30
아.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50

2) 부속시설 이용료

연번	구 분	내 용	비고
1	전기/상하수도	실 이용료	
2	조명설비	가. 일괄 대여 : 10만원 나. 개별 대여(개당) 콘솔 : 3만원 무빙 라이트/뱅크 라이트/스트로브/ 레이저 : 1만원 Par-64 : 1천원	
3	음향설비	가. 일괄 대여 : 22만원 나. 개별 대여(개당) 콘솔 : 5만원, 프로세서 : 3만원, 스피커(1식)/앰프 : 2만원 모니터스피커/CDP/무선마이크 : 1만원 유선마이크 : 5천원	
4	멀티미디어설비	가. 일괄 대여 : 25만원 나. 개별 대여(개당) 콘솔/프로젝터/전면 LED 모듈 : 5만원, 스카이 쉐어(서치라이트)/ 스카이 라이팅 콘솔 : 5만원 레이저/리어스크린 : 3만원	
5	청소요금	청소이행예치금 제도 적용	
6	중계방송	텔레비전(TV): 15만원, 라디오(RADIO):5만원, 인터넷(Internet) : 10만원	

※ 2~4항목 일괄 대여 시 50만원

<신설>

2) 부속시설 이용료

구 분	내 용	
<삭제> 시스템사용료 (조명, 음향, LED 등 일체 시스템 포함)	100만원	<삭제>

<삭제>

다. 서울수상레포츠헤터 <신설>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비 고
	일간이용료	월간이용료	
서울수상레포츠헤터 수상계류장	7,000~35,000원	131,000~460,000원	1.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이용료는 수탁자 또는 사용허가 대상자와 협의하여 본 조례에서 정하는 이용료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고, 해당 이용
육상계류장	일간이용료	월간이용료	

		6,000~18,000원	119,000~302,000원	료를 공고한다.
장비 보관함	1일	4,000~10,000원		2. 체험 프로그램의 이용료는 당일 1인 1회(2시간 이내) 기준이며, 교육 프로그램(10명 이상 신청 시 운영)의 이용료는 1인 기준이며 교육 횟수 및 시간 등은 따로 정한다.
	1개월	50,000~110,000원		
	1년	280,000~420,000원		3. 경사면(슬립웨이) 이용료는 당일 왕복 기준의 금액이다. 다만, 계류장 이용료를 납부한 경우 경사면(슬립웨이) 이용료는 면제한다.
수상 레포츠 프로그램	어린이 (6~12세)	청소년 (13~18세)	성인 (19세 이상)	4. 그 밖에 규정하지 않은 이용료는 유사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이용료에 준하여 부과한다.
터 체험	무동력	8,000~30,000원	10,000~36,000원	5. 다음 각 목의 경우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동력	20,000~50,000원		가. 풍수해 등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육	무동력	40,000~100,000원		나. 시설물 정비 등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사면 (슬립웨이)	1일	6,000~20,000원		다. 각종 행사(국제대회, 축제, 공연 등)가 개최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시정이 인정하는 경우

2. 체육시설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이용시간
테니스장	면당 1회 2시간 이내, 단체 독점 사용 시 - 주중 주중 - 주중 야간시간 및 조조시간(조명 사용 시) - 토요일·공휴일	06:00~22:00 ※ 주·야간 구분은 질기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월간 정기사용 시(조조 시간에 한하며 1일 2시간 이내 사용)	120,000원
	1면 1회 10시간 이내 전용사용(체육경기) 시 - 주중 - 토요일·공휴일	90,000원 117,000원

2. 체육시설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이용시간
테니스장 퍼클볼장 <신설>	면당 1회 2시간 이내, 단체 독점 사용 시<삭제>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3. 휴양시설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이용시간
강변 물놀이장	어린이(6~12세)	1,000원	09:00~20:00
	청소년(13~18세)	2,000원	
	성 인(19세 이상)	3,000원	

4. (생략)

5. 시민편익시설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이용시간
야외 원형극장	1시간 기준	12,500원	06:00~24:00
	1일 사용 시	120,000원	
야외무대 사용	1회당 - 주간(08:00~18:00)	80,000원	00:00~24:00
	- 야간(18:00~다음 날 08:00)	160,000원	

6. ~ 7.(생략)

8. 그 밖의 시설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입장권 발매 행사	입장권을 발매하는 상업성 행사 (콘서트전시회 및 기타공연)	입장권 발매 총액의 10%
	비고: 여의도 물빛무대에서 개최되는 행사에는 10%이내를 점수한다.	

3. 휴양시설

<좌동>	<좌동>		<좌동>
강변<삭제> 물놀이장	<좌동>	<좌동>	<좌동>

4. (현행과 같음)

5. 시민편익시설

<삭제>			
------	--	--	--

6. ~ 7.(현행과 같음)

8. 그 밖의 시설

<좌동>	<좌동>	
<좌동>	입장권을 발매하는 상업성 행사 (체육행사<신설>, 콘서트전시회 및 기타공연)	<좌동>
	<좌동>	

[별표 2] 공원이용시설 이용료 및 이용시간(제7조
관련)

1. <생략>

2. 주차장

감 면 대 상	감면율 (%)	비 고
가. ~ 다. <생략>		
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	80	
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해당 법률에 의한 관련 증서를 제시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3호제15호,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 사람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사자로서 의사자증을 제시한 경우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사람	80	
바. ~ 파. <생략>		

[별표 2] 공원이용시설 이용료 및 이용시간(제7조
관련)

1. <현행과 같음>

2. 주차장

감 면 대 상	감면율 (%)	비 고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 등차등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80	
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해당 법률에 의한 관련 증서를 제시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3호제15호,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 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 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사자로서 의사자증을 제시한 경우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 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사람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 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로서 독립유공자 유족증을 제시한 경우	80	독립유공자 유족 중 선순위자 50% <신설>
바. ~ 파. <현행과 같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488호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2월 19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에 대한 사회적 존중 차원에서 주거지로 한정되어 있는 병역명문가 감면지원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우대상자”에 대한 정의 중 주소지 제한요건 삭제(안 제2조제2호)

나. “예우대상자”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제시 의무조항 삭제(안 제5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민방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민방위담당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 · 이메일 · 등기우편 · 온라인

(1) FAX: 02)2133-4901

(2) E-mail: snow0124@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민방위담당관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민방위담당관(☎02-2133-4518)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결과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선정되어 서울특별시(이하 ‘시’ 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을 “선정된” 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해당” 을 “대하여 해당”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을 “병역명문가증” 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 를 “예우대상자와 가족이 동행한 경우”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예우대상자”란 병역명문가로 선정되어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생략)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 선정된 ----- -----, 3. (현행과 같음)
제5조(우대)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우대) ① ----- ----- ----- 대하여 해당 ----- -----, ② ----- 병역명문가증 ----- -----, 다만, 예우대상자와 가족이 동행한 경우 ----- -----, -----.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79호

매현시민의숲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46호(1987.4.27.)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최초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01호(2025.11.6.)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한 서초구 양재동 236번지 일대 매현시민의숲 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19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 반려견의 충분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확대하고, 여의천 뚝방길과 연결되는 데크쉼터를 조성하여 공원의 개방성 확보 및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함
2.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6번지 일대
3. 면 적 : 258,991.5㎡
4.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변경)조서 및 도면 : 따로 붙임
※ 첨부된 도면(그 외 세부 관련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으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02-2133-2074),
동부공원여가센터 조경지원과(☎02-460-2992)

붙임 조성계획 결정(경미한변경)조서 및 조성계획도 일체. 끝.

매한시민의숲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 (위치 : 서울특별시 양재동 236번지 일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기반 시설	계	258,991.5	59,603.51	14	4,719.52	6,949.11	209	258,991.5	60,196.55	14	4,719.52	6,949.11	209	증)593.04㎡
	소계	22,620.97	22,620.97					22,606.97	22,606.97					감)14.00㎡
	도로	19,407.00	19,407.00					19,393.00	19,393.00					감)14.00㎡
	광장	3,213.97	3,213.97					3,213.97	3,213.97					
	조경시설	7,411.88	7,411.88				7	7,542.25	7,542.25				7	증)130.37㎡
	휴양시설						1						1	
	유희시설	3,216.00	3,216.00	1	157.80	157.80		3,216.00	3,216.00	1	157.80	157.80		
	운동시설	11,917.02	11,917.02	1	2,154.60	2,154.60		11,917.02	11,917.02	1	2,154.60	2,154.60		

구	분	경 전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등수(등)	바닥면적(㎡)				연면적(㎡)			등수(등)	바닥면적(㎡)	연면적(㎡)
	교양시설	8,460.83	8,460.83	1	821.86	2,634.96	5	8,460.83	8,460.83	1	821.86	2,634.96	5	
	편익시설	3,623.08	3,623.08	7	445.14	445.14	9	3,623.08	3,623.08	7	445.14	445.14	9	
	관리시설	1,511.20	1,511.20	4	1,140.12	1,556.61	186	1,511.20	1,511.20	4	1,140.12	1,556.61	186	
	그밖의 시설	842.53	842.53					1,319.20	1,319.20					증)476.67㎡
	녹지 및 기타	199,387.99						198,794.95						감)593.04㎡
시설물(40%이하)		(59,603.51 / 258,991.50) x 100 = 23.013%					(60,196.55 / 258,991.50) x 100 = 23.242%					증)0.229%		
건폐율(10%이하)		(4,719.52 / 258,991.50) x 100 = 1.822%					(4,719.52 / 258,991.50) x 100 = 1.822%							

2. 시설조서

구 분	경 전						경 후						비 고						
	변			전			변			후									
	부호	위치 (양재동)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규모	건축물(㎡)		공적물 (기)	부호	위치 (양재동)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규모	건축물(㎡)		공적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기 반 시 설	합 계		258,991.50	59,603.51	15동	4,719.52	6,949.11	209				258,991.50	60,196.55	15동	4,719.52	6,949.11	209	증)593.04㎡	
	소 계		22,620.97	22,620.97								22,606.97	22,606.97					감)14.00㎡	
	도 로		19,407.00	19,407.00							전지역	19,393.00	19,393.00					감)14.00㎡	
	광 장	가	2,967.20	2,967.20						가	전지역	2,967.20	2,967.20						
	광장-1	가-1	236	(867.00)						가-1	236	(867.00)	(867.00)						
	광장-2	가-2	200	(481.00)						가-2	200	(481.00)	(481.00)						
	광장-3	가-3	200	(1,261.00)						가-3	200	(1,261.00)	(1,261.00)						
	광장-4	가-4	201	(358.20)						가-4	201	(358.20)	(358.20)						
	추모광장	나	234	246.77						나	234	246.77	246.77						
	소 계		7,411.88	7,411.88					7			7,542.25	7,542.25				7	증)130.37㎡	
조 경 시 설	잔디광장	다	2,182.00	2,182.00						다		2,182.00	2,182.00						
	잔디광장-1	다-1	234	(867.00)						다-1	234	(867.00)	(867.00)						
	잔디광장-2	다-2	234	(1,110.00)						다-2	234	(1,110.00)	(1,110.00)						
	잔디광장-3	다-3	201	(205.00)						다-3	201	(205.00)	(205.00)						
	관상용식수대	라	234	305.40						라	234	305.40	305.40						
	파고라		205.00	205.00					7			205.00	205.00				7		
	파고라-1	①	236	(135.00)					(3)	①	236	(135.00)	(135.00)				(3)		

기 반 시 설

조 경 시 설

구 분	변						경						변						경				비 고
	부호	위치 (양재동)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양재동)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파고라-2	①	201	(44.00)	(44.00)				(2)	①	201	(44.00)	(44.00)						(2)				
	파고라-3	①	236	(26.00)	(26.00)				(2)	①	236	(26.00)	(26.00)						(2)				
	수경공간	마	236	2,604.00	2,604.00					마	236	2,604.00	2,604.00										
	관상용식수대-1	가-1	201	530.00	530.00					가-1	201	530.00	530.00										
	관상용식수대-2	가-2	201	1,124.00	1,124.00					가-2	201	1,124.00	1,124.00										
	관상용식수대-3	가-3	201	369.00	369.00					가-3	201	369.00	369.00										
	휴게쉼터-1	나-1	236	47.74	47.74					나-1	236	47.74	47.74										
	휴게쉼터-2	나-2	236	44.74	44.74					나-2	236	44.74	44.74										
	데크쉼터									다	236	130.37	130.37							신설			
	소 계								1										1				
유형 시설	의 자		전지역						1		전지역								1				
	소 계			3,216.00	3,216.00	1동	157.80	157.80				3,216.00	3,216.00	1동	157.80	157.80	157.80						
	실내놀이터	1	200	380.00	380.00	1동	157.80	157.80		1	200	380.00	380.00	1동	157.80	157.80	157.80						
	어린이놀이터	하	236	2,836.00	2,836.00					하	236	2,836.00	2,836.00										
안전 시설	소 계			11,917.02	11,917.02	1동	2,154.60	2,154.60				11,917.02	11,917.02	1동	2,154.60	2,154.60	2,154.60						
	운동장	바	236	3,050.00	3,050.00					바	236	3,050.00	3,050.00										
	실외테니스장	사	236	5,000.42	5,000.42					사	236	5,000.42	5,000.42										
	실내테니스장	2	236	2,154.60	2,154.60	1동	2,154.60	2,154.60		2	236	2,154.60	2,154.60	1동	2,154.60	2,154.60	2,154.60						

구 분	경 변						경 변						후			비 고		
	부호	위치 (양재동)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양재동)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교 양 시 설	맨발공원	아	236	1,712.00	1,712.00					아	236	1,712.00	1,712.00					
	소 계			8,460.83	8,460.83	1등		821.86	2,634.96	6		8,460.83	8,460.83	1등		821.86	2,634.96	6
	기념관	3	236	1,895.00	1,895.00	1등		821.86	2,634.96		3	236	1,895.00	1,895.00	1등		821.86	2,634.96
	위경탑	②	234	221.16	221.16					2	②	234	221.16	221.16				2
	충혼탑	③	234	78.60	78.60					1	③	234	78.60	78.60				1
	동 상	④	236	100.00	100.00					1	④	236	100.00	100.00				1
	조각품	⑤	200							1	⑤	200						1
	기념비	⑥	234	110.25	110.25					1	⑥	234	110.25	110.25				1
	야외무대																	
	놀이마당	자	200	706.50	706.50						자	200	706.50	706.50				
편 의 시 설	야외공연장	차	200	1,192.32	1,192.32						차	200	1,192.32	1,192.32				
	기획전시장	카	200	4,157.00	4,157.00						카	200	4,157.00	4,157.00				
	소 계			3,623.08	3,623.08	7등		445.14	445.14	9		3,623.08	3,623.08	7등		445.14	445.14	9
	매 점	4		300.00	300.00	2등		31.28	31.28		4		300.00	300.00	2등		31.28	31.28
	매점-1	4-1	200	(150.00)	(150.00)	(1등)		(15.64)	(15.64)		4-1	200	(150.00)	(150.00)	(1등)		(15.64)	(15.64)
	매점-2	4-2	200	(150.00)	(150.00)	(1등)		(15.64)	(15.64)		4-2	200	(150.00)	(150.00)	(1등)		(15.64)	(15.64)
	음수대	⑥	234 236 200	190.00	190.00					9	⑥	234 236 200	190.00	190.00				9
	화장실	5		485.08	485.08	5등		341.86	341.86		5		485.08	485.08	5등		341.86	341.86

구 분	변						경 전						경 후						비 고
	부호	위치 (양재동)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양재동)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관 리 시 설	화장실-1	5-1	236	(160.00)	(160.00)	(2등)	(92.38)	(92.38)		5-1	236	(160.00)	(160.00)	(2등)	(92.38)	(92.38)			
	화장실-2	5-2	234	(216.72)	(216.72)	(2등)	(166.32)	(166.32)		5-2	234	(216.72)	(216.72)	(2등)	(166.32)	(166.32)			
	화장실-3	5-3	236	108.36	108.36	(1등)	83.16	83.16		5-3	236	108.36	108.36	(1등)	83.16	83.16			
	주차장	파		2,576.00	2,576.00					파		2,576.00	2,576.00						
	주차장-1	파-1	236	(1,500.00)	(1,500.00)					파-1	236	(1,500.00)	(1,500.00)						
	주차장-2	파-2	201	(877.00)	(877.00)					파-2	201	(877.00)	(877.00)						
	주차장-3	파-3	200	(199.00)	(199.00)					파-3	200	(199.00)	(199.00)						
	분장실	6	200	72.00	72.00		72.00	72.00		6	200	72.00	72.00		72.00	72.00			
	소 계			1,511.20	1,511.20	3등	1,140.12	1,556.61	186			1,511.20	1,511.20	3등	1,140.12	1,556.61	186		
	관리사무실	7		1,209.05	1,209.05	3등	887.05	1,303.54	7			1,209.05	1,209.05	3등	887.05	1,303.54			
	관리사무실-1	7-1	236	(743.00)	(743.00)	(1등)	429.44	461.65	7-1	236	(743.00)	(743.00)	(743.00)	(1등)	429.44	461.65			
	관리사무실-2	7-2	236	(333.05)	(333.05)	(1등)	(333.05)	(708.89)	7-2	236	(333.05)	(333.05)	(333.05)	(1등)	(333.05)	(708.89)			
	관리사무실-3	7-3	200	(133.00)	(133.00)	(1등)	(133.00)	(133.00)	7-3	200	(133.00)	(133.00)	(133.00)	(1등)	(133.00)	(133.00)			
	안내간판	㉠	전지역						21	㉠	전지역							21	
	휴게동								1									1	
관 정	㉡	236	40.00	40.00				5	㉡	236	40.00	40.00	40.00				5		
거로동		전지역						159		전지역							159		
정원지원센터	9	201	262.15	262.15	1등	253.07	253.07	253.07	9	201	262.15	262.15	262.15	1등	253.07	253.07			

관 리 시 설

구 분		변 경						전 경						변 경				비 고	
		부호		위치 (양재동)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양재동)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그밖 의 시설	소 계			842.53	842.53								1,319.20	1,319.20					
	반려견놀이터	8		842.53	842.53					8			1,319.20	1,319.20					증)476.67㎡
녹지	소 계			199,387.99									198,794.95						감)593.04㎡
	녹지		전지역	199,387.99							전지역		198,794.95						감)593.04㎡

3. 도로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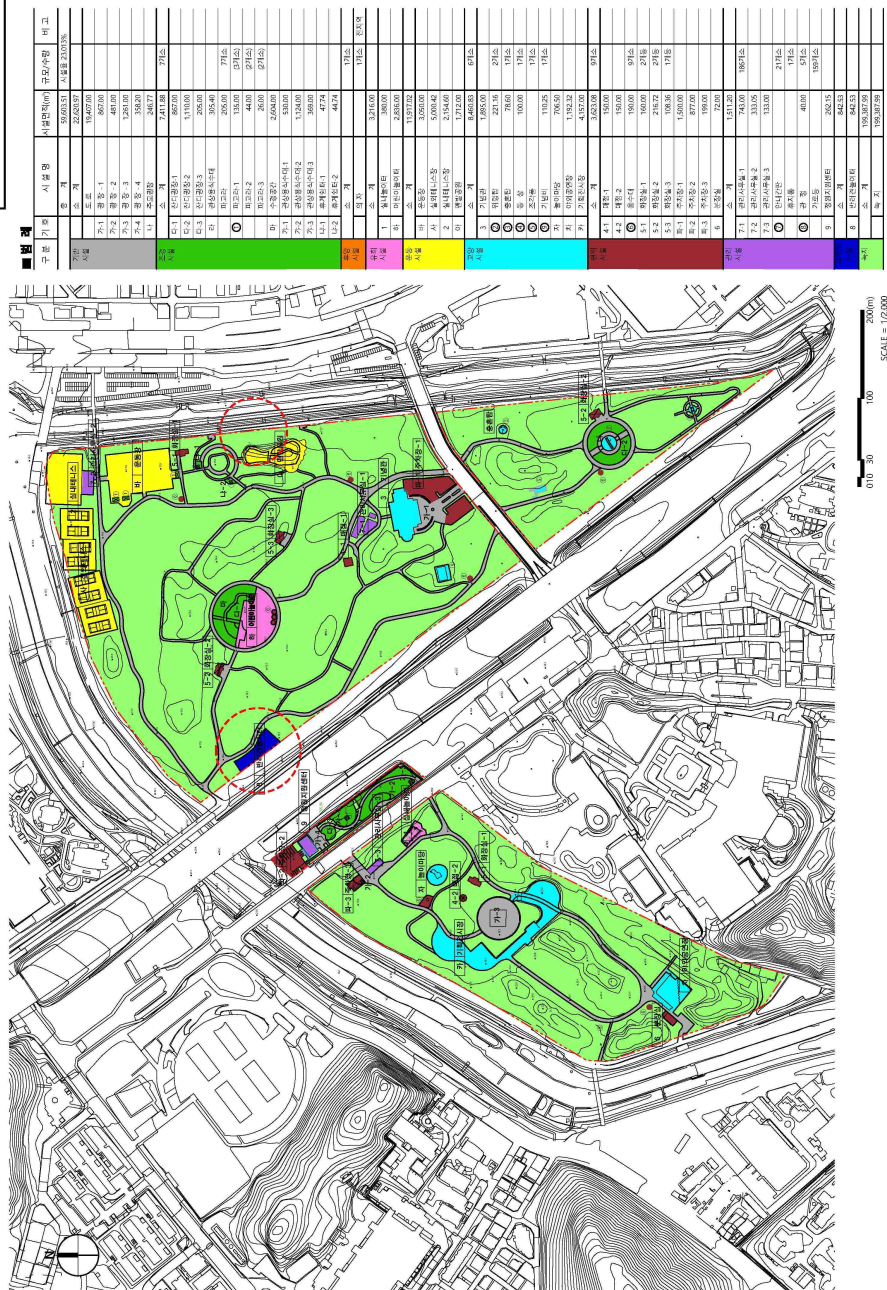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인근	구분	류 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당 초			합 계			5,716.0	19,397				
변 경			합 계			5,716.0	19,373				
당 초	KOH		계			25	300				
당 초		3	1	12	25	300	기념관 주진입로				
당 초			계			5,691.0	19,097				
변 경			계			5,691.0	19,073				
당 초	소로	3	1	3-6	492	1,794	산책로	지선도로	소로3-2시점		
당 초		3	2	3-6	702	2,551	산책로	소로3-1종점	소로3-6분기점		
당 초		3	3	4-6	108	441	산책로	소로3-2분기점	하 천		
당 초		3	4	3-6	137	639	산책로	소로3-5분기점	소로3-1분기점		
당 초		3	5	4	232	1,172	산책로	어린이놀이터	어린이놀이터		
당 초		3	6	4-6	269	1,024	산책로	지선도로	소로3-5분기점		
당 초		3	7	2-3	107	236	산책로	중로3-1분기점	소로3-9분기점		
당 초		3	8	2	92	184	산책로	소로3-9분기점	소로3-1분기점		
당 초		3	9	2-3	317	701	산책로	소로3-6분기점	소로3-4분기점		
당 초		3	10	2	27	54	산책로	소로3-9분기점	소로3-1분기점		
당 초		3	11	2	28	56	산책로	소로3-9분기점	소로3-1분기점		
당 초		3	12	2-4	126	252	산책로	소로3-2분기점	소로3-5분기점		
당 초		3	13	2-3	330	704	산책로	소로3-12분기점	소로3-5분기점		
당 초		3	14	2-3	43	87	산책로	소로3-13분기점	소로3-5분기점		
당 초		3	15	3-6	128	495	산책로	지선도로	소로3-17분기점		
당 초		3	16	3-6	160	576	산책로	지선도로	소로3-17분기점		
당 초		3	17	2-6	172	910	산책로	제2 잔디광장	제2 잔디광장		
당 초		3	18	3-6	36	129	산책로	하 천	소로3-17분기점		
당 초		3	19	2	295	590	산책로	소로3-17분기점	소로3-18분기점		
당 초		3	20	4-6	128	877	산책로	인접도로	기획전시장		
당 초		3	21	4	76	304	산책로	광장-2	소로3-20분기점		
당 초		3	22	4	134	536	산책로	광장-2	광장-3		
당 초		3	23	4-6	338	1,711	산책로	기획전시장남측	기획전시장북측		
당 초		3	24	2	108	217	산책로	소로3-20분기점	소로3-22분기점		
당 초		3	25	2	18	66	산책로	인접도로	광장-2		
당 초		3	26	2-3	45	99	산책로	복서측 후문	소로3-23시점		
당 초		3	27	5	10	50	산책로	소로3-3분기점	운동장		
당 초		3	28	5	8	40	산책로	소로3-2분기점	운동장		
당 초		3	29	2	57	114	산책로	소로3-2분기점	회장실		
당 초		3	30	3	3	9	기념관 부진입로	기념관	관리사무실		
당 초		3	31	6	21	126	진입로	소로3-17분기점	소로3-17분기점		
당 초		3	32	2	7	14	진입로	소로3-9분기점	위령탑		
당 초		3	33	2	72	160	산책로	소로3-2분기점	하 천		
변 경		3	33	2	72	145	산책로	소로3-2분기점	하 천		
당 초		3	34	3	466	1,131	산책로	정원지원센터	정원지원센터		

구 분	이 름	류 별	번 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당 초	소로	3	35	2	23	53	산책로	소로3-29분기점	소로3-37시점	
당 초		3	36	2	52	125	산책로	소로3-35분기점	하 천	
변 경		3	36	2	52	116	산책로	소로3-35분기점	하 천	
당 초		3	37	2-4	126	406	산책로	휴게쉼터-1	소로3-39시점	
당 초		3	38	2-4	88	216	산책로	소로3-37시점	소로3-37종점	
당 초		3	39	2	22	65	산책로	소로3-37종점	소로3-2분기점	
당 초		3	40	2	58	121	산책로	소로3-39분기점	맨발공원	
당 초		3	41	2	6	13	산책로	맨발공원	소로3-37분기점	
당 초		3	42	2	24	49	산책로	맨발공원	소로3-2분기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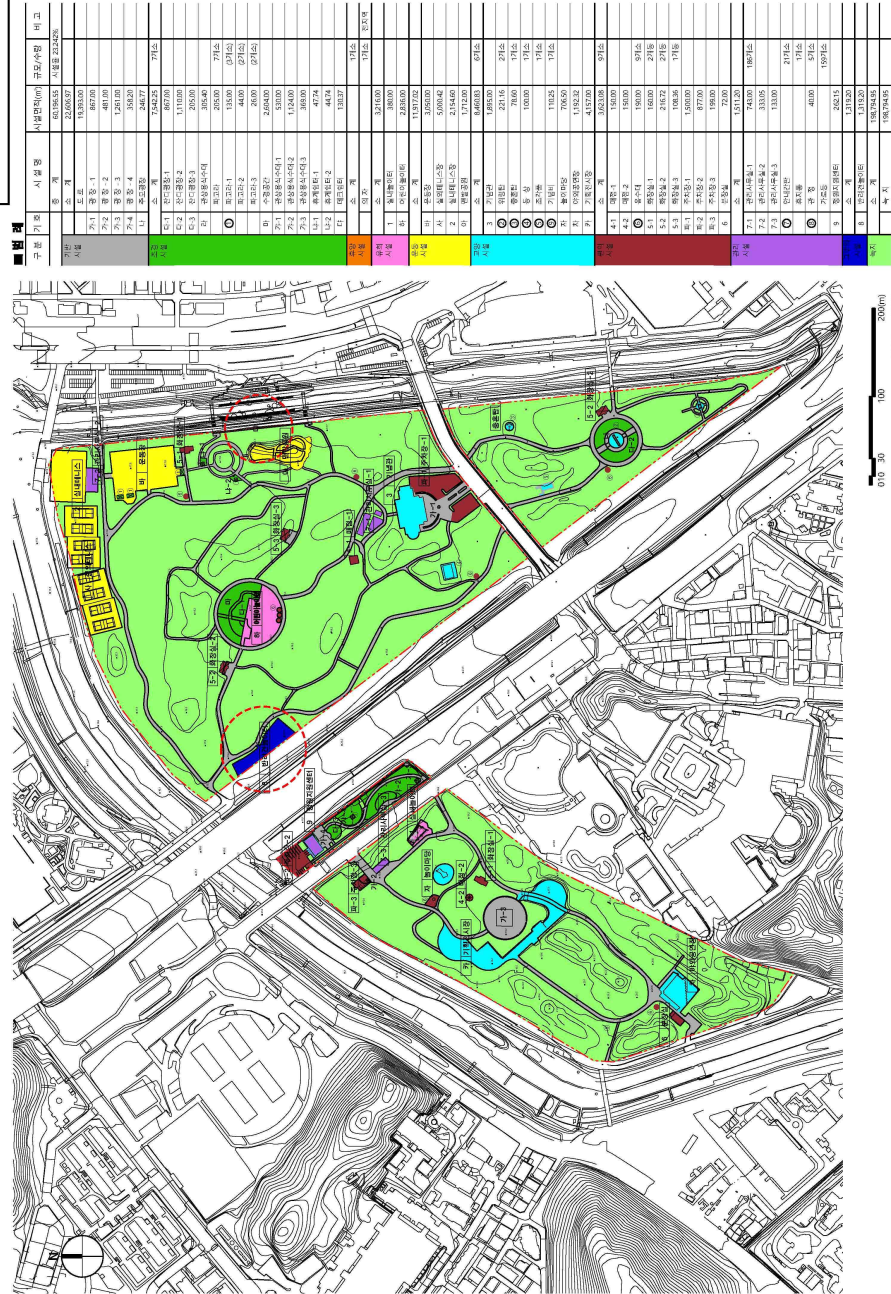
조성계획총괄도 (변경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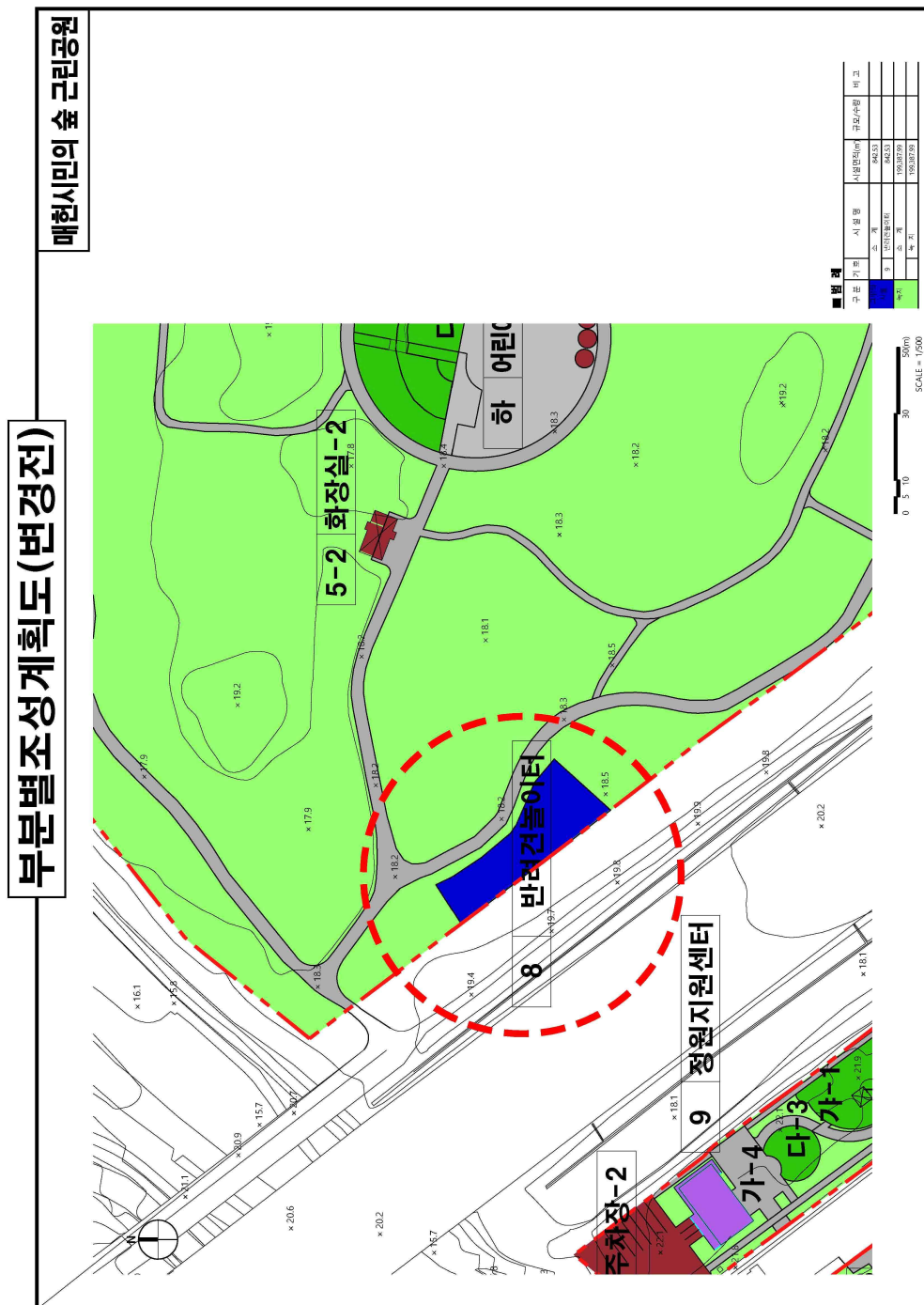
매월 1만원의 후원금



조성계획총괄도(변경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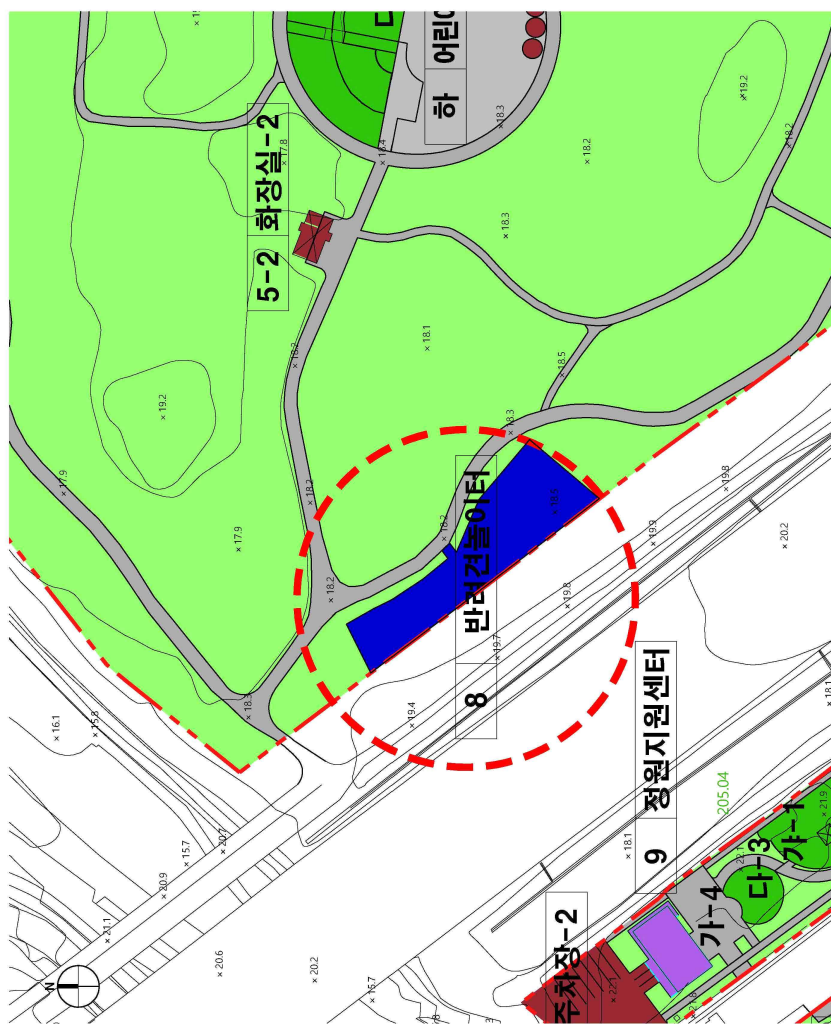
매한시민의 숲 근린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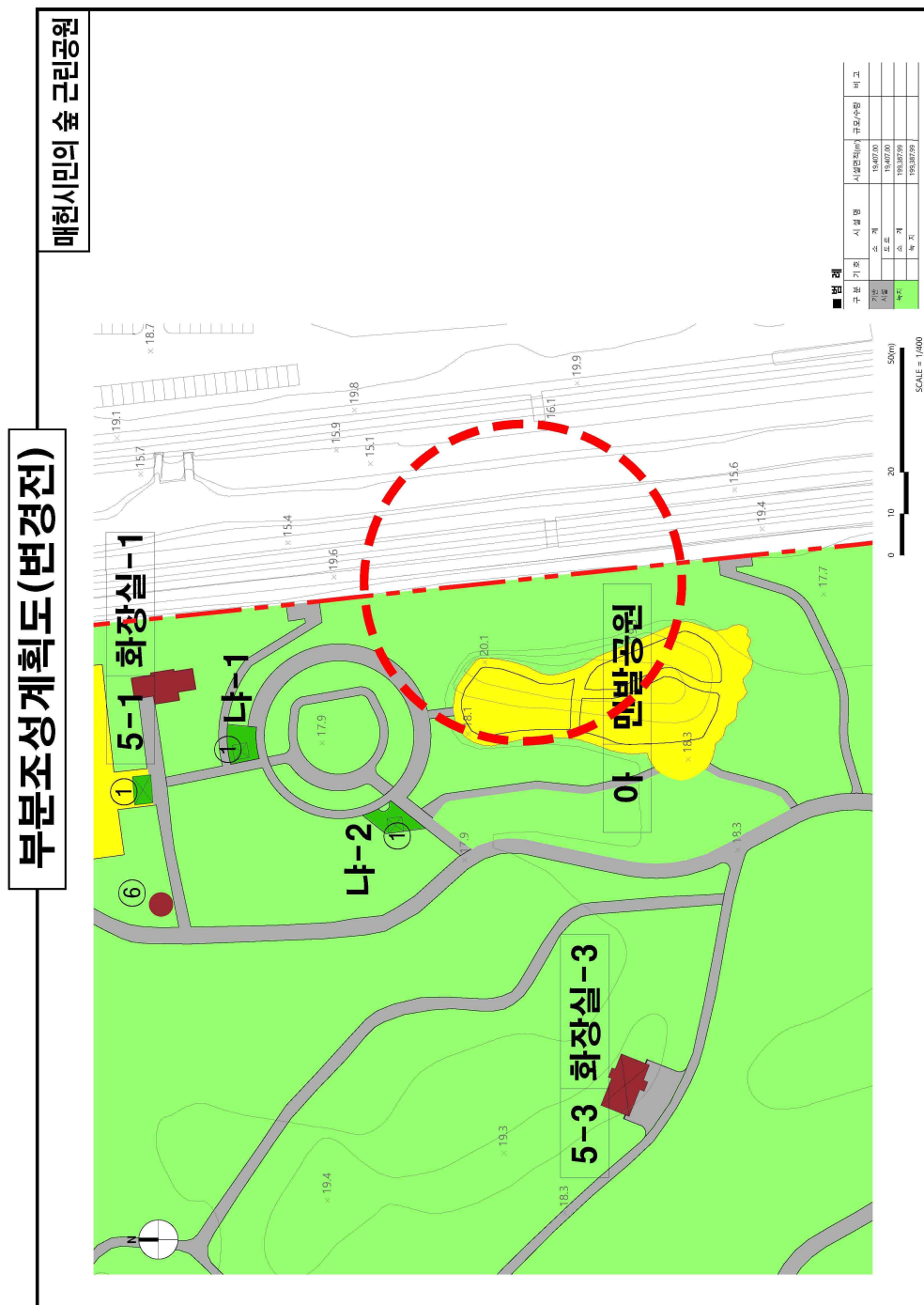
부분별조성계획도(변경후)

매월 100만원의 후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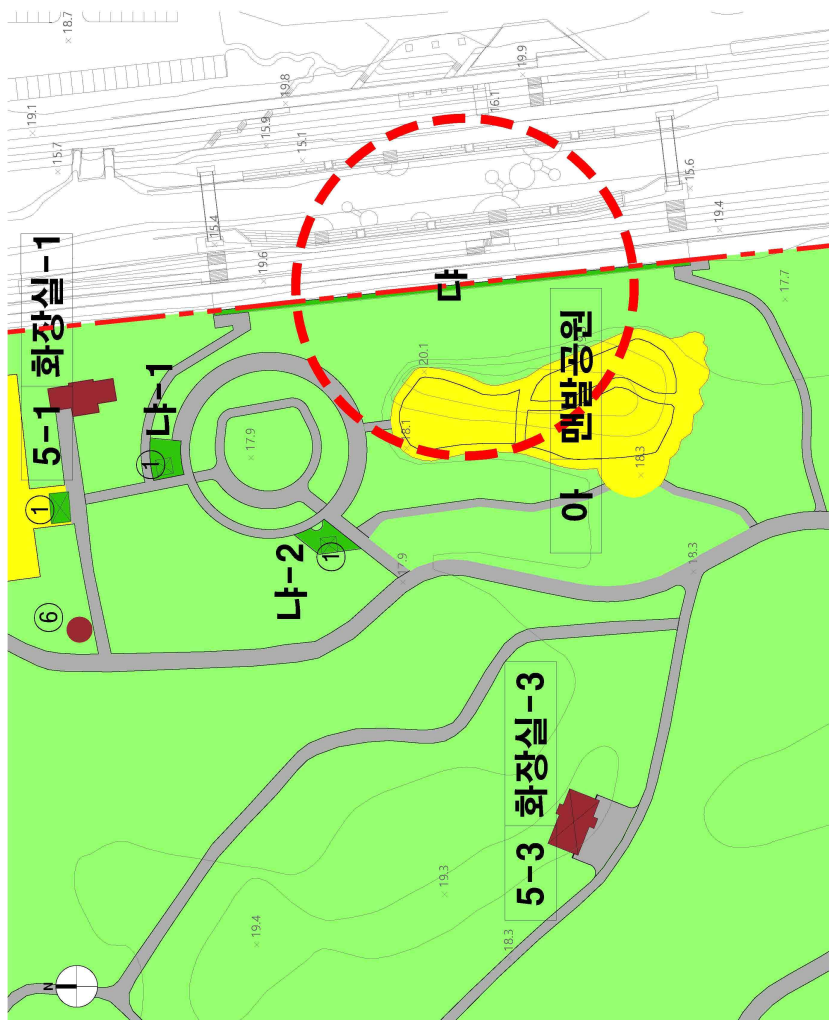
구분	기초	시정명	시정금액(원)	규모수령	비고
인건비	소계		1,319,200		
	0	민간건물여타	1,319,200		
부기	소계		1,087,964.95		
	계		2,407,164.95		

0 5 10 30 50(m)
SCALE = 1/500



부분조성계획도(변경후)

매한시민의 숲 근린공원



■ 설명

구분	기호	설명	서울특별시	규모(㎡)	비고
지정	1	소 계	19,000.00		
지정	2	소 계	19,000.00		
지정	3	소 계	19,000.00		
지정	4	소 계	19,000.00		
지정	5	소 계	19,000.00		
지정	6	소 계	19,000.00		
지정	7	소 계	19,000.00		
지정	8	소 계	19,000.00		
지정	9	소 계	19,000.00		
지정	10	소 계	19,000.00		
지정	11	소 계	19,000.00		
지정	12	소 계	19,000.00		
지정	13	소 계	19,000.00		
지정	14	소 계	19,000.00		
지정	15	소 계	19,000.00		
지정	16	소 계	19,000.00		
지정	17	소 계	19,000.00		
지정	18	소 계	19,000.00		
지정	19	소 계	19,000.00		
지정	20	소 계	19,000.00		
지정	21	소 계	19,000.00		
지정	22	소 계	19,000.00		
지정	23	소 계	19,000.00		
지정	24	소 계	19,000.00		
지정	25	소 계	19,000.00		
지정	26	소 계	19,000.00		
지정	27	소 계	19,000.00		
지정	28	소 계	19,000.00		
지정	29	소 계	19,000.00		
지정	30	소 계	19,000.00		
지정	31	소 계	19,000.00		
지정	32	소 계	19,000.00		
지정	33	소 계	19,000.00		
지정	34	소 계	19,000.00		
지정	35	소 계	19,000.00		
지정	36	소 계	19,000.00		
지정	37	소 계	19,000.00		
지정	38	소 계	19,000.00		
지정	39	소 계	19,000.00		
지정	40	소 계	19,000.00		
지정	41	소 계	19,000.00		
지정	42	소 계	19,000.00		
지정	43	소 계	19,000.00		
지정	44	소 계	19,000.00		
지정	45	소 계	19,000.00		
지정	46	소 계	19,000.00		
지정	47	소 계	19,000.00		
지정	48	소 계	19,000.00		
지정	49	소 계	19,000.00		
지정	50	소 계	19,000.00		
지정	51	소 계	19,000.00		
지정	52	소 계	19,000.00		
지정	53	소 계	19,000.00		
지정	54	소 계	19,000.00		
지정	55	소 계	19,000.00		
지정	56	소 계	19,000.00		
지정	57	소 계	19,000.00		
지정	58	소 계	19,000.00		
지정	59	소 계	19,000.00		
지정	60	소 계	19,000.00		
지정	61	소 계	19,000.00		
지정	62	소 계	19,000.00		
지정	63	소 계	19,000.00		
지정	64	소 계	19,000.00		
지정	65	소 계	19,000.00		
지정	66	소 계	19,000.00		
지정	67	소 계	19,000.00		
지정	68	소 계	19,000.00		
지정	69	소 계	19,000.00		
지정	70	소 계	19,000.00		
지정	71	소 계	19,000.00		
지정	72	소 계	19,000.00		
지정	73	소 계	19,000.00		
지정	74	소 계	19,000.00		
지정	75	소 계	19,000.00		
지정	76	소 계	19,000.00		
지정	77	소 계	19,000.00		
지정	78	소 계	19,000.00		
지정	79	소 계	19,000.00		
지정	80	소 계	19,000.00		
지정	81	소 계	19,000.00		
지정	82	소 계	19,000.00		
지정	83	소 계	19,000.00		
지정	84	소 계	19,000.00		
지정	85	소 계	19,000.00		
지정	86	소 계	19,000.00		
지정	87	소 계	19,000.00		
지정	88	소 계	19,000.00		
지정	89	소 계	19,000.00		
지정	90	소 계	19,000.00		
지정	91	소 계	19,000.00		
지정	92	소 계	19,000.00		
지정	93	소 계	19,000.00		
지정	94	소 계	19,000.00		
지정	95	소 계	19,000.00		
지정	96	소 계	19,000.00		
지정	97	소 계	19,000.00		
지정	98	소 계	19,000.00		
지정	99	소 계	19,000.00		
지정	100	소 계	19,000.00		

0 10 20 50m
SCALE = 1/400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81호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의2 제1항 및 제43조의4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19일

서울특별시장

1. 대상지

가. 명 칭: 장위동 65-107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나. 위치 및 면적

연번	자치구	위 치	면적(㎡)	권리산정기준일	비 고
1	성북구	장위동 65-107번지 일대	18,914.95	2026. 01. 08.	2026년 제2차 전문가 자문회의 (2026.2.5.)

2. 권리산정기준일: 2026. 1. 8.

○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날 아래 행위는 현금청산 대상임

(단, 권리산정기준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득했을 경우 분양대상으로 인정함)

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 아울러,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였을 경우라도 개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관련 법률과 서울시 조례 규정에 충족되어야 분양대상이 될 수 있음

3. 지정 사유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 억제 등을 위하여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4.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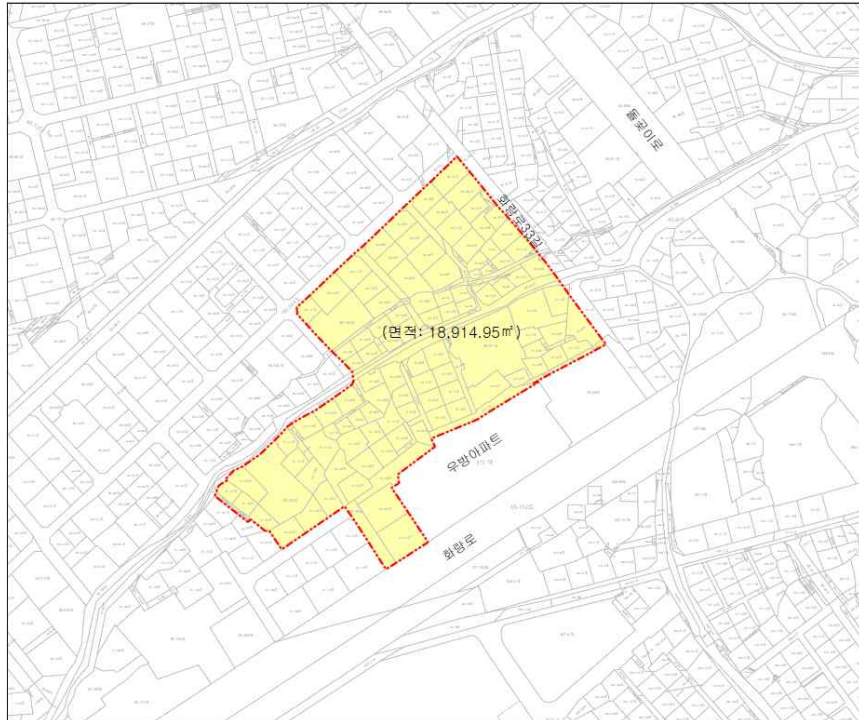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의2 제1항 및 제43조의4 제4항 규정에 따름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하되,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 관리계획이 승인되지 않거나,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5. 관계도면 : 붙임 참조

6. 안내사항

- 본 모아타운 대상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 02-2133-823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 지역 내 모아주택 모아타운 관련 사업추진 등에 대한 문의 사항은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고시는 향후 추진될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추진 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만 정하되, 소유권 이전 및 건축허가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
-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및 지정고시 시, 일부 면적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관계도면(장위동 65-107번지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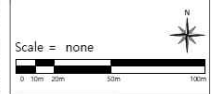
장위동 65-107번지 일대
모아타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및 관리지역지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안)

범 례

-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구역계
- 지적 선

주 기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84호
**서초구 양재동 산17-7일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 · 지구계획 승인(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359호(2019.11.7.), 제2021-428호(2021.8.5.), 제2022-395호(2022.9.29.), 제2024-496호(2024.10.24.)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및 지구계획 승인된 양재동 산17-7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변경)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19일
서울특별시 장

I.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2. 촉진지구의 지정일 : 변경없음
3. 사업의 종류 : 변경없음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구분	명칭	대표자	주소	법인번호
기정	주식회사 에이치비양재	최현종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18, 9층 (우면동, 호반파크2관)	110111-7263356
	주식회사 호반건설	박철희 변부섭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18 (우면동, 호반파크2관)	
변경	주식회사 에이치비양재	오준균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18, 9층 (우면동, 호반파크2관)	110111-7263356
	주식회사 호반건설	박철희 변부섭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18 (우면동, 호반파크2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해당없음

II.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 :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구분	명칭	대표자	주소	법인번호
기정	주식회사 에이치비양재	최현종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18, 9층 (우면동, 호반파크2관)	110111-7263356
	주식회사 호반건설	박철희 변부섭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18 (우면동, 호반파크2관)	204711-0007384
변경	주식회사 에이치비양재	오준균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18, 9층 (우면동, 호반파크2관)	110111-7263356
	주식회사 호반건설	박철희 변부섭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18 (우면동, 호반파크2관)	204711-0007384

3. 사업기간 및 재원조달계획 : 변경

구 분	시 행 기 간
당 초	지구지정일 ~ 2026년 3월
변 경	지구지정일 ~ 2026년 4월

4.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5. 인구·주택수용계획 : 변경없음
6.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7.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 변경없음
8.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변경없음
9.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85호

서초구 양재동 산17-7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60호(2019.11.7.), 제2021-211호(2021.4.29.), 제2021-429호(2021.8.5.), 제2022-396호(2022.9.29.), 제2023-92호(2023.3.23.), 제2024-497호(2024.10.24.)로 사업승인 고시된 양재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신축공사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조 제6항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19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 종류: 주택건설사업
2. 사업의 명칭: 서초구 양재동 산17-7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신축공사
3. 사업주체의 명칭 및 주소(변경)

구분	명칭	대표자	주소
기정	주식회사 에이치비양재	최현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18, 9층 (우면동, 호반파크2관)
	주식회사 호반건설	박철희 변부섭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18 (우면동, 호반파크2관)
변경	주식회사 에이치비양재	오준균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18, 9층 (우면동, 호반파크2관)
	주식회사 호반건설	박철희 변부섭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18 (우면동, 호반파크2관)

4. 사업의 시행기간(변경)

- 기정)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 2026년 3월
- 변경)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 2026년 4월

5. 사업개요(변경없음)

6. 기타사항

- 가. 「서울특별시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장은 사업계획 결정 시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음.
- 나. 사업계획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군계획시설은 각각 지정·결정 전으로 환원된 것으로 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86호

여의도 공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1-2번지 일대 여의도 공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기한을 연장하고,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19일

서울특별시

1. 정비구역 해제기간 연장

가. 정비구역 현황

구역명	위 치	면 적(㎡)	추진단계	비고 (최초결정고시)
여의도 공작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영등포구 여의도동 21-2번지 일대	16,929.0	사업시행자 지정 (지정일: 2023.02.2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448호 (2022.11.17.)

나. 해제기한 연장: 2028.02.23.까지 (2년 연장)

2.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사유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3. 관련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02-2133-7139) 및 영등포구 재건축사업과(☎02-2670-3583)에 관련 서류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87호

도시관리계획(명동관광특구 등 63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관광숙박 특화 목적 명동관광특구 등 63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계획 등 결정 변경]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63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2025년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2025.12.12.) 등을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19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 취지

- 서울시 내 관광숙박시설 공급 확대를 위해 ‘명동관광특구 등 63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광숙박 특화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적용 가능한 용적률 완화 등의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 대상 :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63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자치구	구역명	비고
중구	명동관광특구, 북창, 소공, 남대문시장, 동대문역사문화공원주변, 경동 일대	6개소
강남구	테헤란로, 양재중심지구	2개소
송파구	잠실광역중심제1지구, 잠실광역중심제2지구	2개소
서초구	서초로, 양재지구중심	2개소
마포구	마포지구, 신촌지구일대, 아현2지구	3개소
용산구	용산, 이태원로 주변, 한남	3개소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중심, 신길지구중심,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대림광역중심	4개소

자치구	구역명	비고
종로구	세종로, 종로2·3가, 종로4·5가, 숭인, 숭인2, 율곡로,	6개소
성동구	왕십리 광역중심	1개소
동대문구	청량리역 전면부, 장인평일대, 신설, 전농2지구중심	4개소
광진구	건대입구역지구, 군자역지구, 화양1지구	3개소
동작구	사당·이수, 노량진지구, 신대방지구	3개소
강서구	화곡역 지구중심, 공항로, 까치산역 지구중심, 공항지구중심	4개소
강북구	수유·변동	1개소
강동구	천호지구	1개소
서대문구	충정	1개소
은평구	불광, 연신내, 응암지구중심	3개소
관악구	신림지구중심, 봉천지역중심, 대림지역중심, 난곡사거리지구중심,	4개소
금천구	가산, 금천구심, 독산	3개소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역	1개소
성북구	동선지구중심, 석관지구중심	2개소
도봉구	쌍문지구중심	1개소
노원구	공릉	1개소
중랑구	면목지구중심, 목동지구중심	2개소

② 관광숙박 특화 계획

□ 관광숙박 특화구역의 지정

1) 관광숙박 특화구역

- 외국인 관광객 유치촉진 및 관광여건 개선이 필요한 관광특구 중심, 관광수요가 높은 도심 등 지역 내 상업지역 : 9개소

구분	구역명	구역면적(㎡)	자치구	위 치	결정 내용
1	명동관광특구	300,545	중구	중구 명동1가 54번지 일대	관광숙박 특화구역 지정
2	북창	93,187	중구	중구 북창동 104번지 일대	
3	테헤란로	959,160	강남구	강남구 역삼1동, 역삼2동, 삼성2동, 대치4동 일원	
4	잠실광역중심제1지구	858,791	송파구	송파구 신천동, 방이동, 올림픽로 주변	
5	여의도 금융중심	1,120,586	영등포구	영등포구 여의도동 33 일대	
6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792,010	영등포구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98-9번지 일원	
7	마포지구	238,525	마포구	마포구 신촌로, 양화로변 일대	
8	용산	3,467,822	용산구	중구 봉래동 ~ 용산구 한강로일대	
9	왕십리 광역중심	218,000	성동구	성동구 하왕십리동, 도선동, 홍익동, 행당동 일대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등 별도의 개별법령에 따라 계획된 구역은 해당 계획에 따름

- 교통 접근성이 양호하고 기타 상권이 활발하게 형성된 상업지역 : 54개소(한시 적용)
- － 완화 적용기간 : 결정 고시일부터 「도시계획조례」 제51조제2항제1호 사목의 존속기간 종료 시까지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가 의제되거나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 적용

구분	구역명	구역면적(㎡)	자치구	위 치	결정 내용
1	양재중심지구	30,274	강남구	강남구 도곡동 957 일대	관광숙박 특화구역 지정
2	천호지구	655,437	강동구	강동구 천호동, 길동, 둔촌동, 성내동 일원	
3	수유·번동	436,100	강북구	강북구 수유동 192번지 일대 및 번동 416번지 일대	
4	화곡역 지구중심	141,673	강서구	강서구 화곡동 1064번지 일원	
5	공항로	440,474	강서구	강서구 가양동, 공항동, 내발산동, 등촌동, 염창동, 화곡동 일대	
6	까치산역 지구중심	221,180	강서구	강서구 화곡동 897번지 일대	
7	공항지구중심	123,531	강서구	강서구 방화동 612번지 일대	
8	신림지구중심	534,795	관악구	관악구 신림동 1428번지 일대	
9	난곡사거리지구중심	158,693	관악구	관악구 신림동 1474 일대	
10	대림지역중심	20,100	관악구	관악구 신림동 1643, 1655번지 일대	
11	봉천지역중심	573,347	관악구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입구역 사거리 일대	
12	군자역지구	165,245	광진구	광진구 중곡동 157-1 일대	
13	건대입구역지구	171,352	광진구	광진구 화양동 6-1호 일대 (지하철 2.7호선 건대입구역 역세권주변)	
14	화양1지구	307,010	광진구	광진구 화양동 18-1호 일대	
15	구로디지털단지역	58,045	구로구	구로구 구로동 1124-1번지 일원	

구분	구역명	구역면적(㎡)	자치구	위 치	결정 내용
16	가산	122,687	금천구	금천구 가산동 140-1번지 일대	
17	금천구심	747,098	금천구	금천구 시흥동 994번지 일대	
18	독산	198,388	금천구	금천구 독산동 1030번지 일대	관광숙박 특화구역 지정
19	전농2지구중심	24,764	동대문구	동대문구 전농동 33번지 일대	
20	청량리역 전면부	331,246	동대문구	동대문구 청량리동 268번지 일대	
21	장안평일대	523,805	동대문구	성동구 용답동, 동대문구 장안동, 답십리동 일대 (성동구 용답동 230-4)	
22	신설	162,354	동대문구	동대문구 신설동 117-23, 109-5번지 일대	
23	사당·이수	475,540	동작구	사당·이수역 일대	
24	신대방지구	57,025	동작구	동작구 대방동 405번지 일대	
25	노량진지구	87,123	동작구	동작구 노량진동 46번지 일대	
26	아현2지구	41,230	마포구	마포구 아현동 331 일대	
27	신촌지구일대	548,255	마포구	서대문구, 마포구 신촌로터리 일대	
28	충정	24,230	서대문구	서대문구 미근동 21번지 일원	
29	공릉	35,733	노원구	노원구 공릉동 670번지 일대	
30	쌍문지구중심	184,840	도봉구	도봉구 쌍문동 88번지 일대 창동 659번지 일대	
31	석관지구중심	132,352	성북구	성북구 석관동 242-1번지 일대	
32	동선지구중심	189,529	성북구	성북구 동선동1가 71번지 일대	

구분	구역명	구역면적(㎡)	자치구	위 치	결정 내용
33	서초로	599,620	서초구	서초역 ~ 강남역	
34	양재지구중심	110,192	서초구	서초구 서초동 1366번지 일대, 양재동 12번지 일대	
35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주변	669,072	중구	중구 을지로6가 18-79 일대	
36	신길지구중심	66,657	영등포구	영등포구 신길동 254-7번지 일대	
37	대림광역중심	49,561	영등포구	영등포구 대림동 1104-1 일대	관광숙박 특화구역 지정
38	한남	336,396	용산구	용산구 한남동 일원	
39	이태원로 주변	287,413	용산구	용산구 이태원동, 한남동 일대	
40	응암지구중심	99,700	은평구	은평구 응암동 577번지일대	
41	연신내	157,763	은평구	은평구 불광동 311번지 일대, 대조동 185번지 일대, 갈현동 396번지 일대	
42	불광	178,167	은평구	은평구 불광동 272-5번지 일대	
43	율곡로	446,340	종로구	종로구 원남동, 인의동, 연건동, 연지동, 효제동, 충신동, 종로6가 일대	
44	세종로	208,156	종로구	종로구 세종로 주변	
45	종로2·3가	189,840	종로구	종로구 관철동, 관수동 및 돈의동 일대	
46	송인2	119,450	종로구	종로구 송인동 1150일대	
47	송인	218,280	종로구	종로구 송인동 200-16 일대	
48	종로4·5가	299,647	종로구	종로구 종로4·5가 일대	
49	정동 일대	508,446.3	중구	중구 정동, 서소문동, 순화동, 종로구 신문로1.2가 일대	

구분	구역명	구역면적(㎡)	자치구	위 치	결정 내용
50	남대문시장	38,129	중구	중구 남창동 31-1번지 일대	
51	소공	13,614	중구	중구 태평로2가 23번지 일원	
52	목동지구중심	207,936	중랑구	중랑구 목동 165번지 일대	
53	면목지구중심	125,000	중랑구	중랑구 면목동 634일대	
54	잠실광역중심제2지구	367,687	송파구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 주변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등 별도의 개별법령에 따라 계획된 구역은 해당 계획에 따름

☐ 관광숙박 특화구역 내 용적률 계획 및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1) 적용 기준

- 관광숙박 특화구역 내에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1조제2항1호다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지정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용적률 계획’을 적용할 수 있음
 - －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용적률 계획 및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을 적용하는 경우, 개별 건축 인허가 이전에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관련부서(도시관리과)와 사전 협의 추진
 - － 한옥, 문화재 등 역사자산 밀집지역, 지역특성보전이 필요한 지역 등 용적률 완화가 제한되는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혼재된 노선형 상업지역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함
- 특별계획(가능)구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변경) 시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용적률 계획’ 적용 가능
-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하는 상한용적률 항목은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상한용적률과 중첩 적용 가능하며, 이 경우 「국토계획법」 제78조제7항 등 관련규정 준수
- 관련 법령 및 조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적용

2)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용적률 계획

○ 2000.07.01. 이전에 용도지역이 결정되었거나 변경된 지역

[서울도심 외]

구분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관광숙박시설	공공시설등 제공
상업지역	근린상업	600%이하	600%이하	78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일반상업	800%이하	800%이하	1,04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서울도심 내]

－ 적용 기간 : 결정 고시일부터 「도시계획조례」 제51조제2항제1호 사목의 존속기간 종료 시까지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구분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관광숙박시설	공공시설등 제공
상업지역	근린상업	600%이하	600%이하	78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일반상업	800%이하	800%이하	1,04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중심상업	1,000%이하	1,000%이하	1,30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 적용 기간 : 도시계획조례」 제51조제2항제1호 사목의 존속기간 종료 이후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거나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

구분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관광숙박시설	공공시설등 제공
상업지역	근린상업	500%이하	500%이하	65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일반상업	600%이하	600%이하	78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중심상업	800%이하	800%이하	1,04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 2000.07.01. 이후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2000.07.01.이후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용적률 계획 예시

△△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분	기정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공공시설등 제공	관광 숙박시설
제3종일반 → 일반상업	250%이하	610%이하	800%이하	250%이하	610%이하	800%이하	1,040%이하
일반주거 → 일반상업	300%이하	630%이하	800%이하	300%이하	630%이하	800%이하	1,040%이하
준주거 → 일반상업	400%이하	660%이하	800%이하	400%이하	660%이하	800%이하	1,040%이하

3)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구분	주요 내용											
산정방법	관광숙박시설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법적용적률 × 용적률 완화 비율 • 법적용적률은 「도시계획조례」 제48조, 제49조제3항, 제50조제1호에 따른 용도지역 용적률을 말함 ※ 용도지역 상향 시, 변경 후 용도지역 용적률을 법적용적률로 적용함 ※ 「도시계획조례」 제51조제2항제1호 사목의 존속기간 종료 시까지, 서울도심 지역은 서울도심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서울도심 외 용도지역 용적률을 법적용적률로 적용함 • 용적률 완화 비율은 최대 30퍼센트 범위 이내 ‘관광숙박시설 건립 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 • 「호텔업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호텔업등급평가기준의 3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객실, 부대시설 등 확보 (단,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의 호텔업등급결정 대상에 한하며, 관광수요가 높은 지역 등 필요한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완화가능)											
	<table><tr><th rowspan="2">항목</th><th colspan="3">처리기준 및 계수*</th></tr><tr><th>0.8</th><th>0.9</th><th>1.0</th></tr><tr><td>객실비율</td><td>70% 미만</td><td>(직선보간 적용)</td><td>80% 이상</td></tr></table>	항목	처리기준 및 계수*			0.8	0.9	1.0	객실비율	70% 미만	(직선보간 적용)	80% 이상
	항목		처리기준 및 계수*									
0.8		0.9	1.0									
객실비율	70% 미만	(직선보간 적용)	80% 이상									
	※ 계수* : 기존 모델을 관광숙박시설로 개발하는 경우 최대 완화범위 적용 가능 ※ 객실 비율이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최저계수부터 직선보간법(이웃한 두 점 사이를 1차식으로 보간하는 선형보간)에 따라 산정 ※ 객실 비율은 전체 연면적에 대한 객실 사용 바닥면적 합계로서 호텔 운영을 위한 주차장, 기계실/전기실 지원시설 및 복도, 화장실의 공용 면적은 객실 연면적에 포함 ※ 모델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에 따른 일반숙박시설로서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따른 숙박업 중 여관, 모텔, 여인숙 등으로 운영 중인 경우를 말함 ※ 복합건축물(관광숙박시설 포함) 건립 시에는 관광숙박시설 연면적 비율에 대해서만 용적률 완화를 적용하고, 증축 시에는 증축되는 관광숙박시설의 객실 연면적 비율에 따라 용적률 완화를 적용함											
비고	• 관광숙박시설 건립기준, 버스 주차차 유도기준, 교통처리방안 등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관광숙박시설 건립 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함											

□ 관광숙박 특화구역 내 건폐율·높이·최대개발규모 완화 사항

- 관광숙박 특화구역 내에서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관련부서(도시관리과) 협의를 통해 건폐율, 높이, 최대개발규모 완화 적용 가능 (건폐율 완화와 높이 완화는 중복 적용 불가. 단, 기존 호텔을 관광숙박시설로 개발하는 경우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중복적용 가능)

적용구역	완화사항	완화범위
관광숙박 특화구역	건폐율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서 허용하는 범위 이내
	높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최고높이의 1.3배 이내
	최대개발규모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최대개발규모 미적용

③ 기타사항

- 대상 : 동선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1개소

1) 건축물의 용도 결정(변경) 조서

(1) 건축물의 불허용도 결정(변경) 조서

■ 기정

구분		불허용도
A	일반상업지역	•용도지역·지구제에 따른 불허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주유소, 석유판매소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허용도
B	준주거지역	•용도지역·지구제에 따른 불허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허용도

■ 변경

구분		불허용도
A	일반상업지역	•용도지역·지구제에 따른 불허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주유소, 석유판매소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허용도
B	준주거지역	•용도지역·지구제에 따른 불허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허용도

※ 상기 용도계획에도 불구하고 관광숙박 특화구역 내에서는 「도시계획조례」 제51조제2항1호다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입지가능

2. 관계도면 : 변경 없음(불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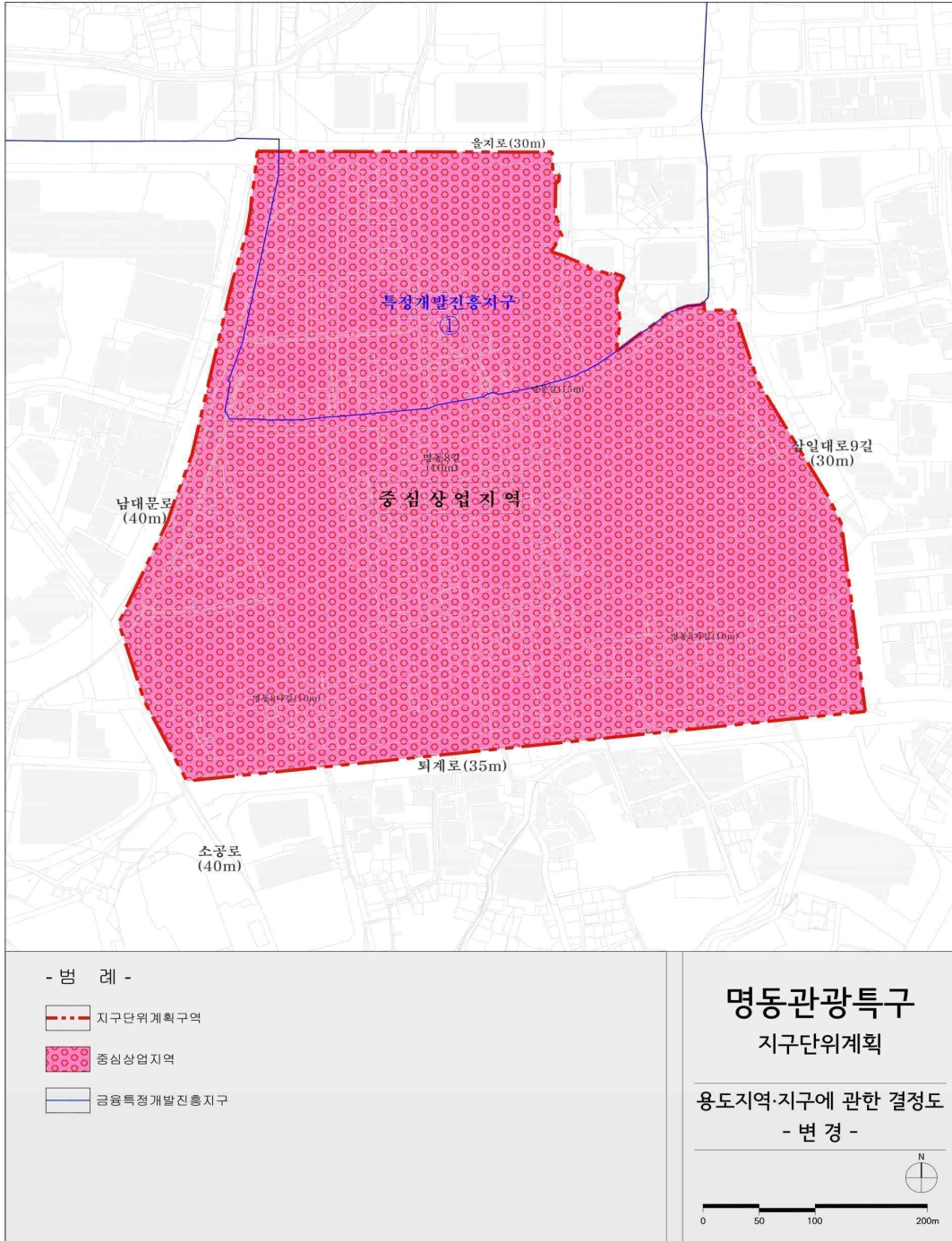
－ 금회 변경된 사항에 한해 유효하며, 그 외 사항은 기정 내용을 따름

3.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서울시청 도시관리과(☎2133-8373) 및 자치구 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과 등) 관련부서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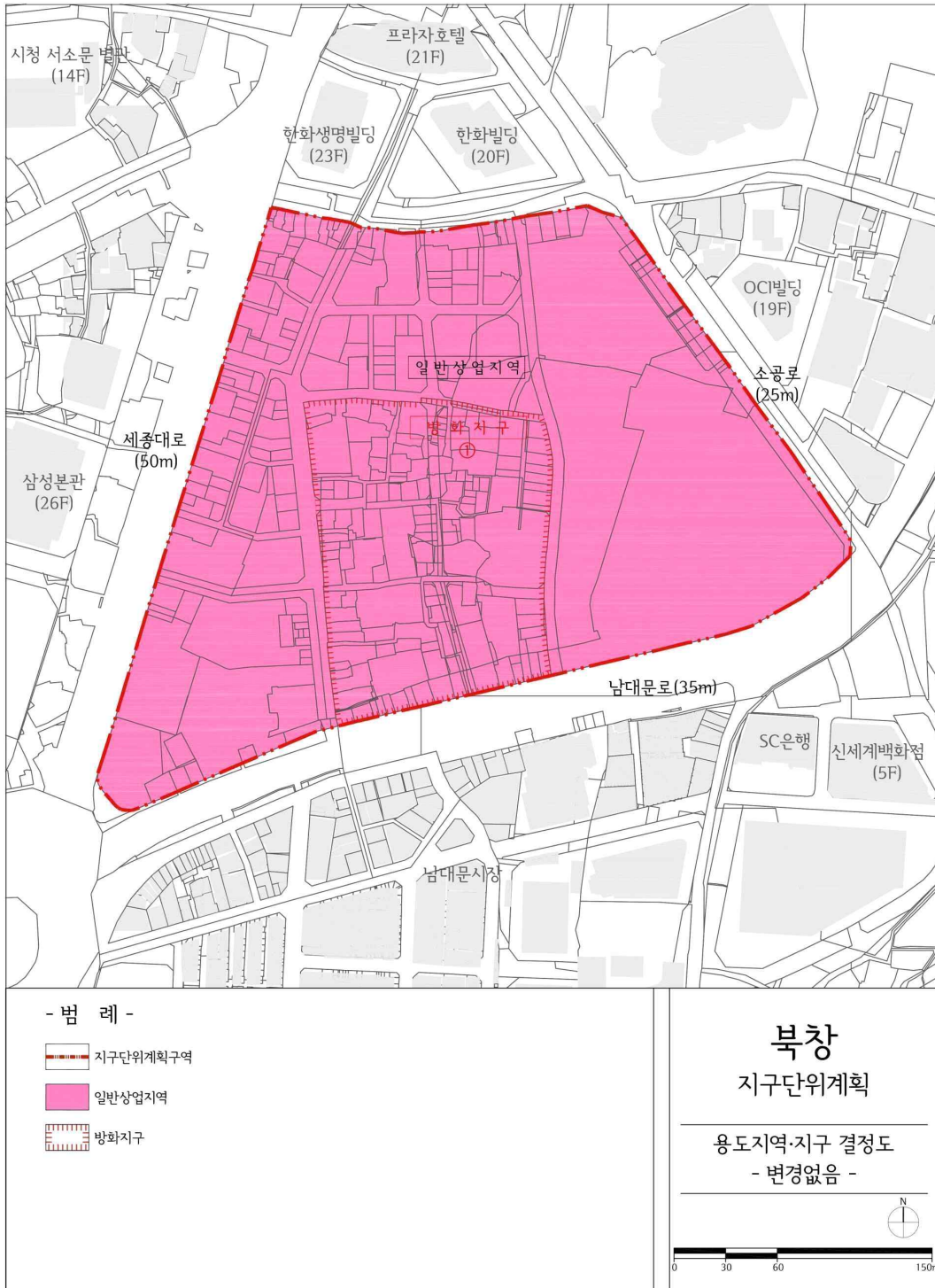
[붙임] 관계도면

- 외국인 관광객 유치촉진 및 관광여건 개선이 필요한 관광특구 중심, 관광수요가 높은 도심 등 지역 내 상업지역 : 9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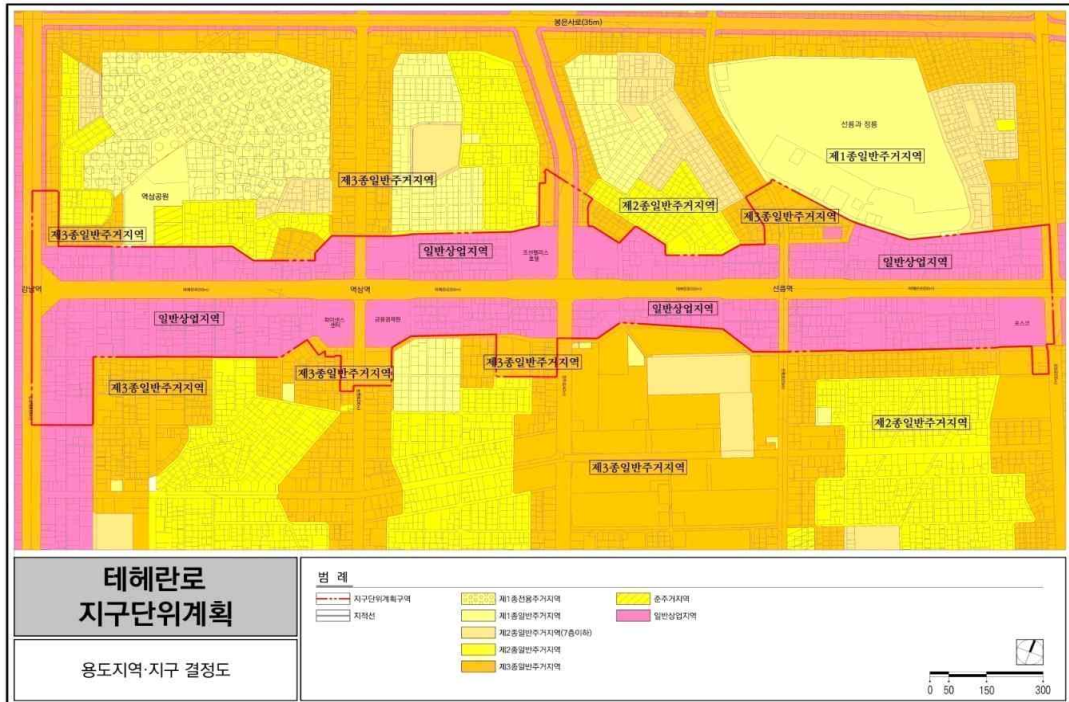
■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 북창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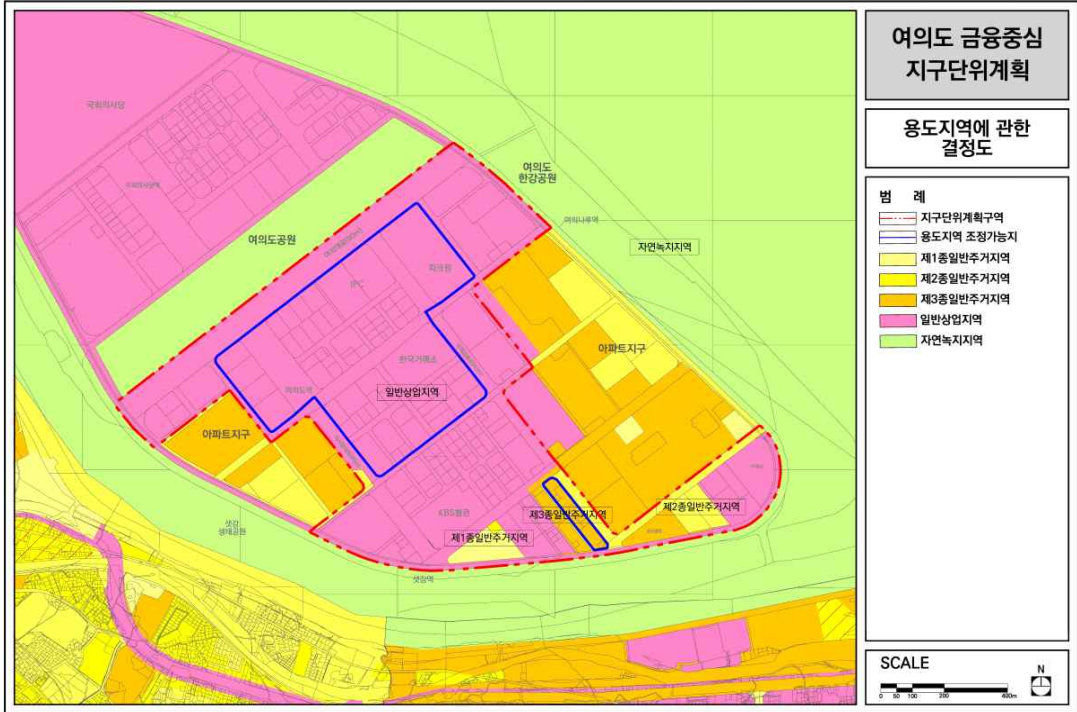
■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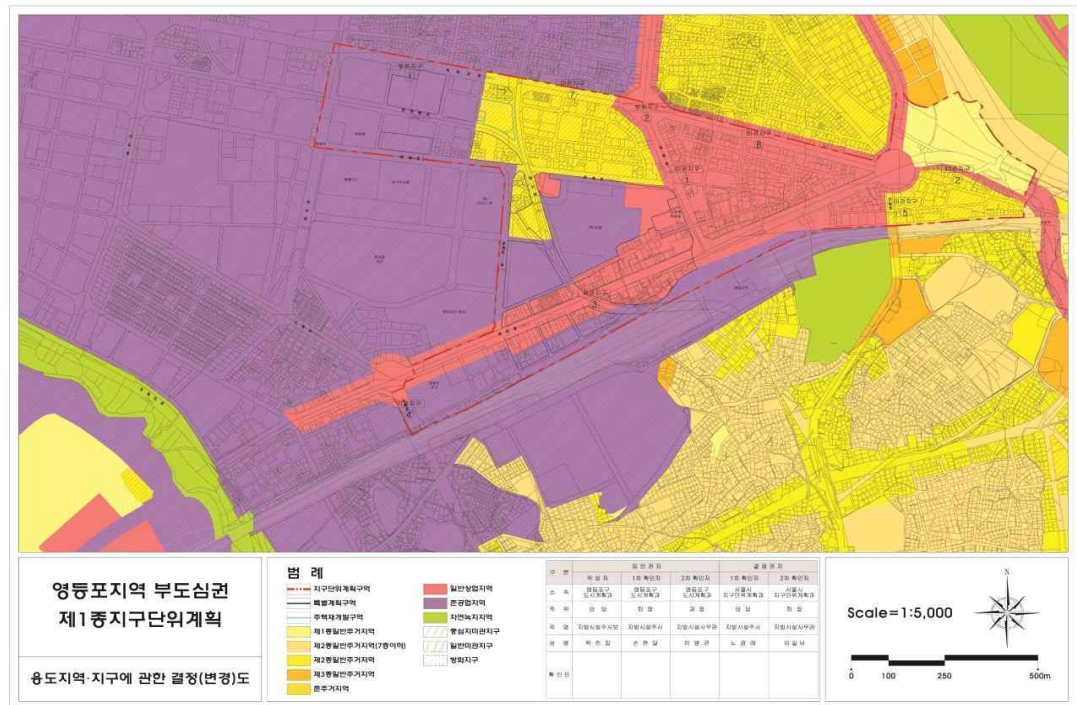
■ 잠실광역중심제1지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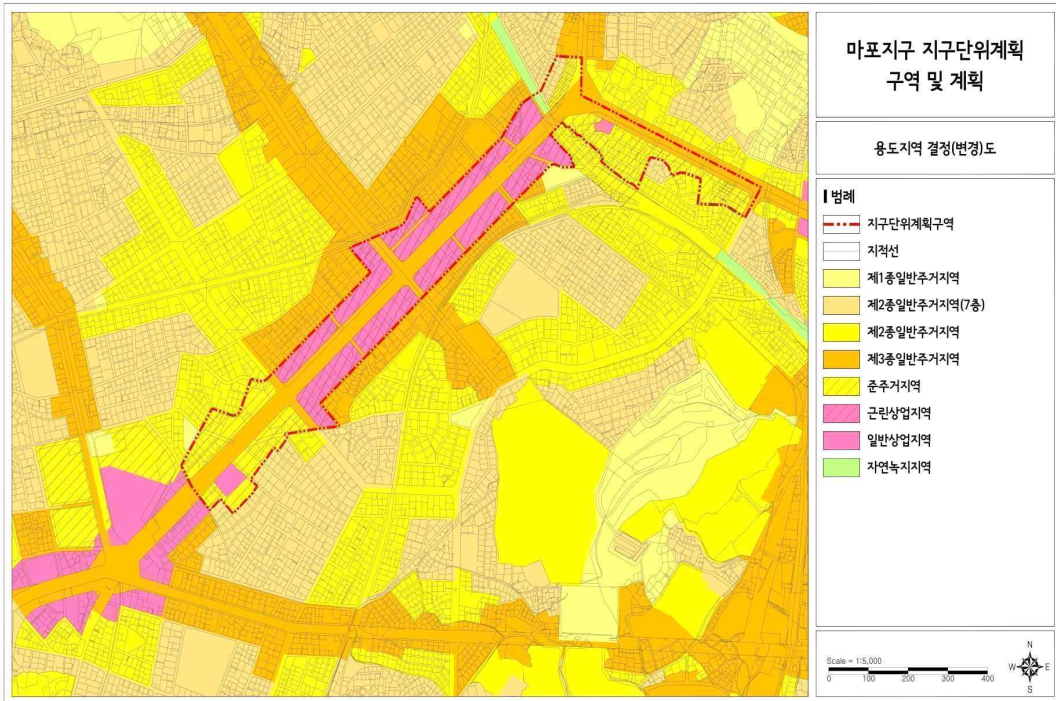
■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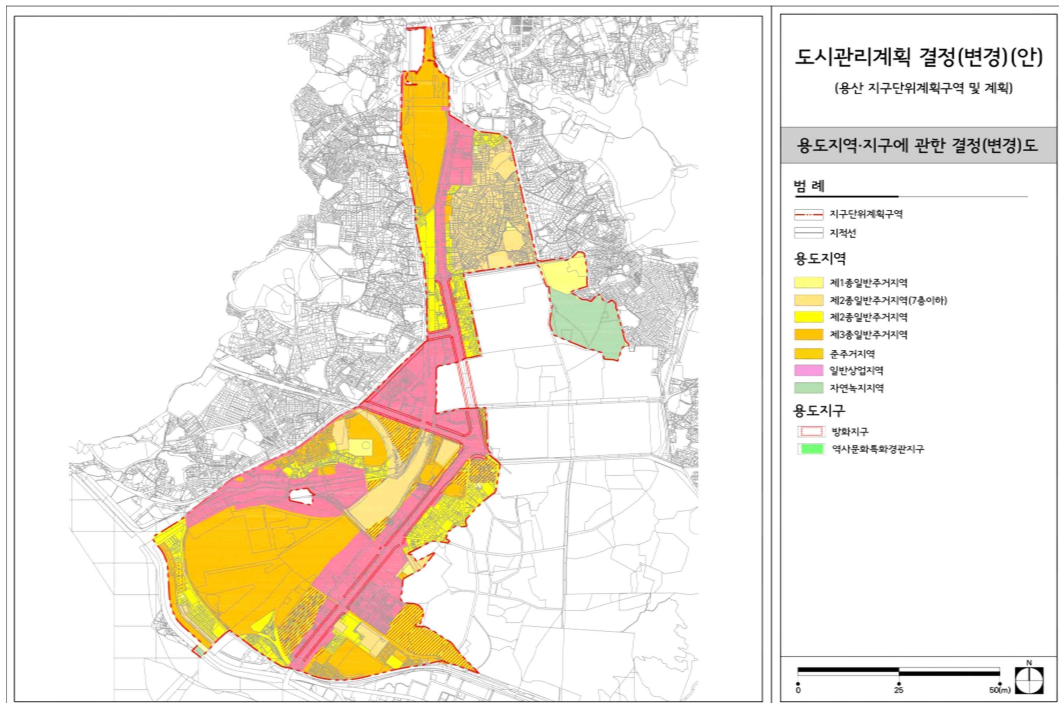
■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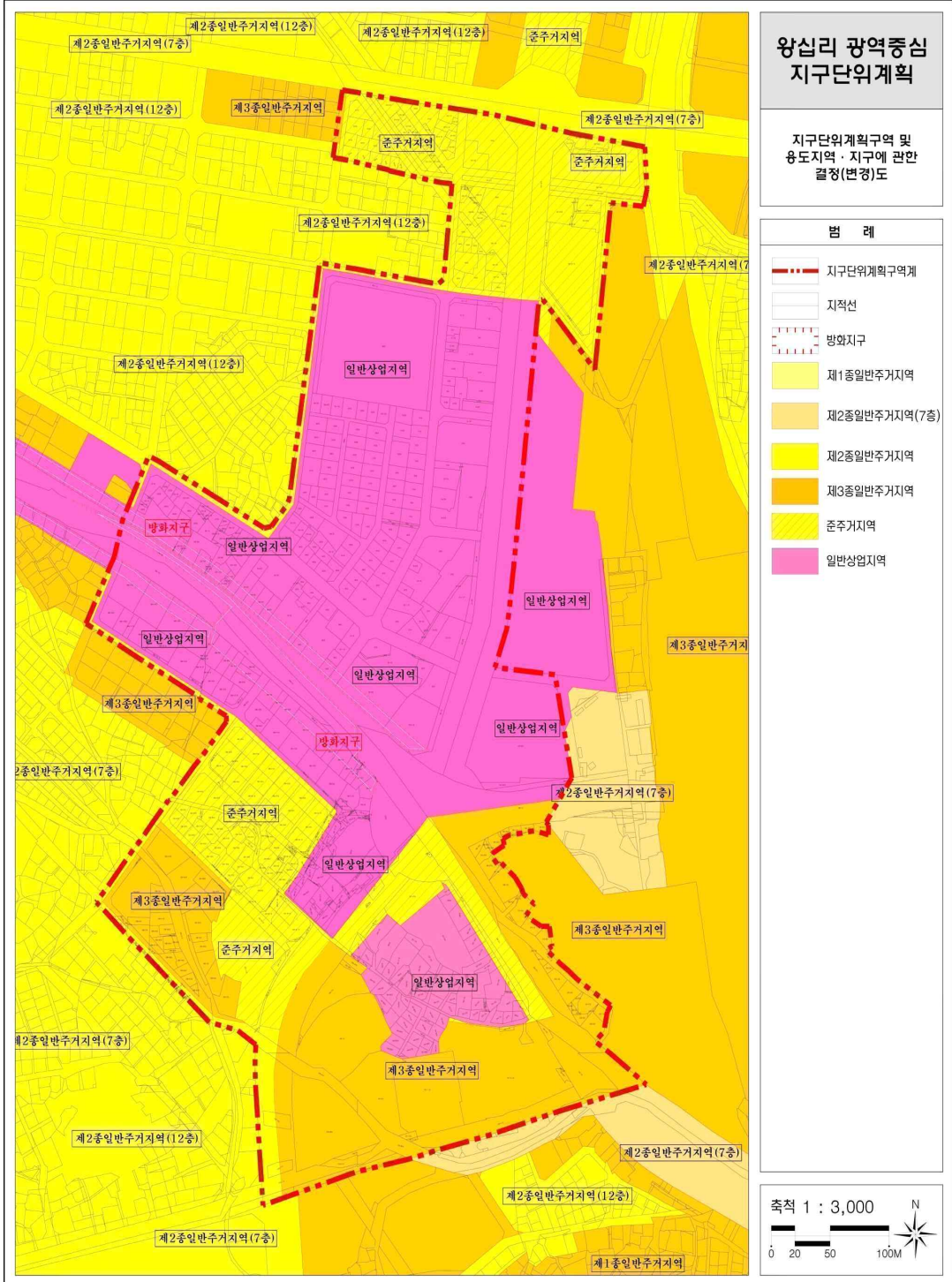
■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 용산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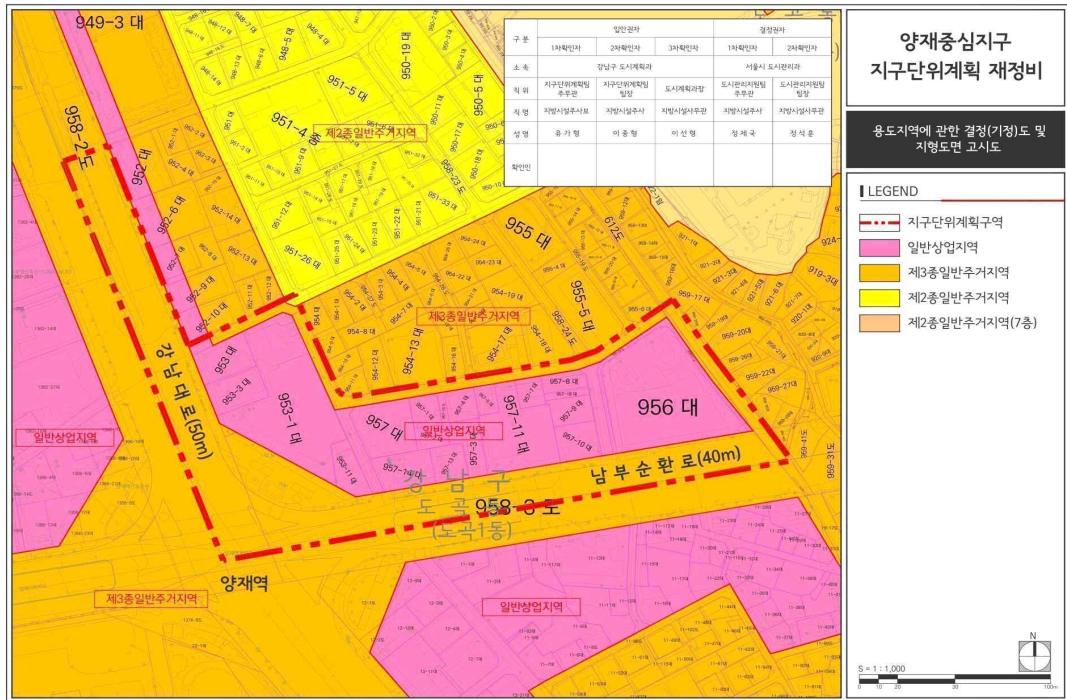


■ 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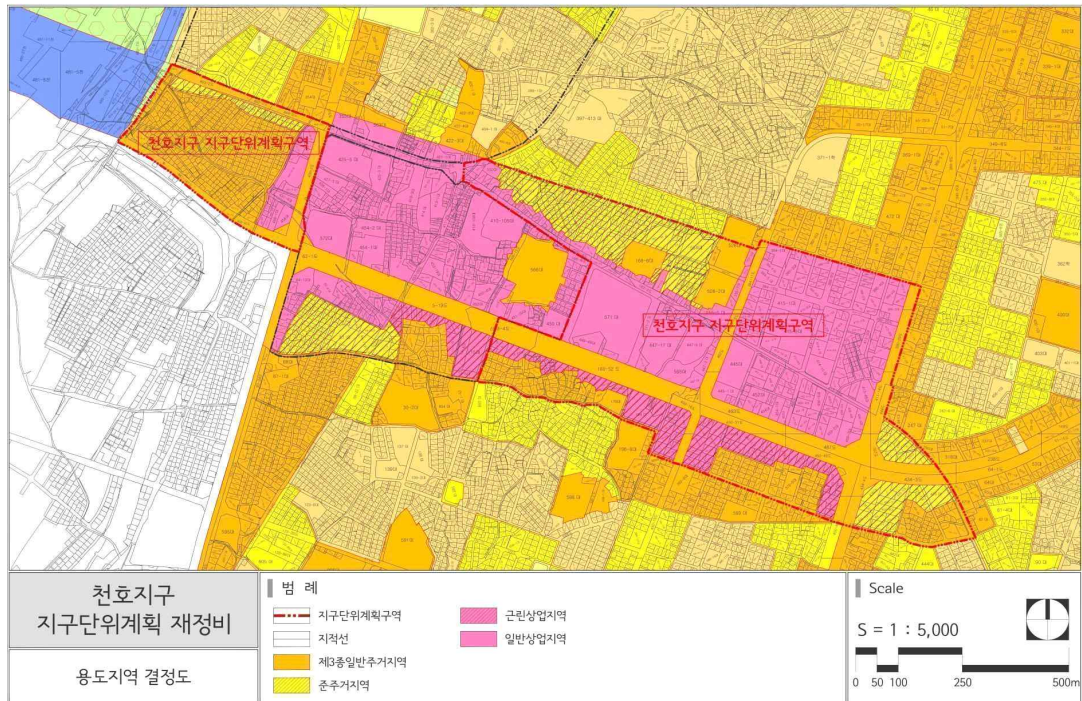


○ 교통 접근성이 양호하고 기타 상권이 활발하게 형성된 상업지역 : 54개소(한시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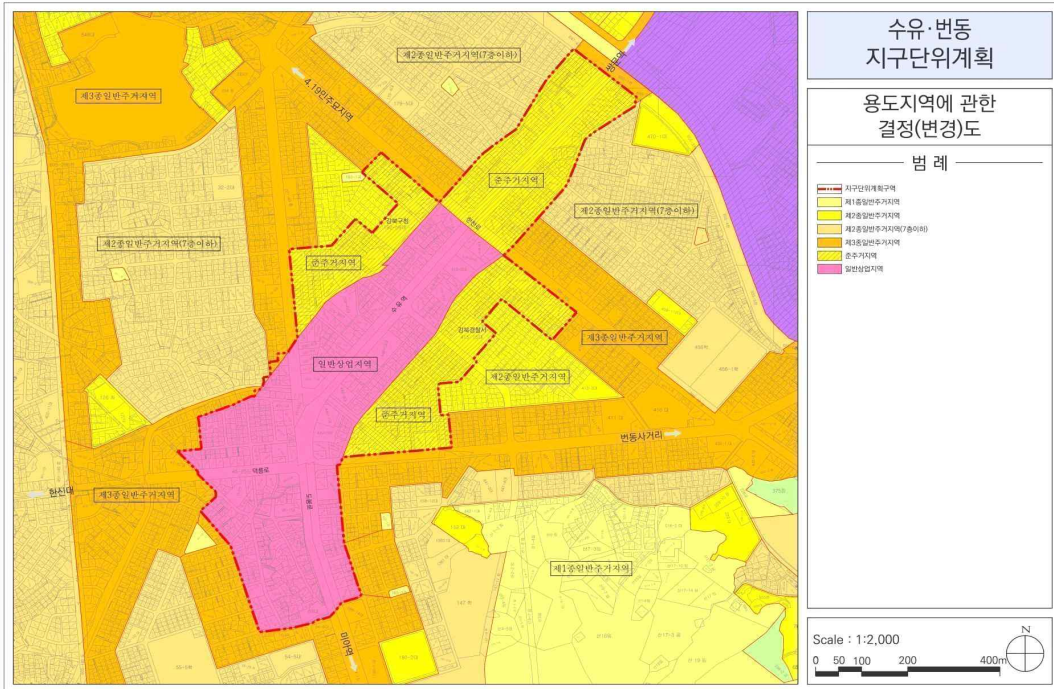
■ 양재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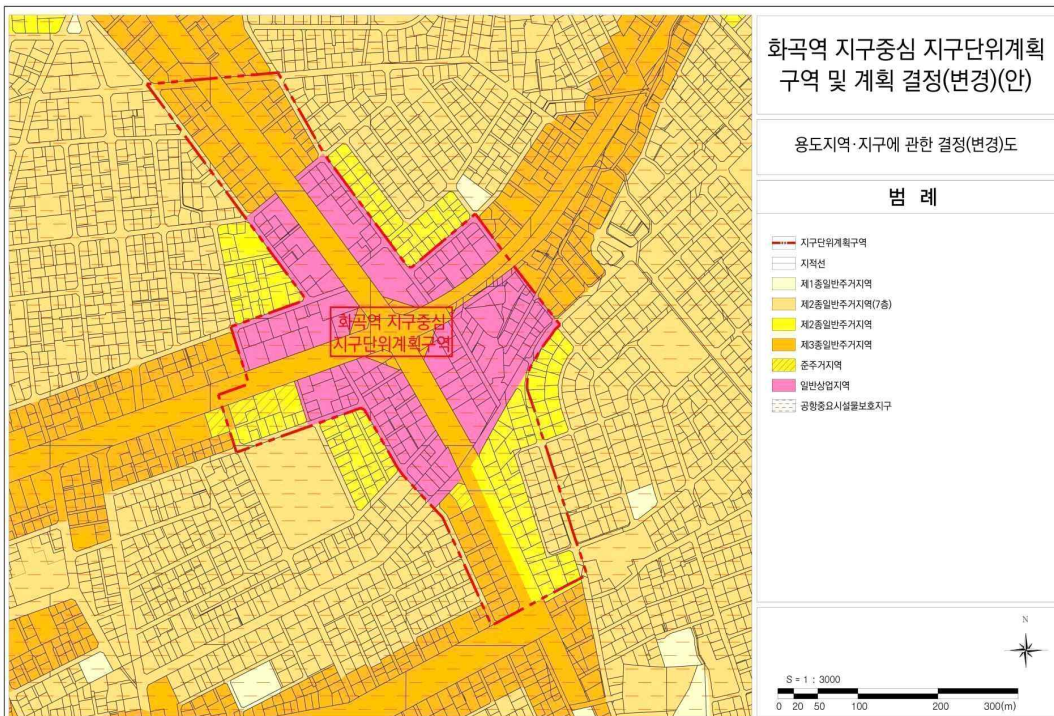
■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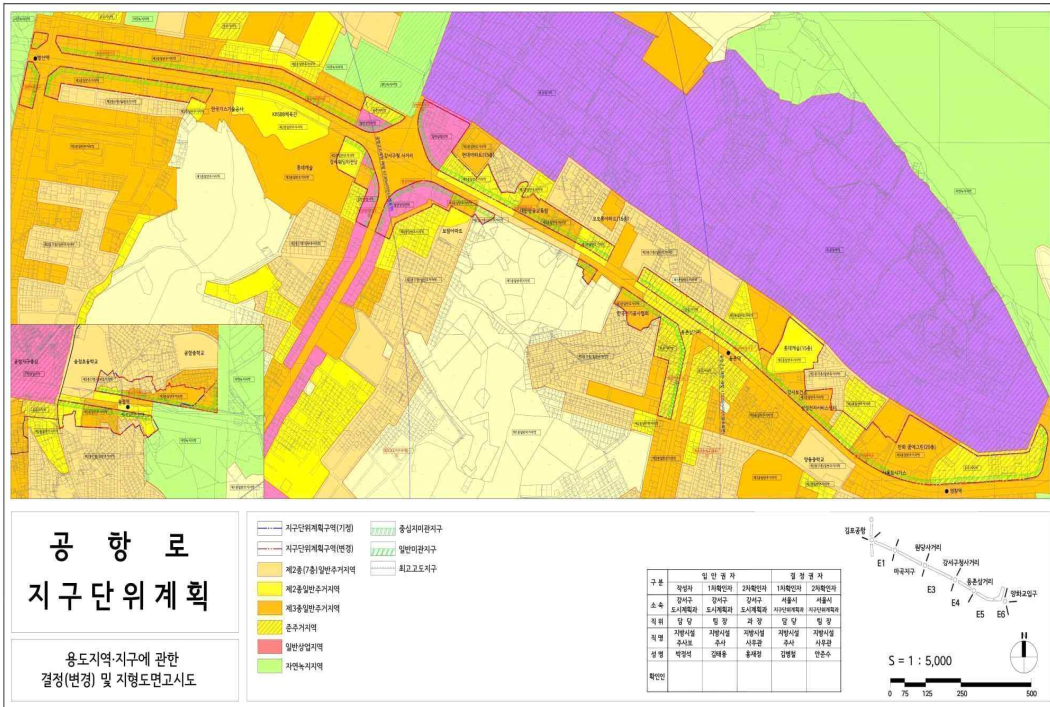
■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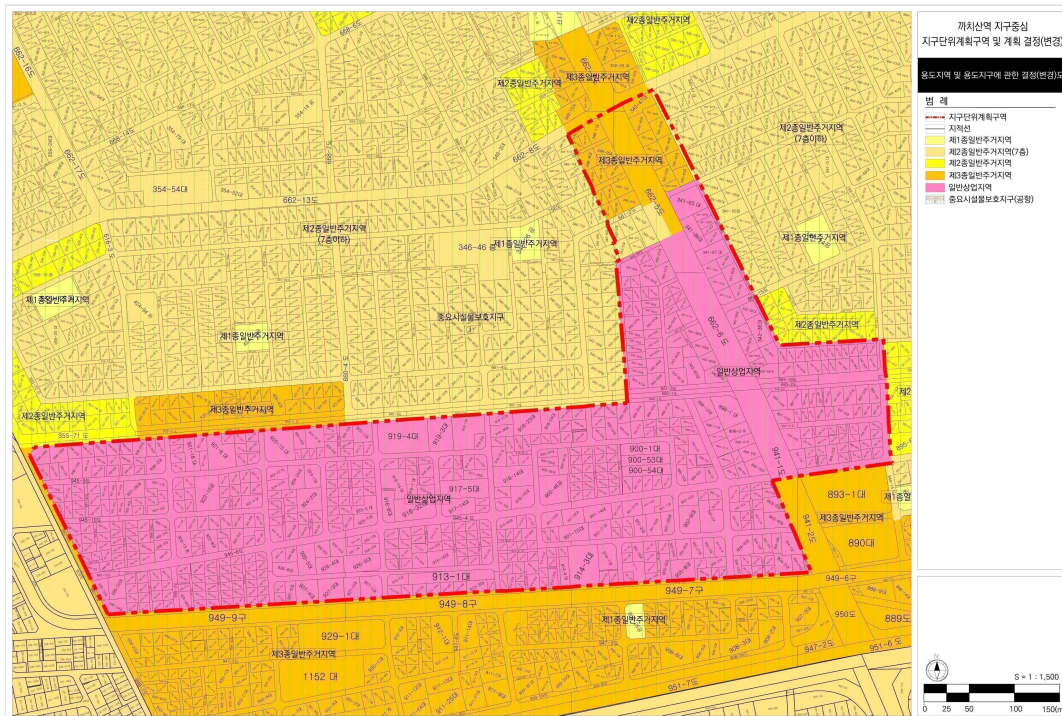
■ 화곡역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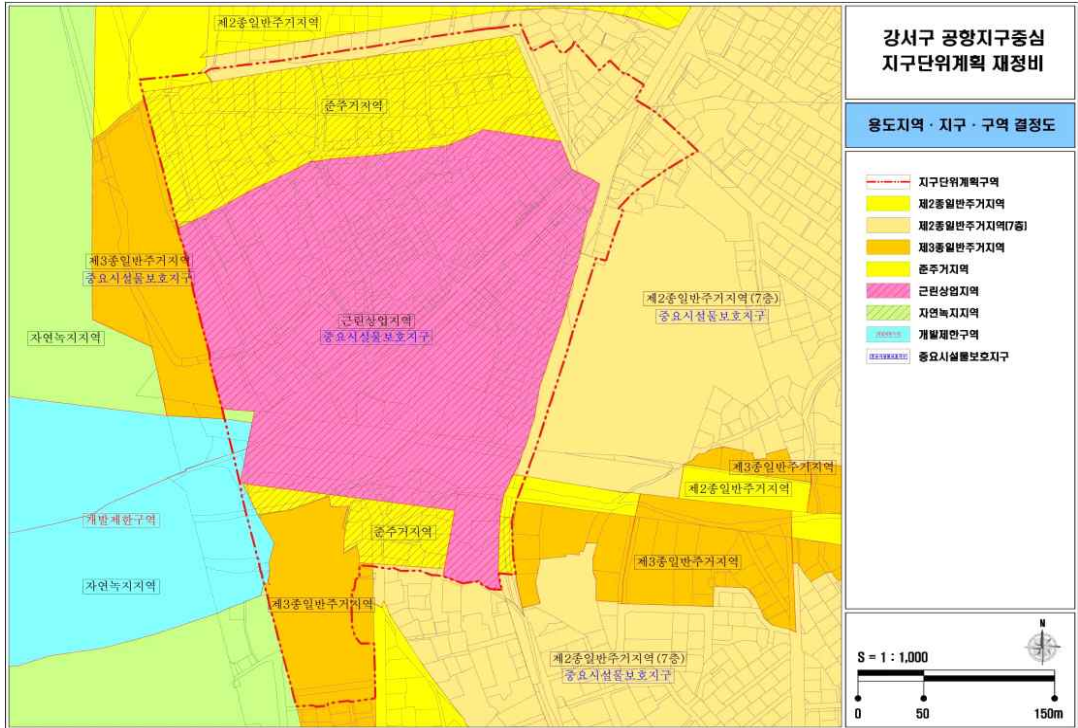
■ 공 항 로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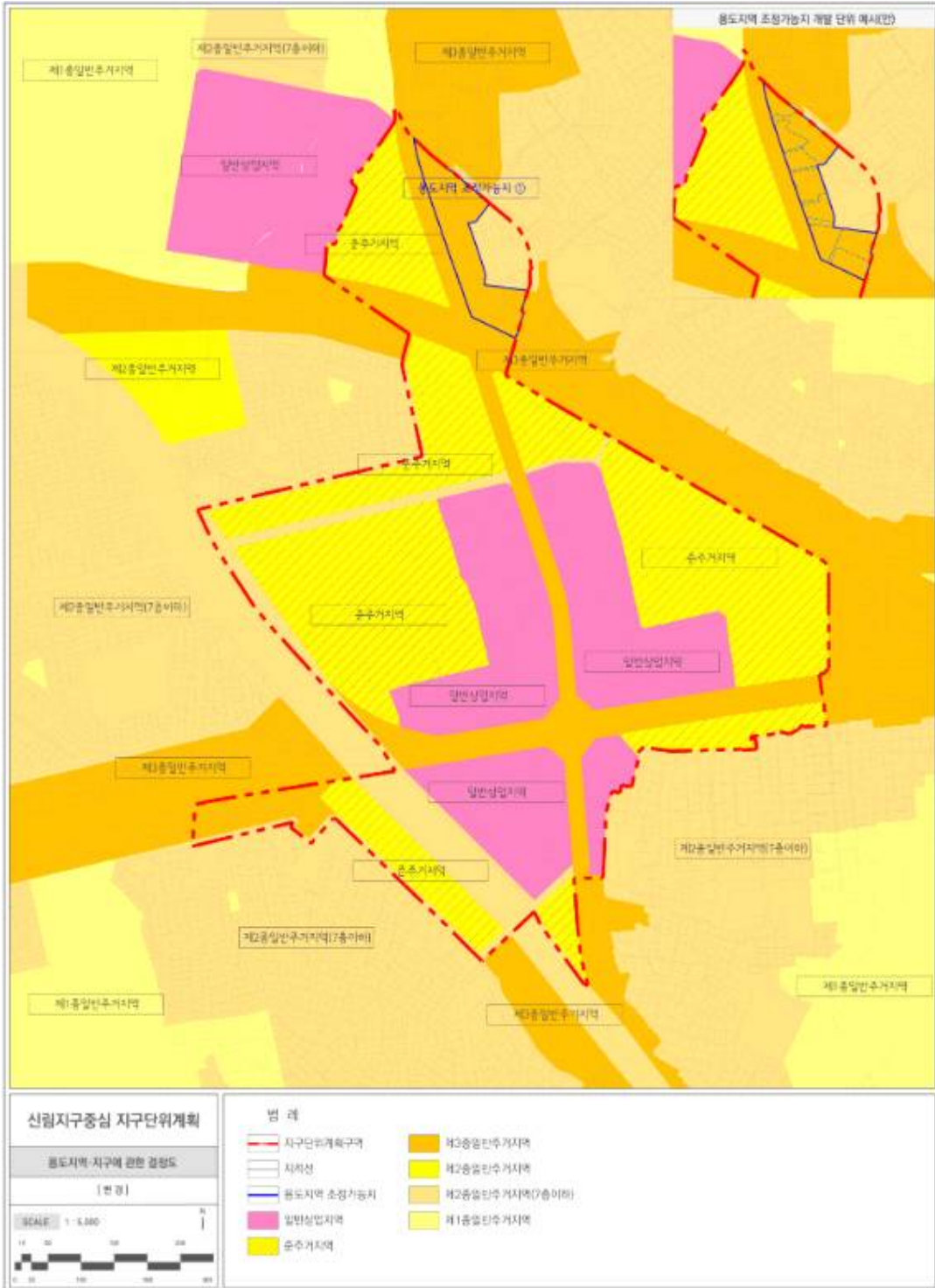
■ 까치산역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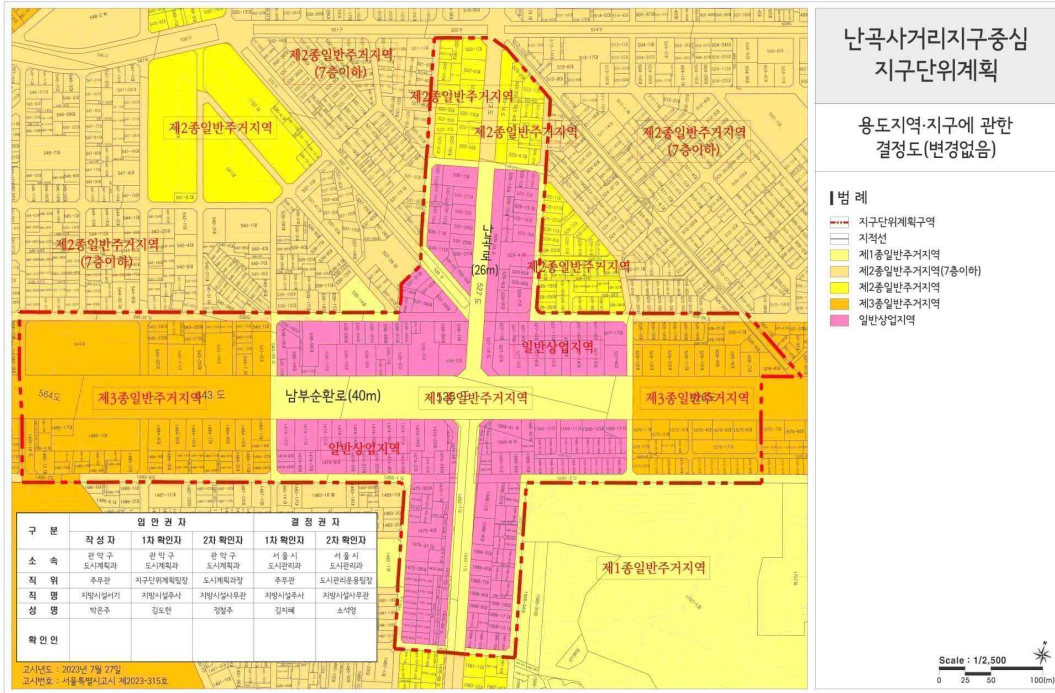
■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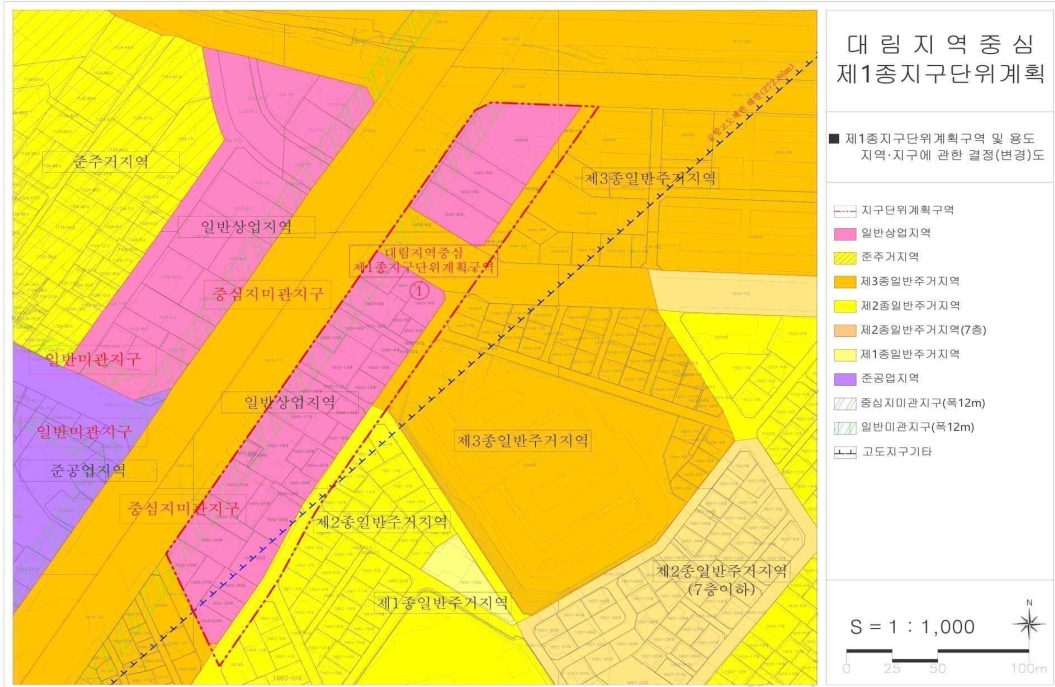
■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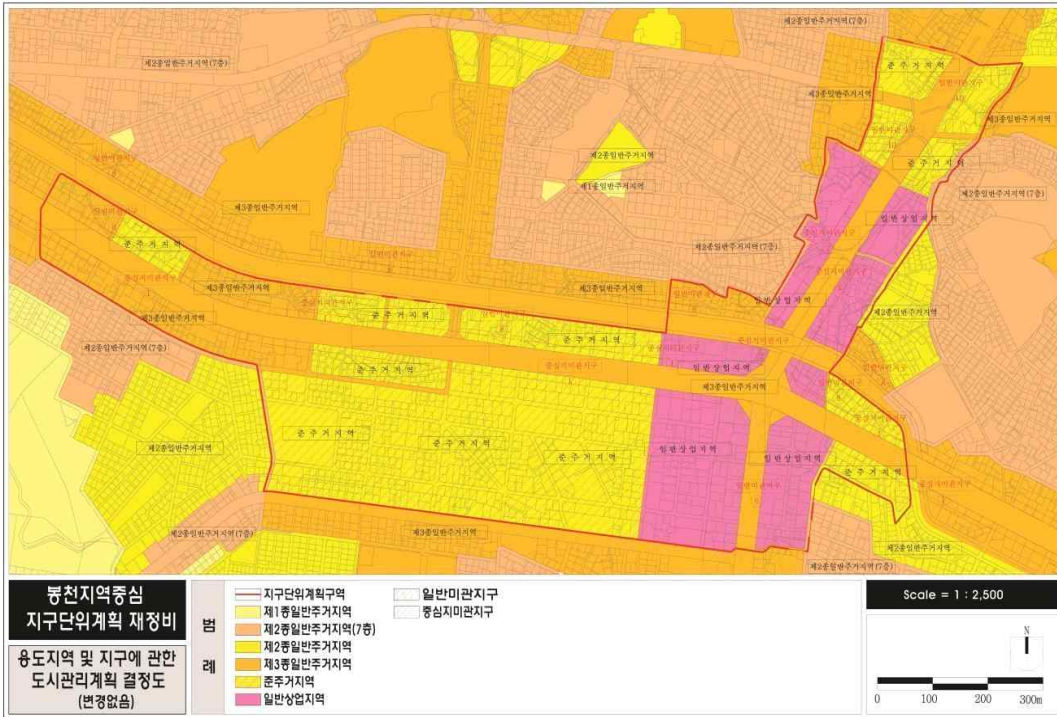
■ 난곡사거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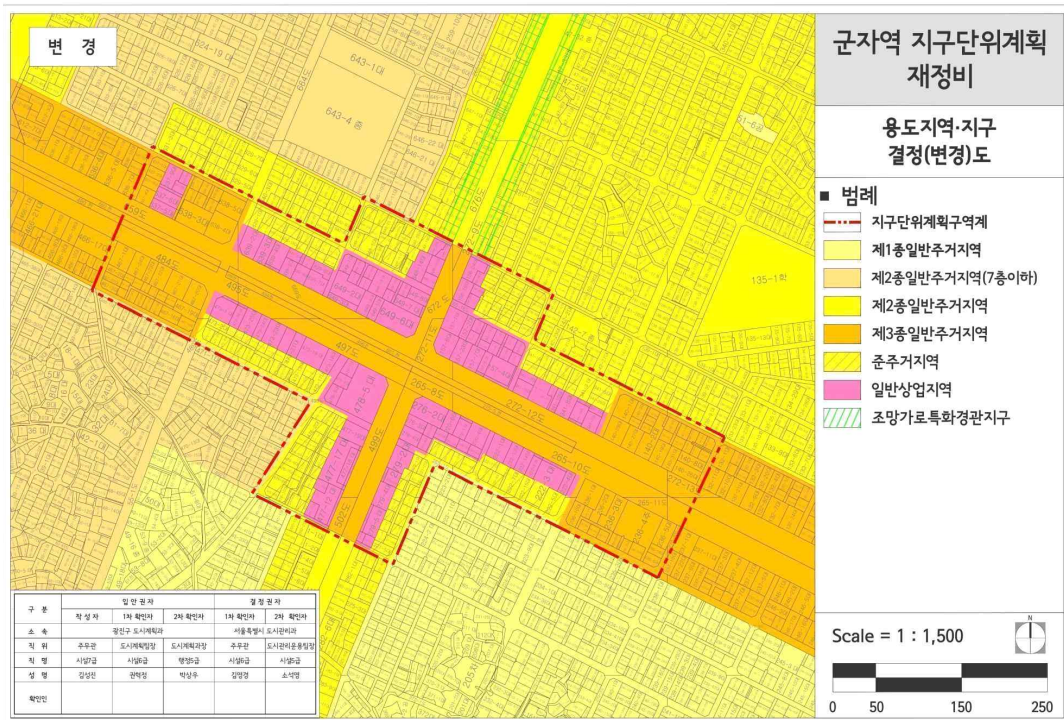
■ 대림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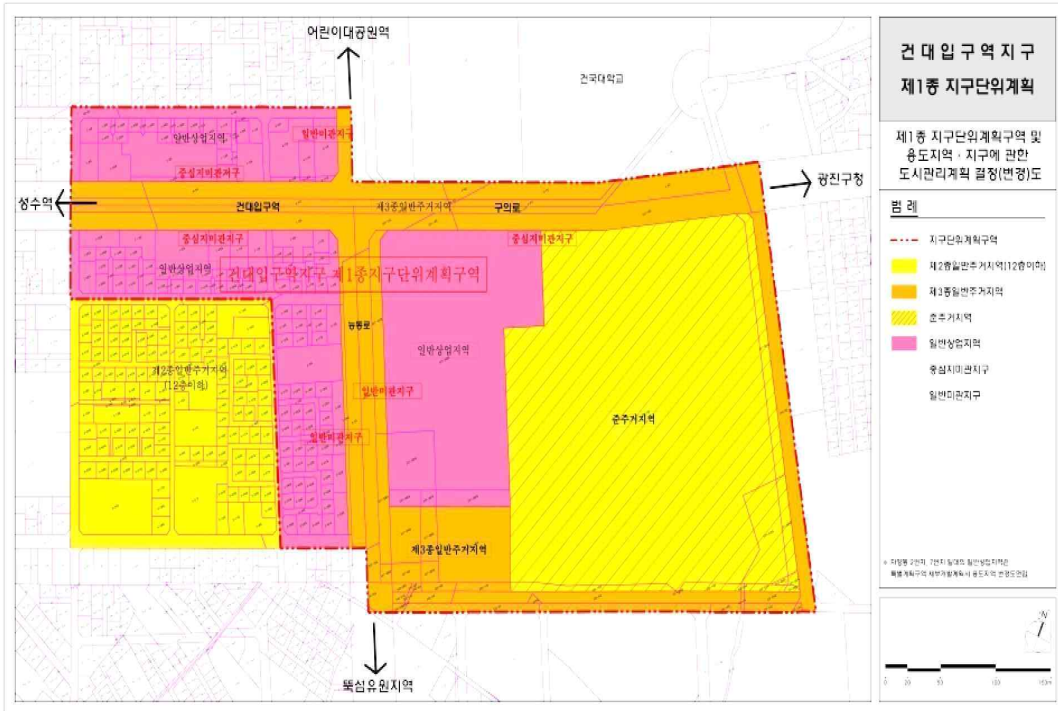
■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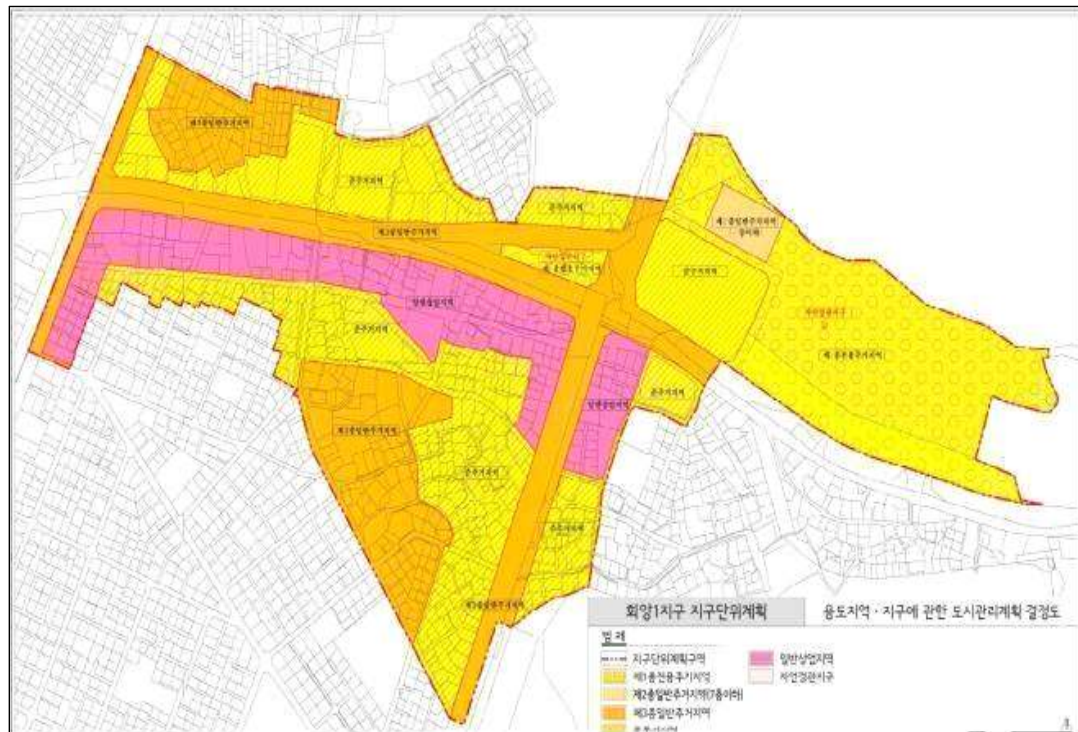
■ 군자역지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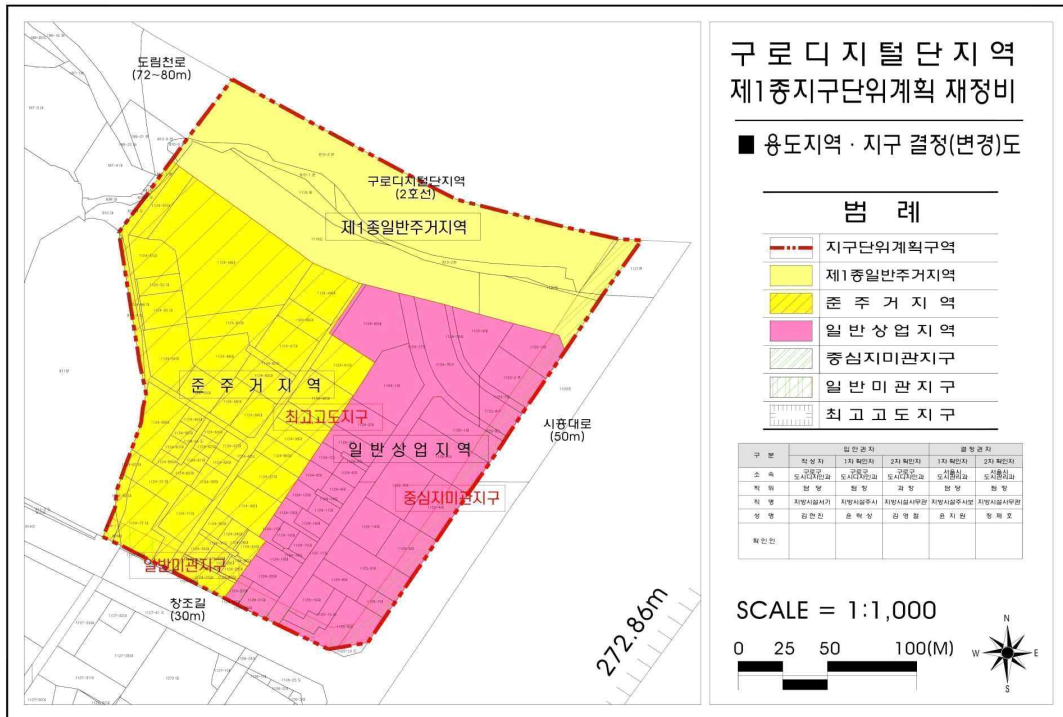
■ 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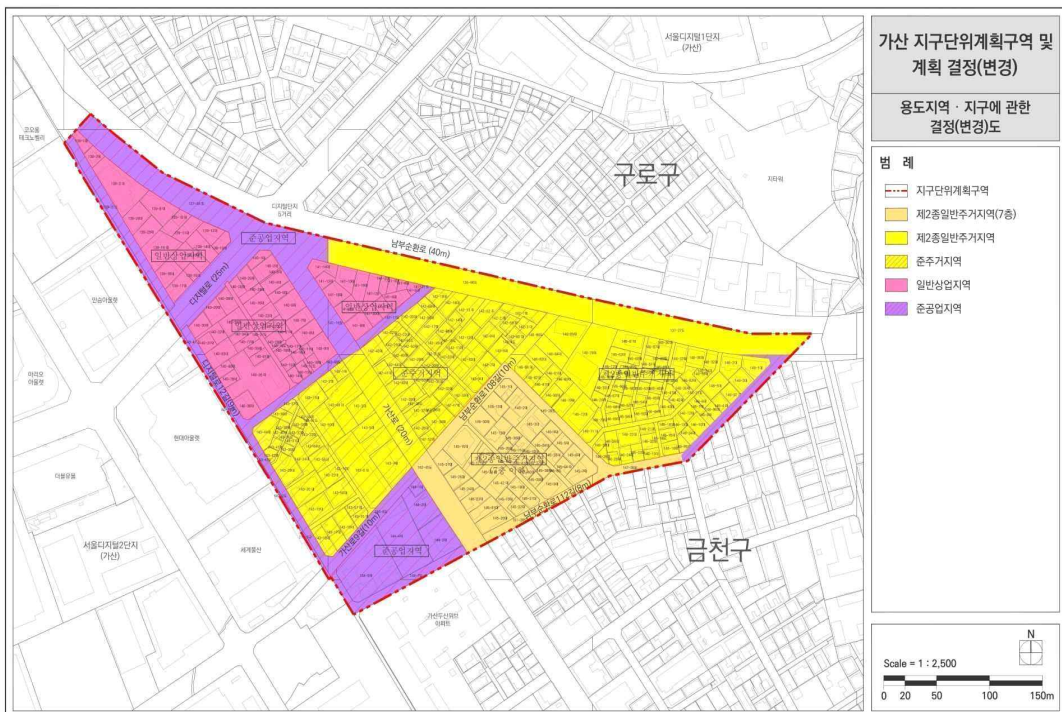
■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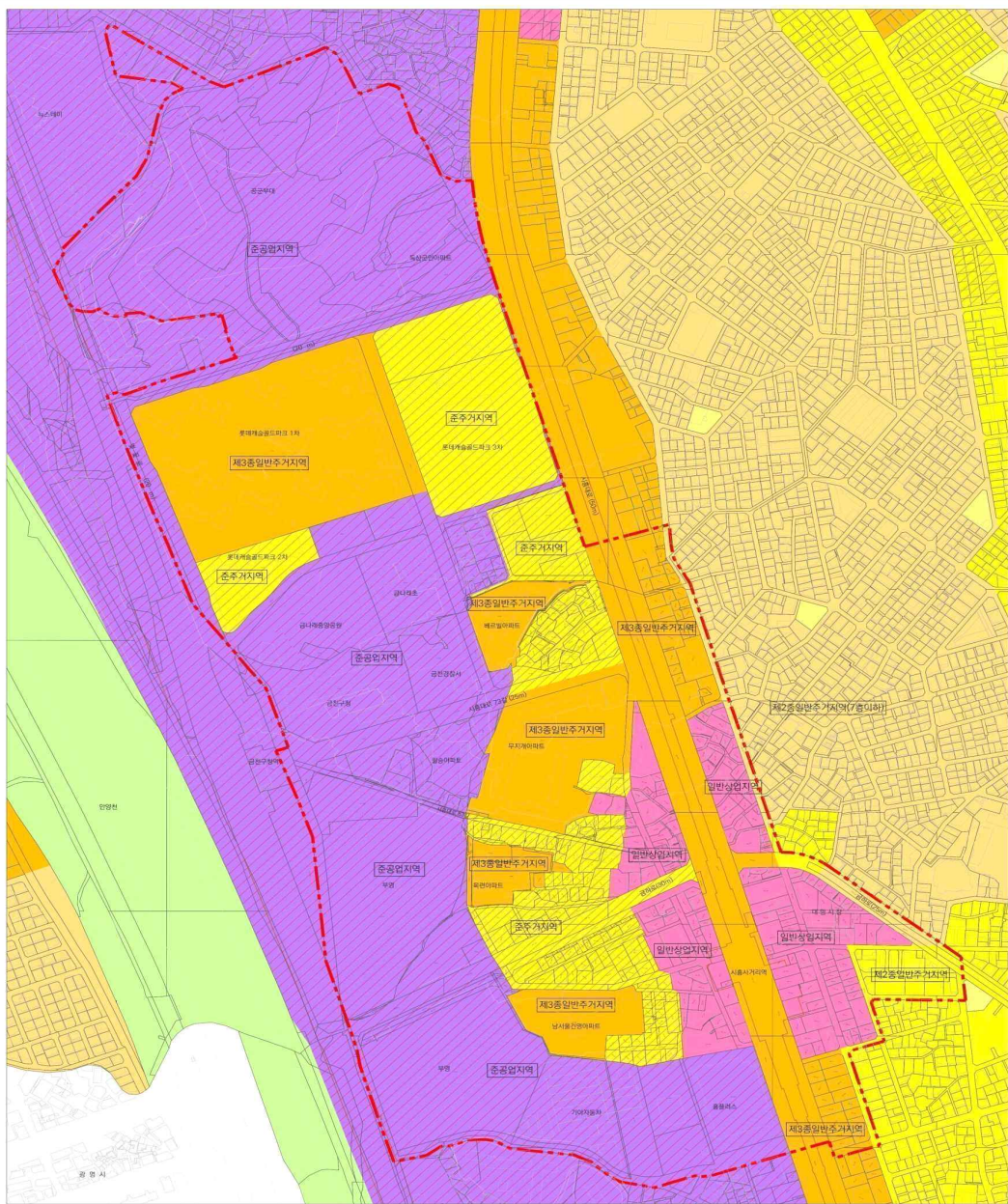
■ 구로디지털단지 지역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



■ 가산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



■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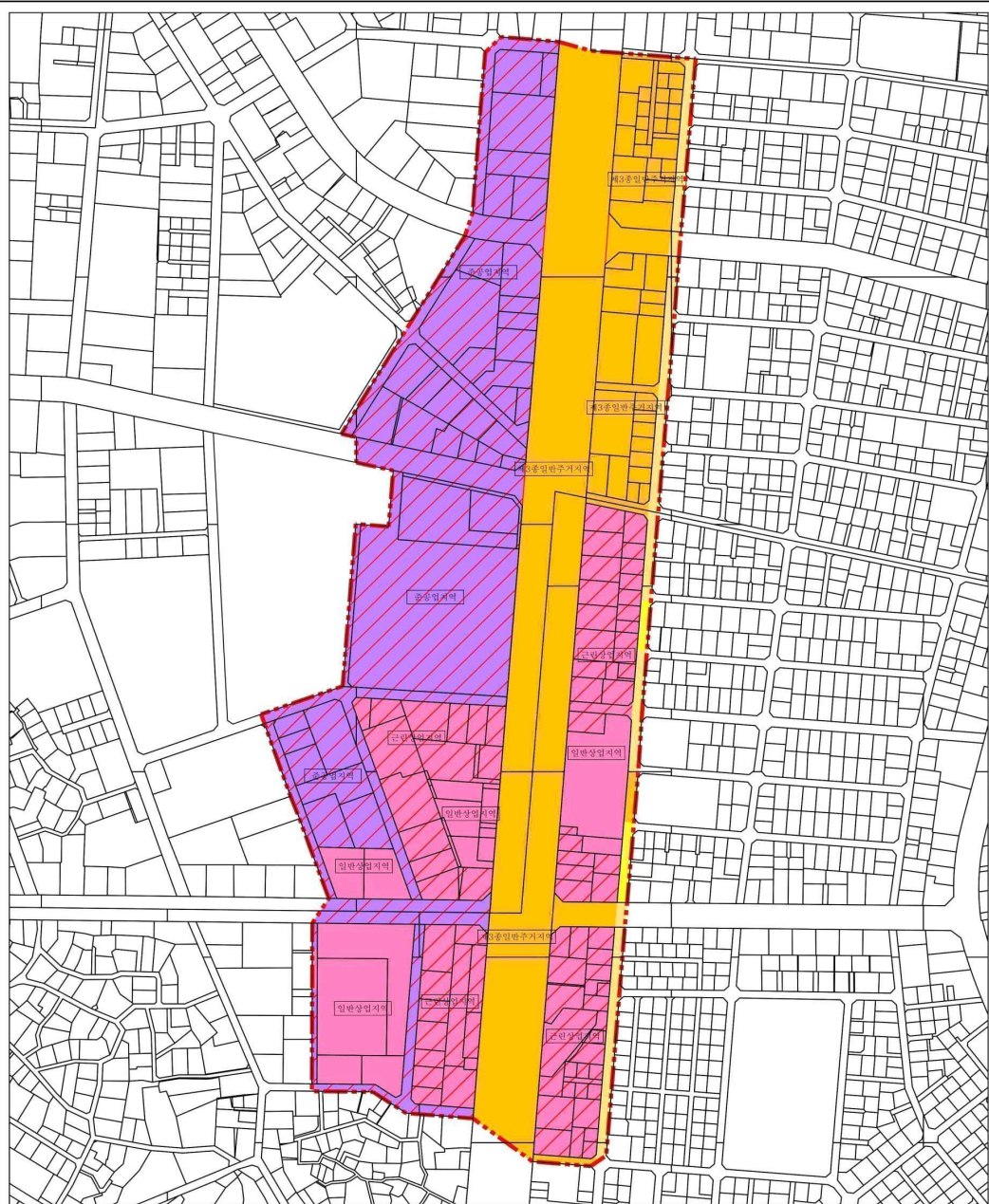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도

■ 범례

- | | |
|-----------------|--------|
| --- 지구단위계획구역 | 준주거지역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준공업지역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자연녹지지역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SCALE 1:1,500
0 50 100 200m

■ 독산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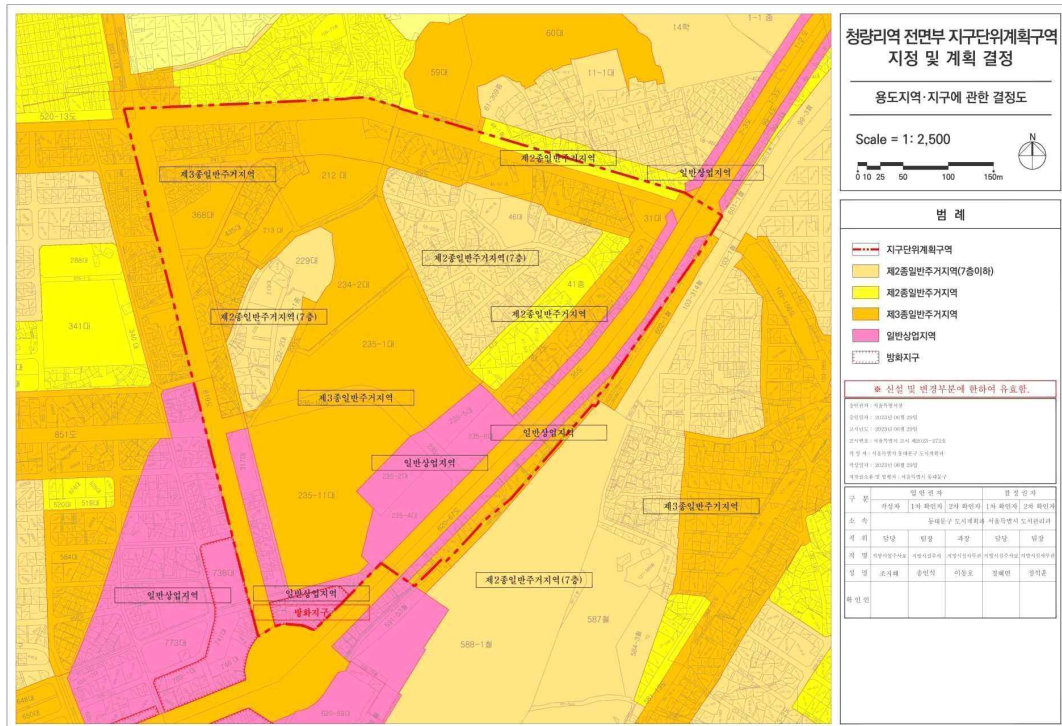
■ 범례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반상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종이하)	근린상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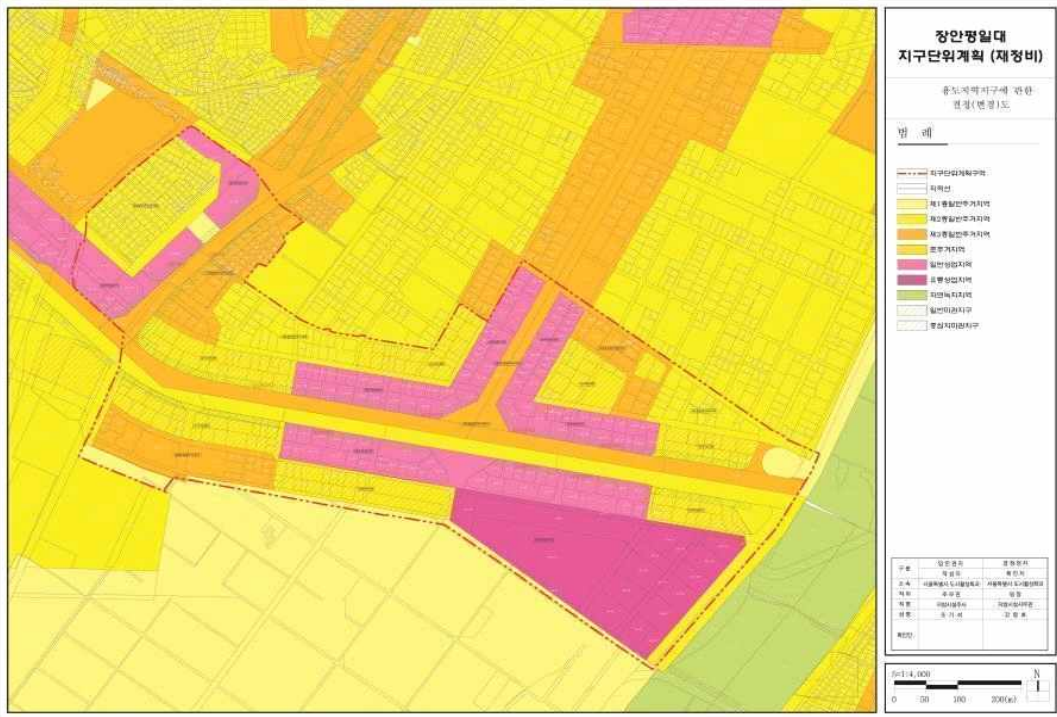
N

Scale = 1 : 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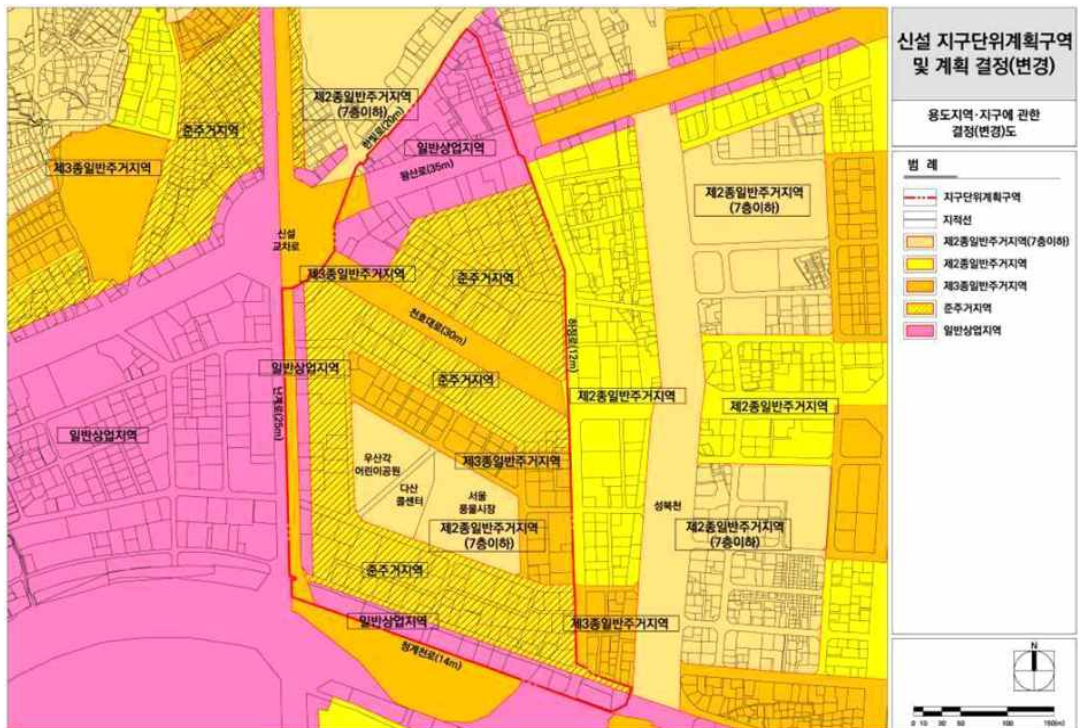
0 50 100 15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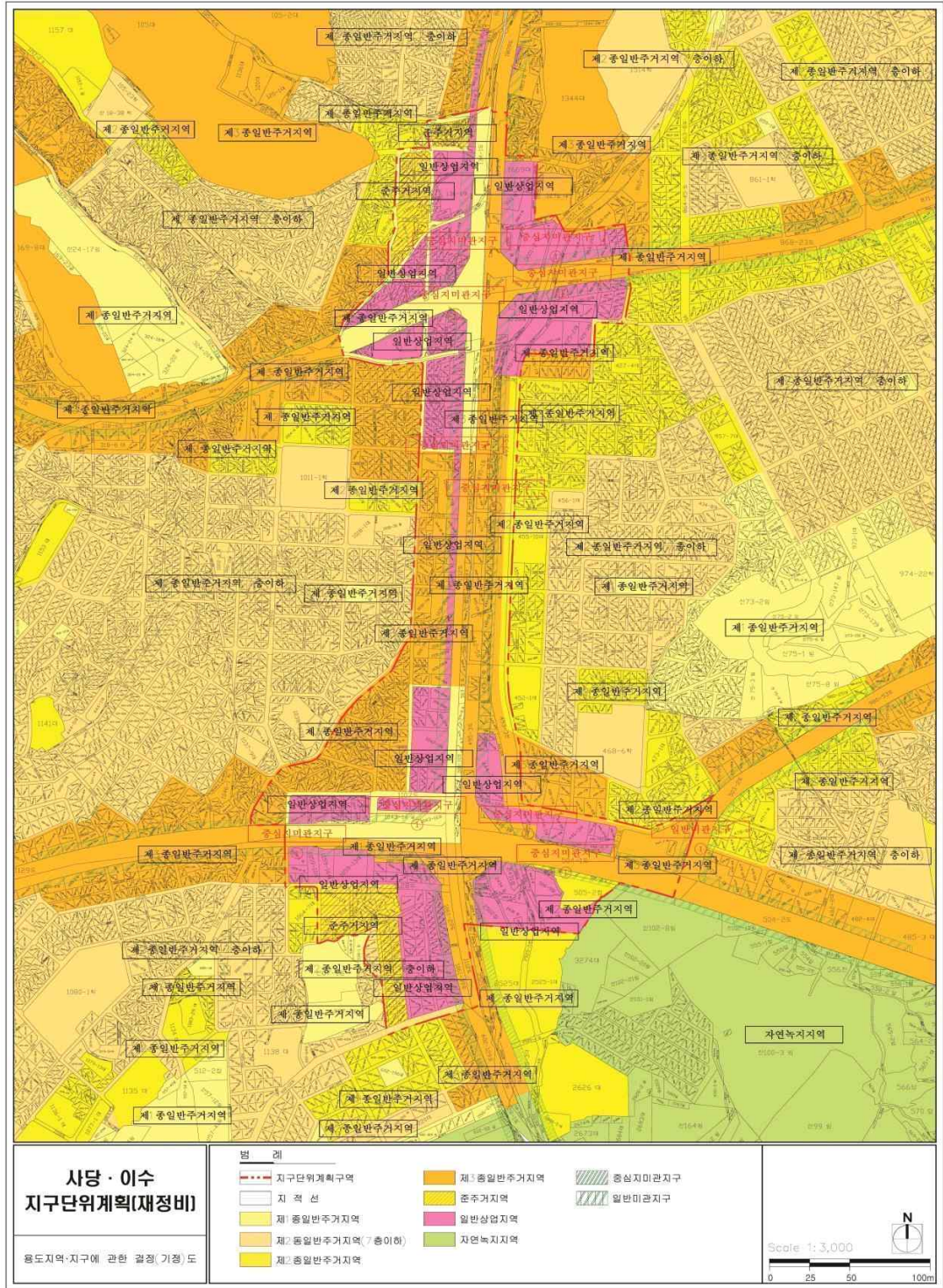
■ 장안평일대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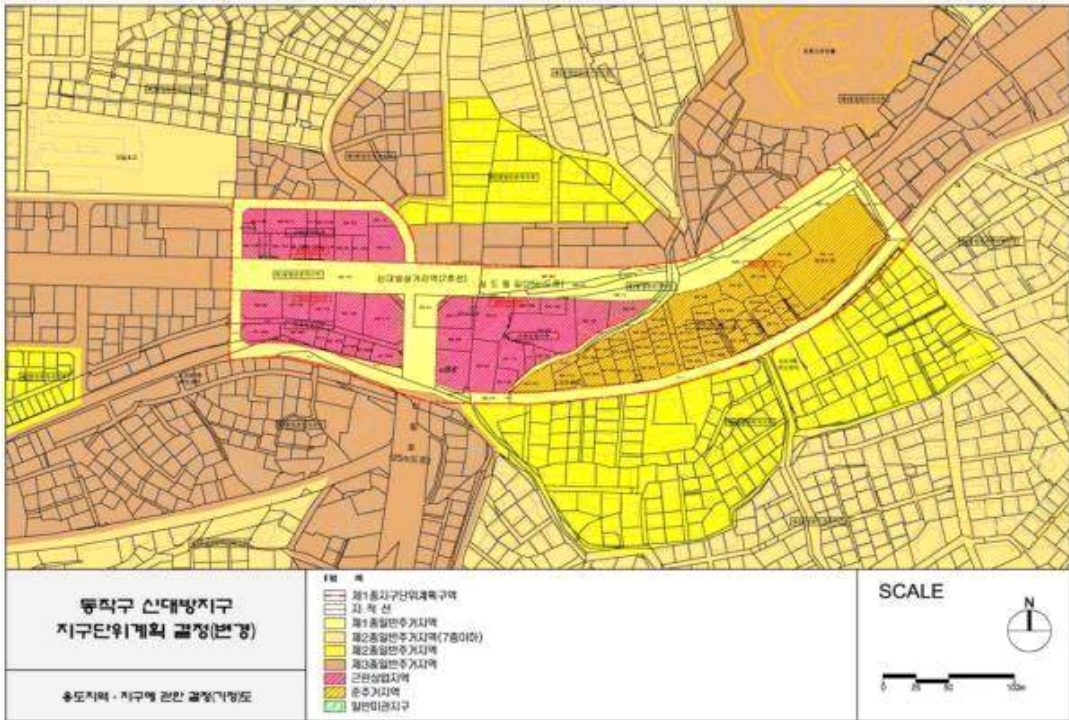
■ 신설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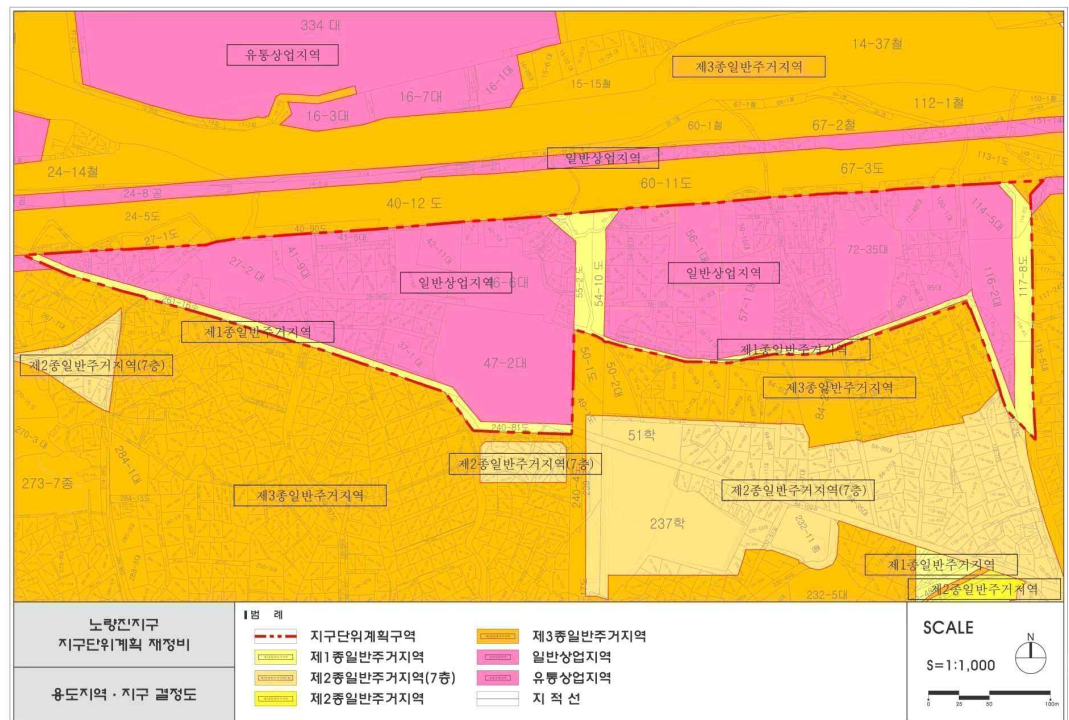
■ 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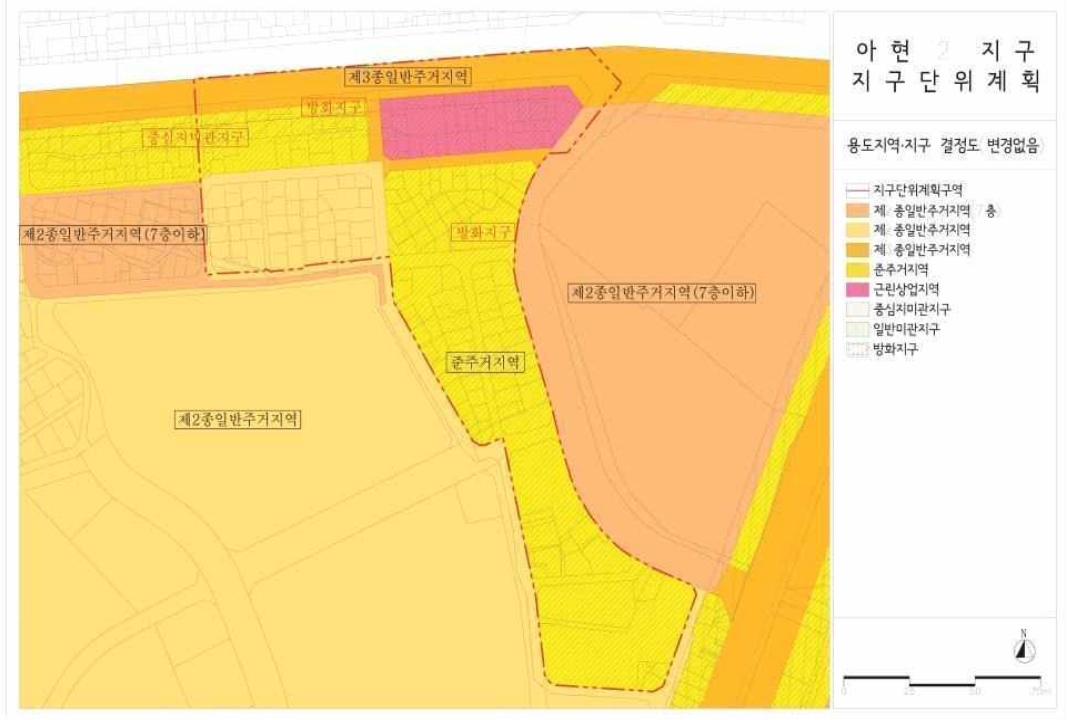
■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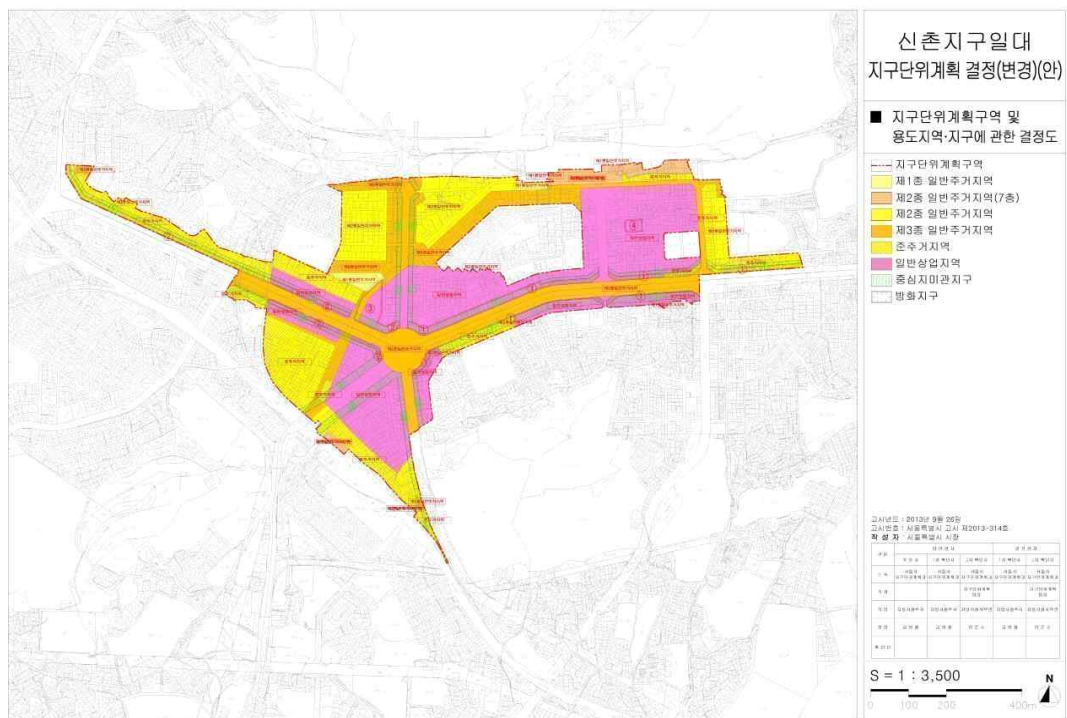
■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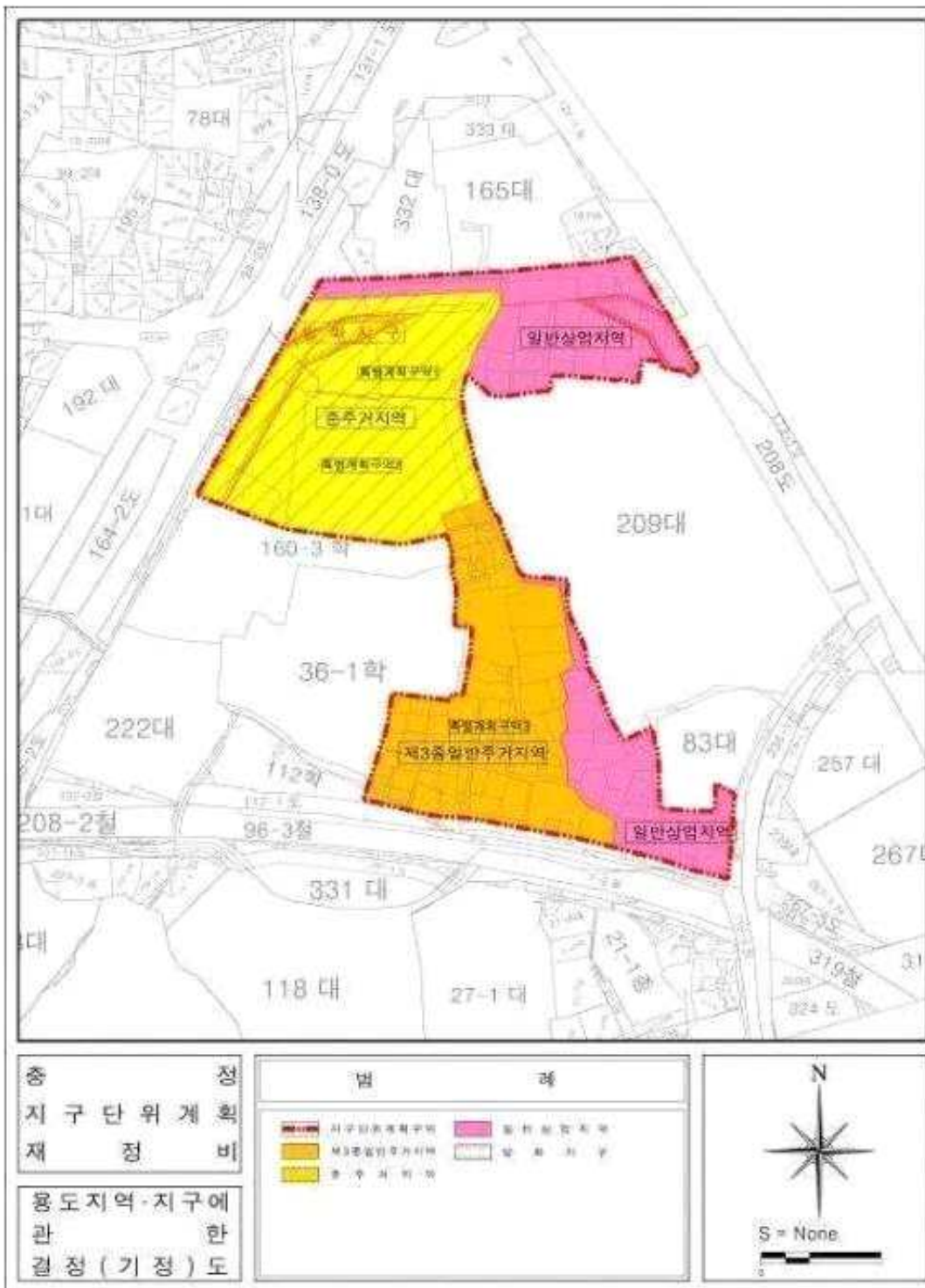
■ 아현2지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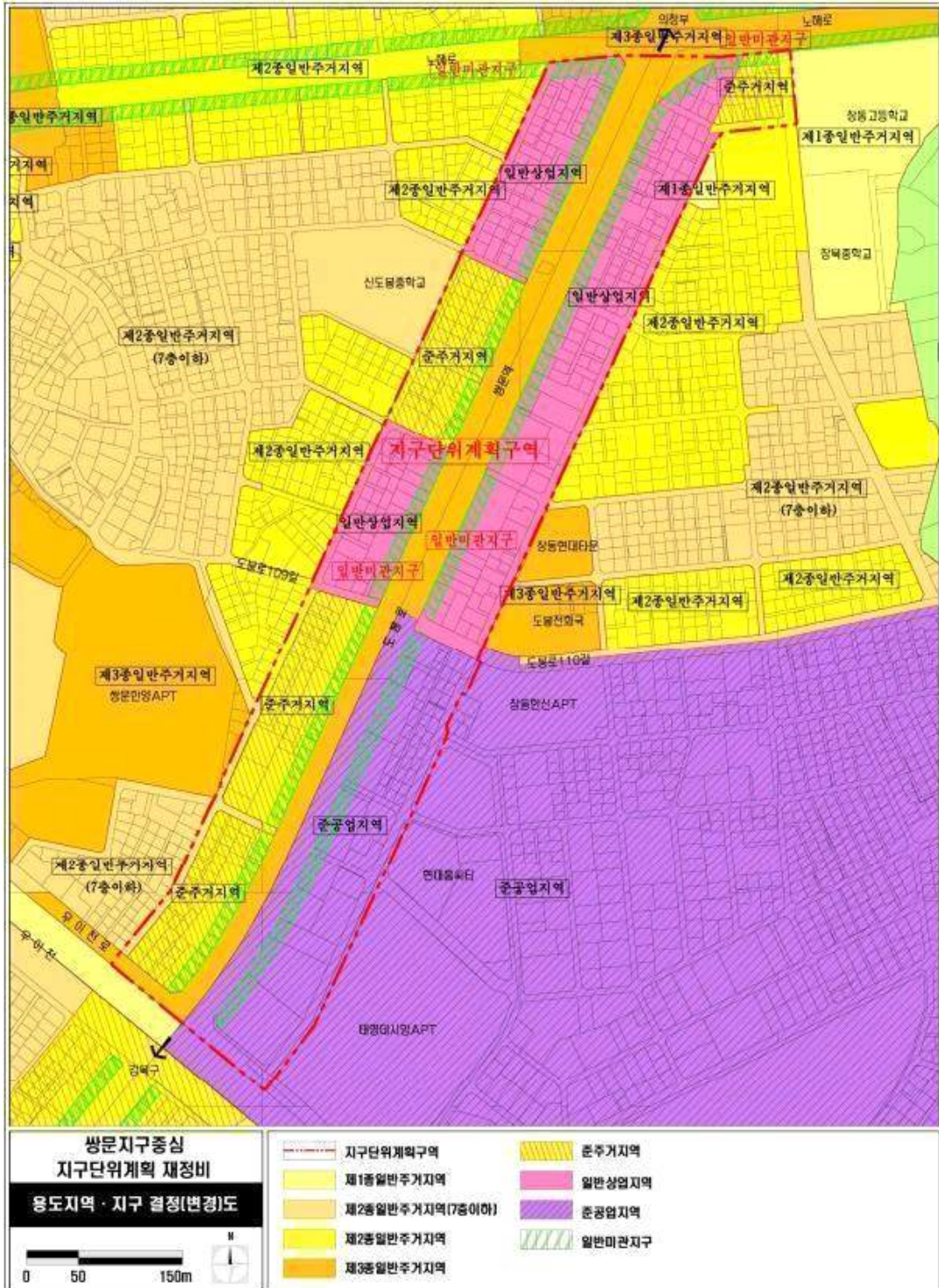
■ 충청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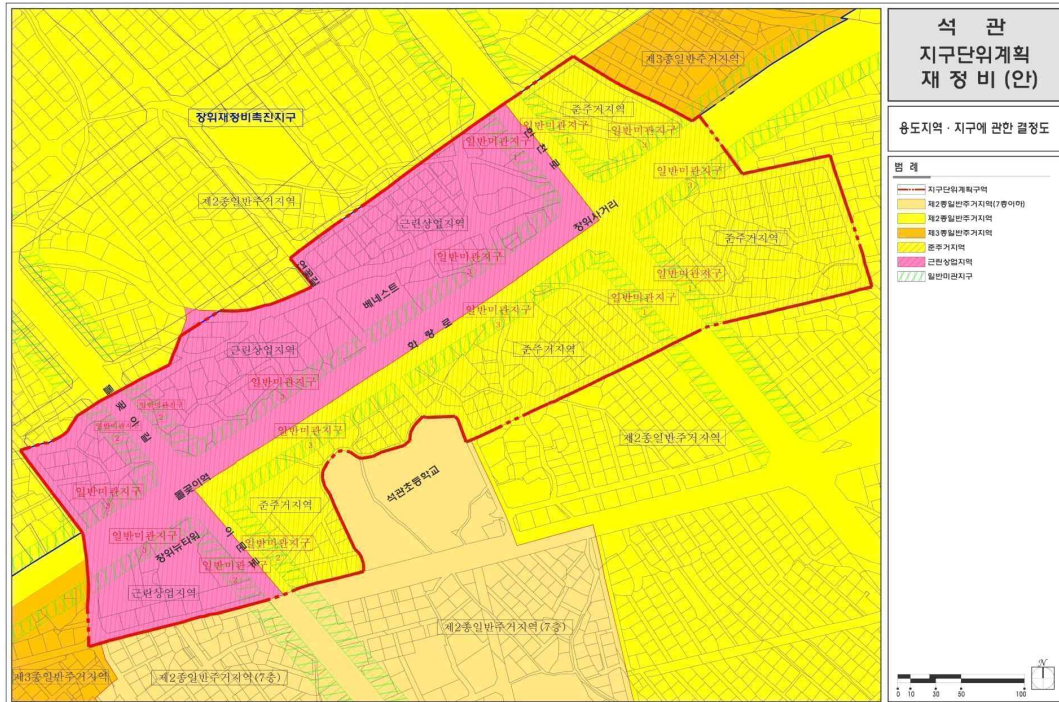
■ 공릉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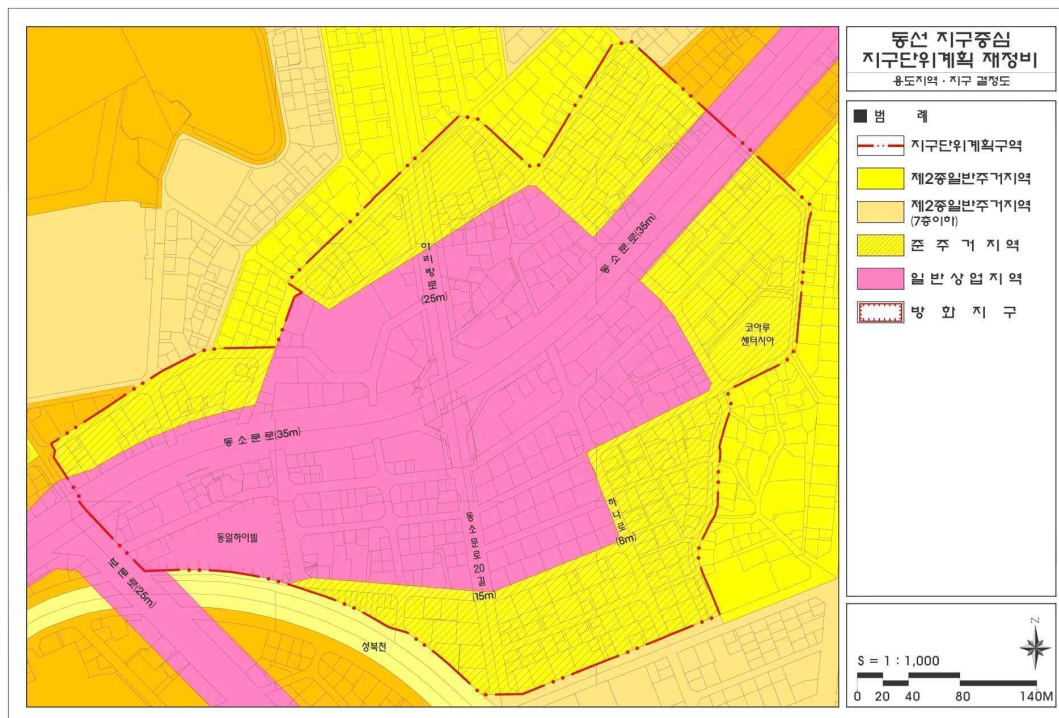
■ 쌍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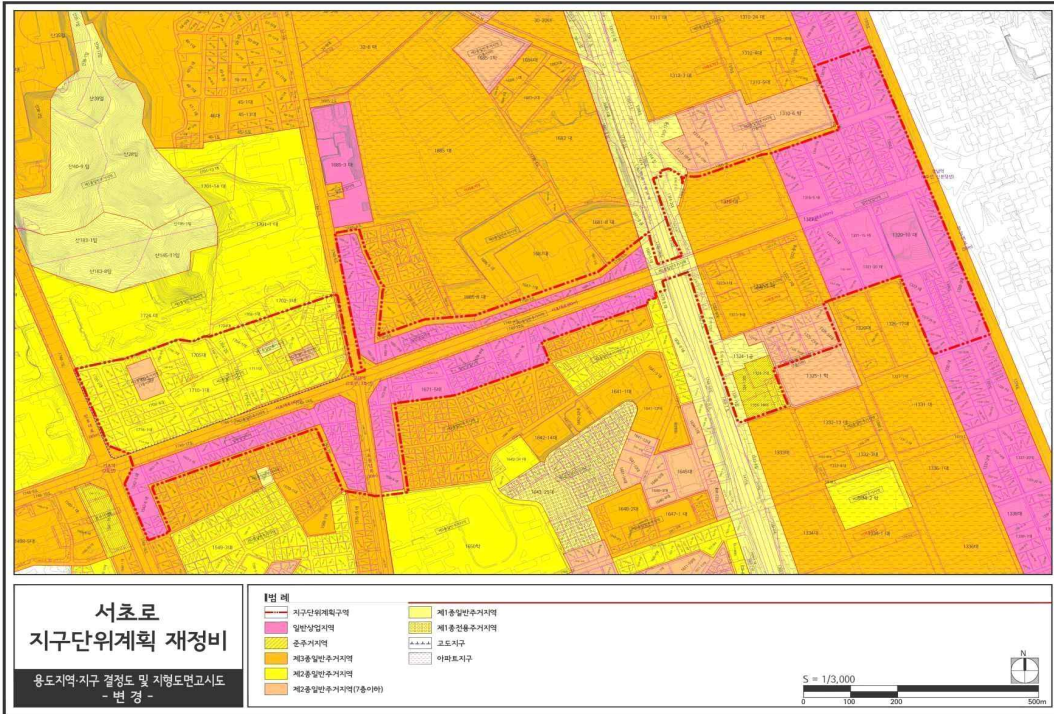
■ 석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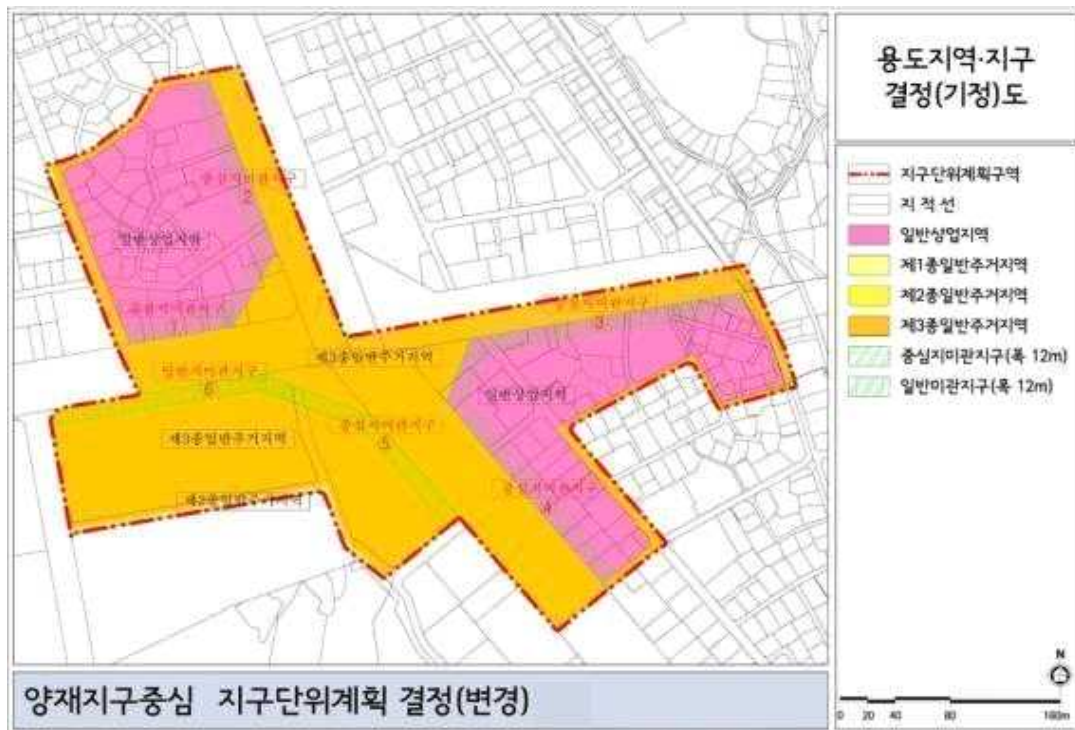
■ 동선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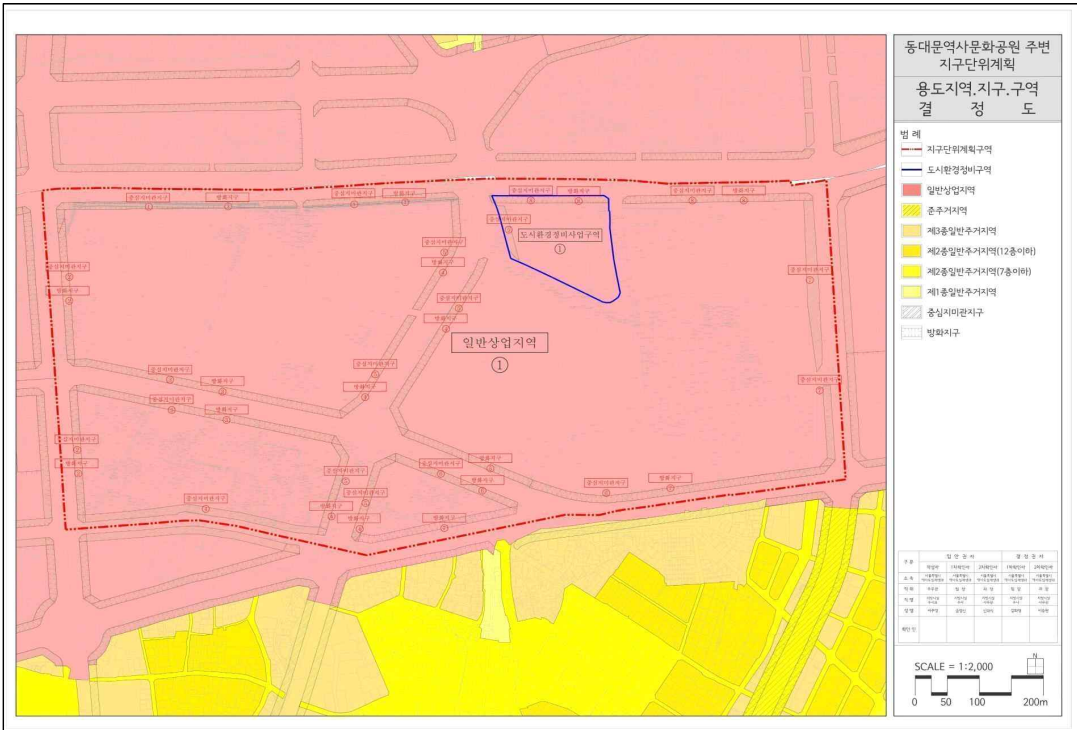
■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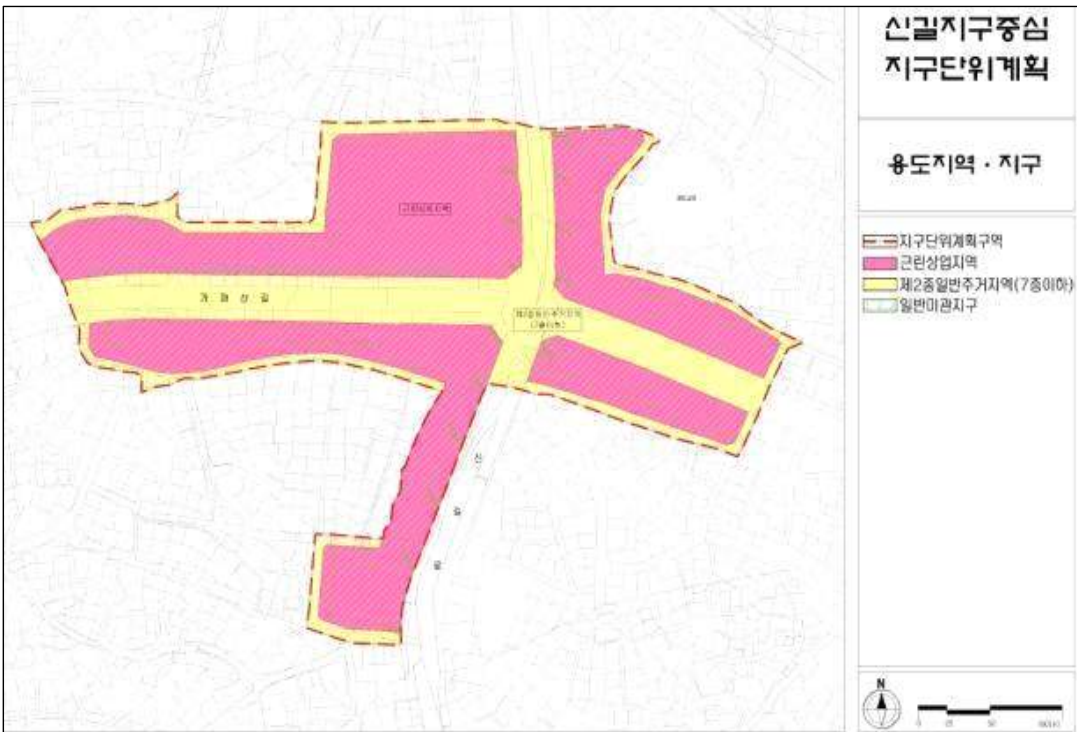
■ 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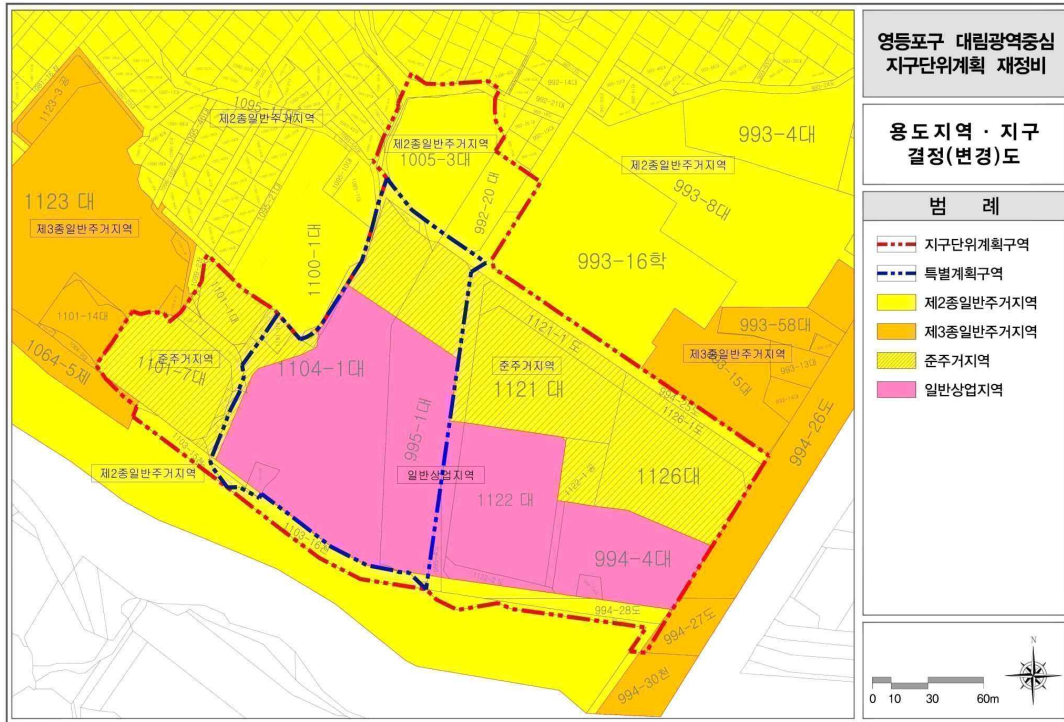
■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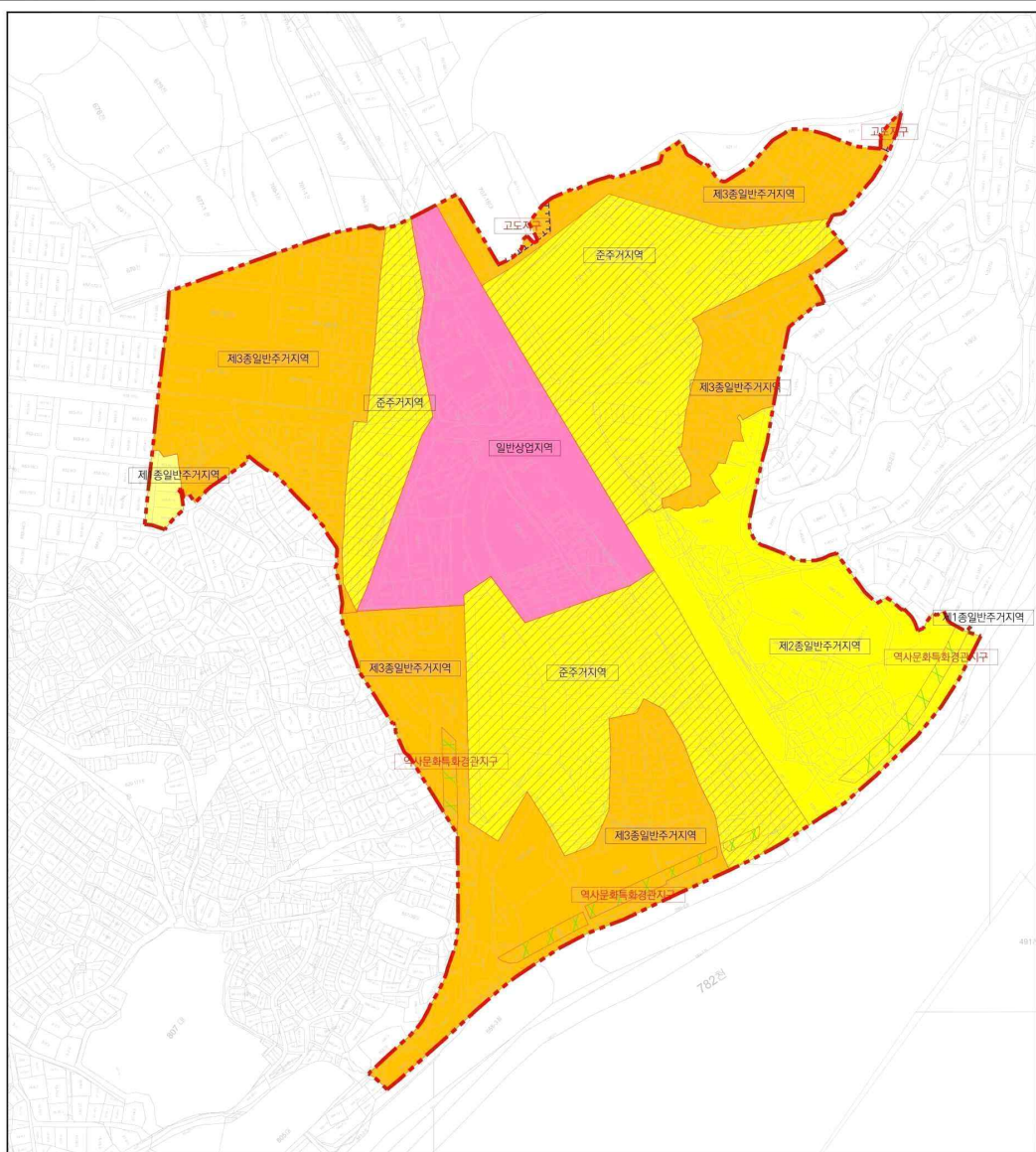
■ 신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 대림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 한남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한남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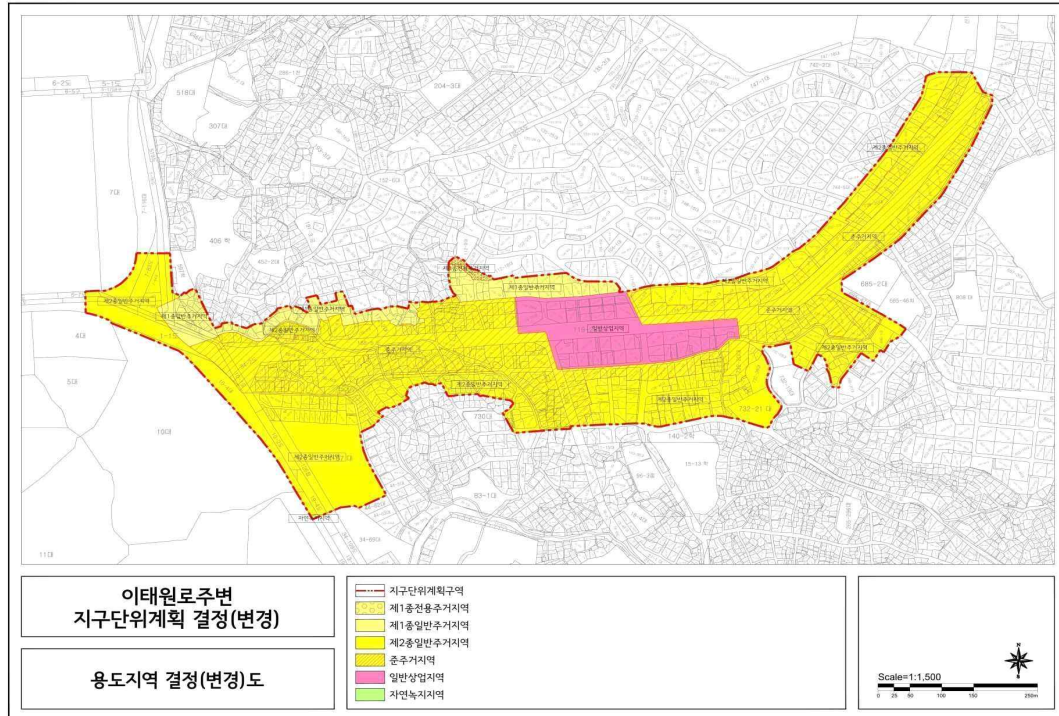
Scale=1:3000

0 25 50 100 150 25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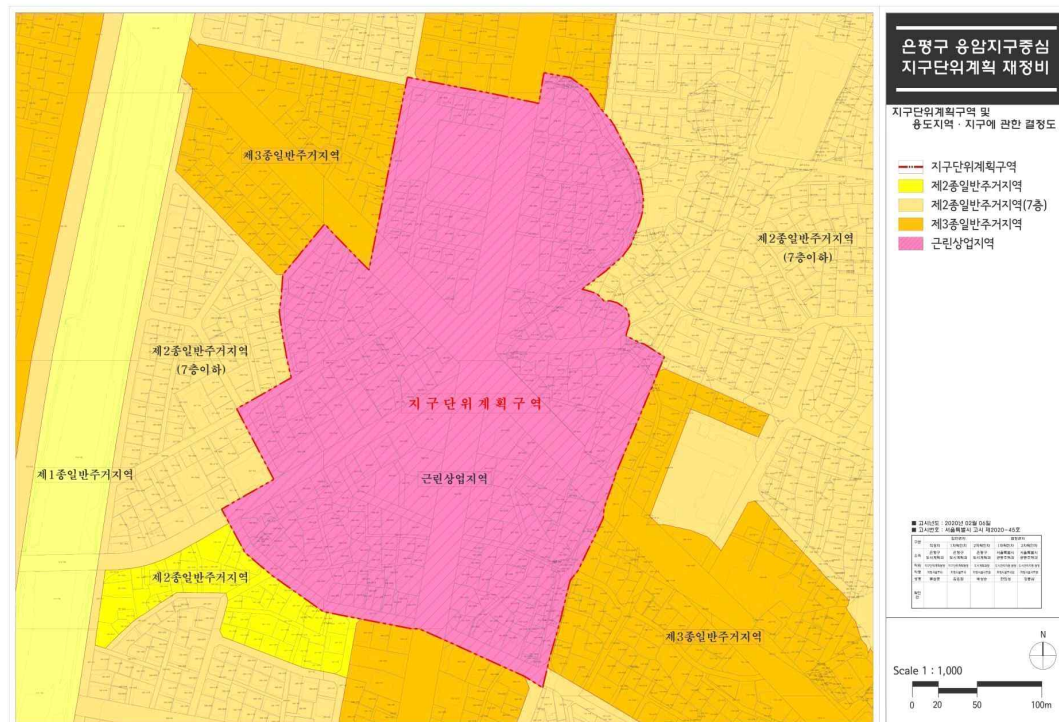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 고도지구(18m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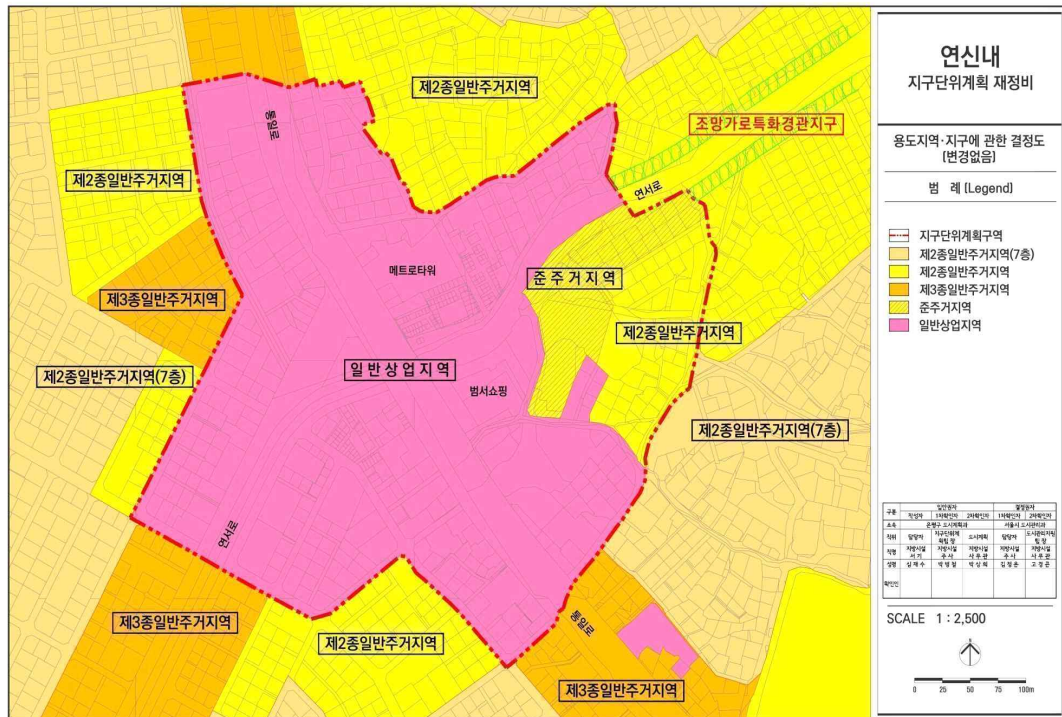
■ 이태원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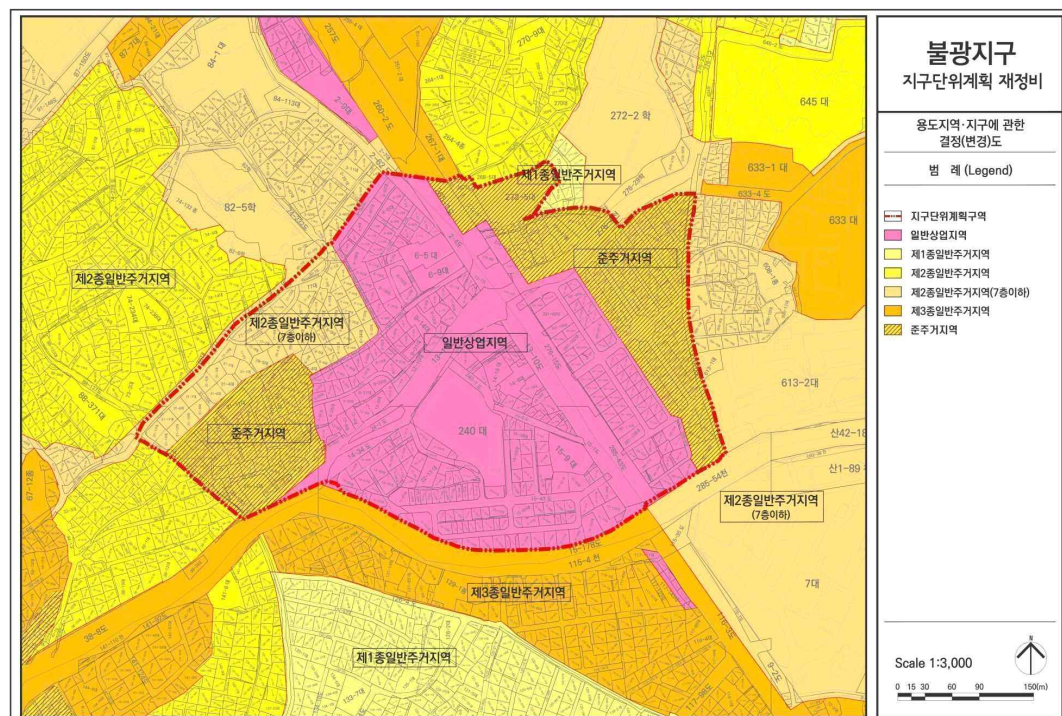
■ 응암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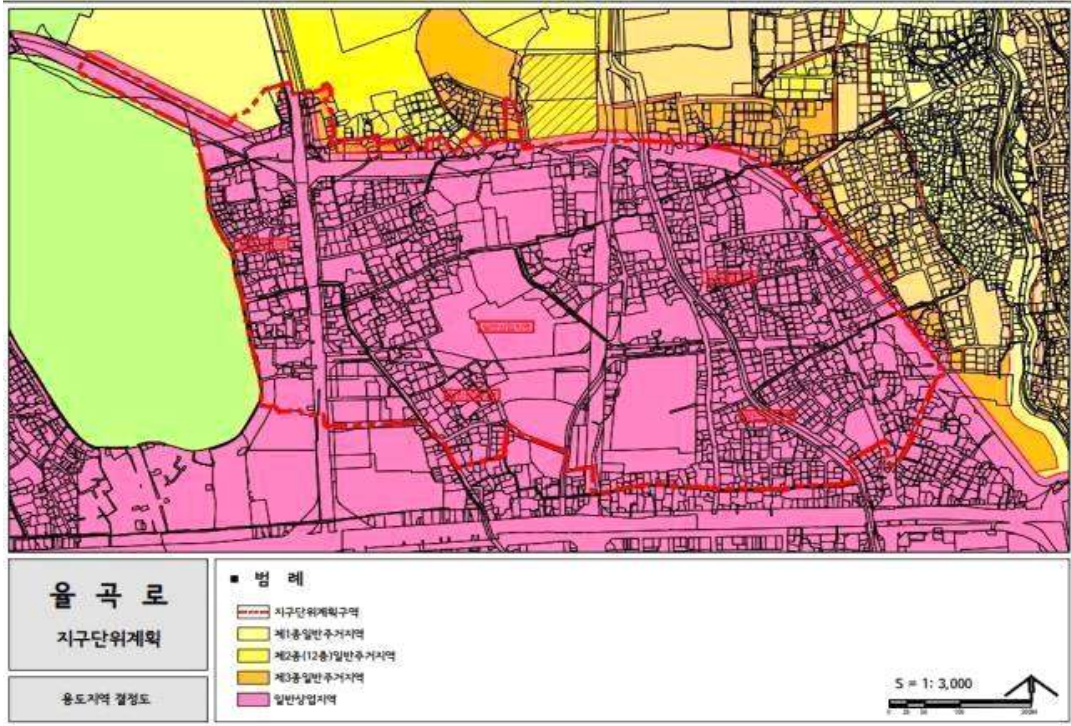
■ 연신내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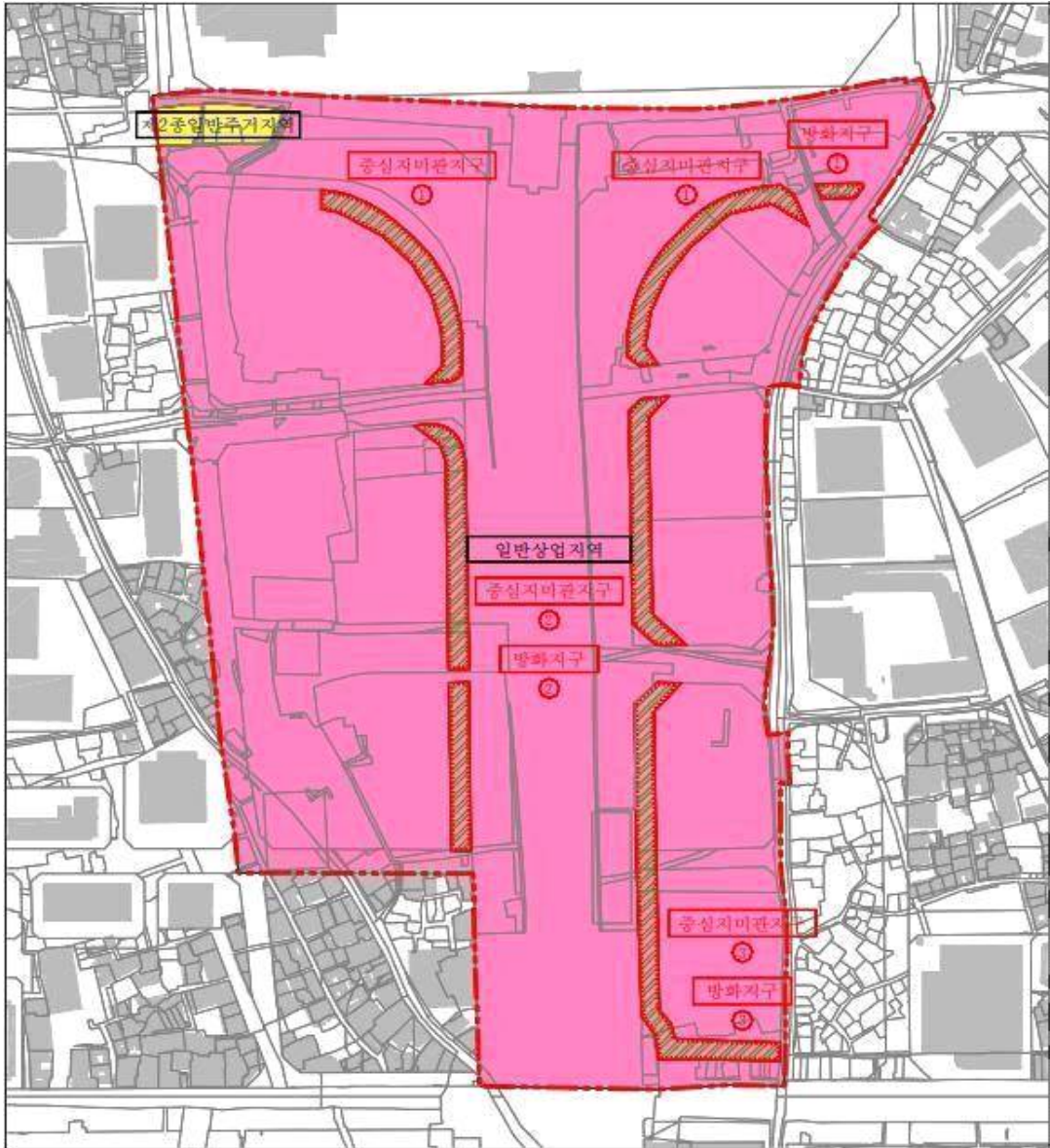
■ 불광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 을곡로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 범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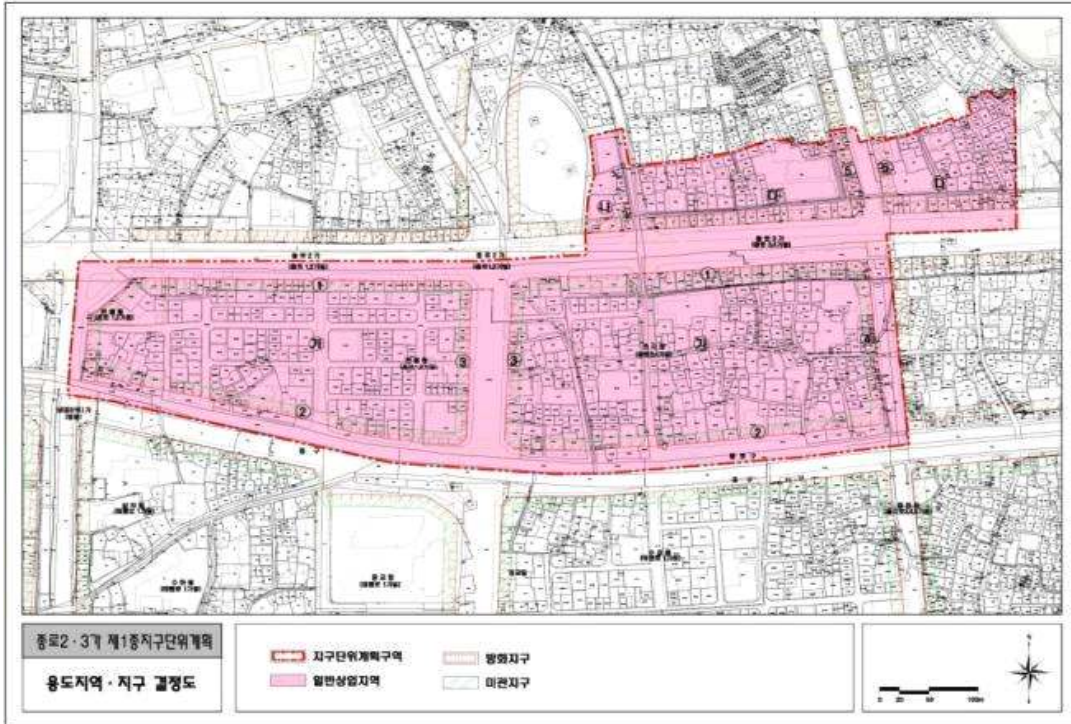
- | | |
|---|---|
|  지구단위계획구역 |  중심지미관지구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방화지구 |
|  일반상업지역 | |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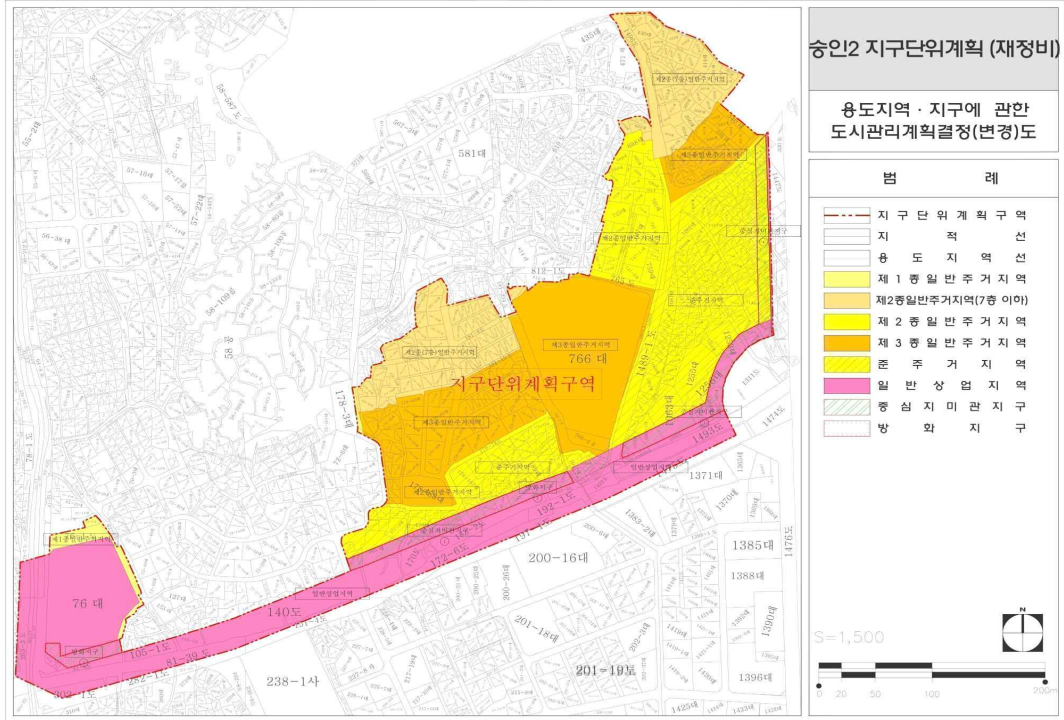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없음)



■ 종로2·3가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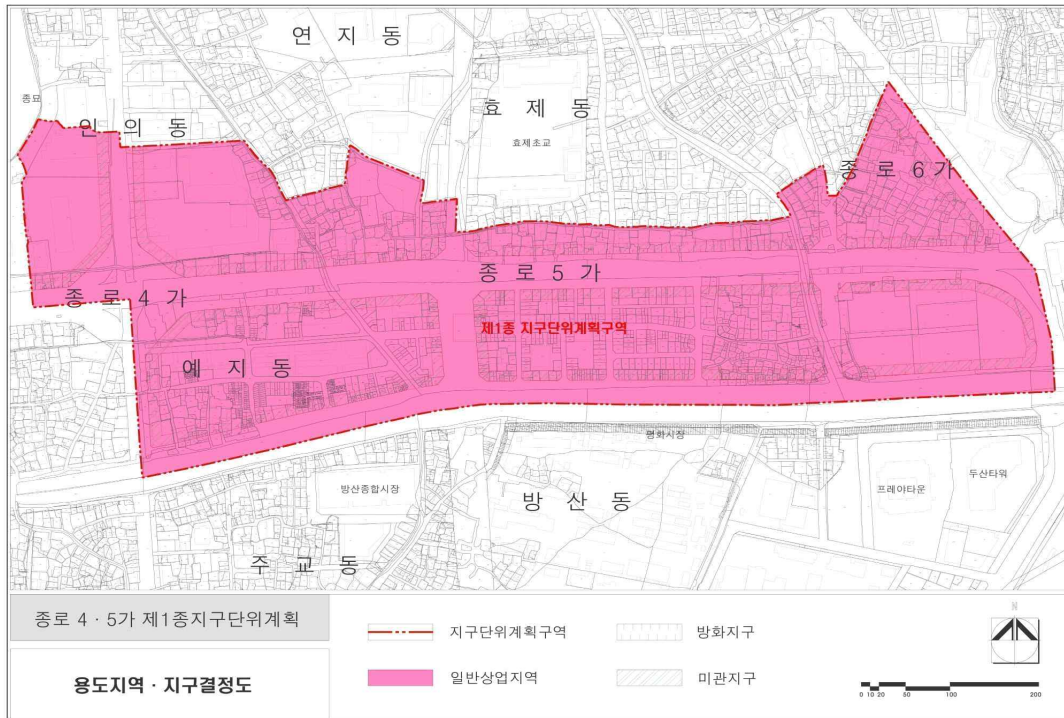
■ 송인2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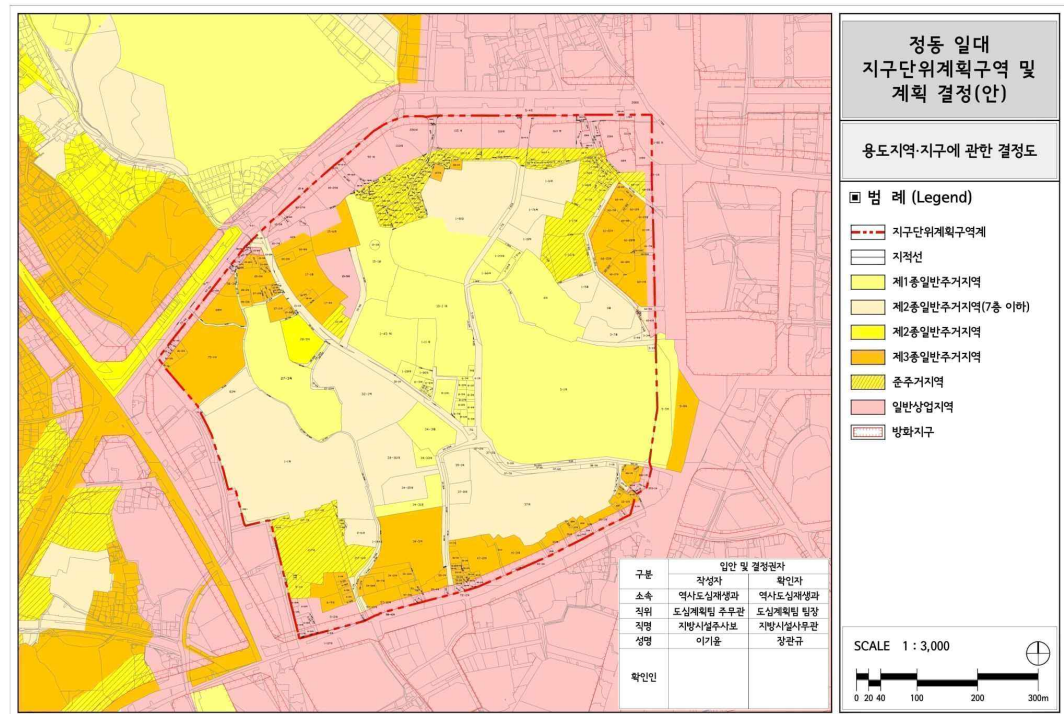
■ 승인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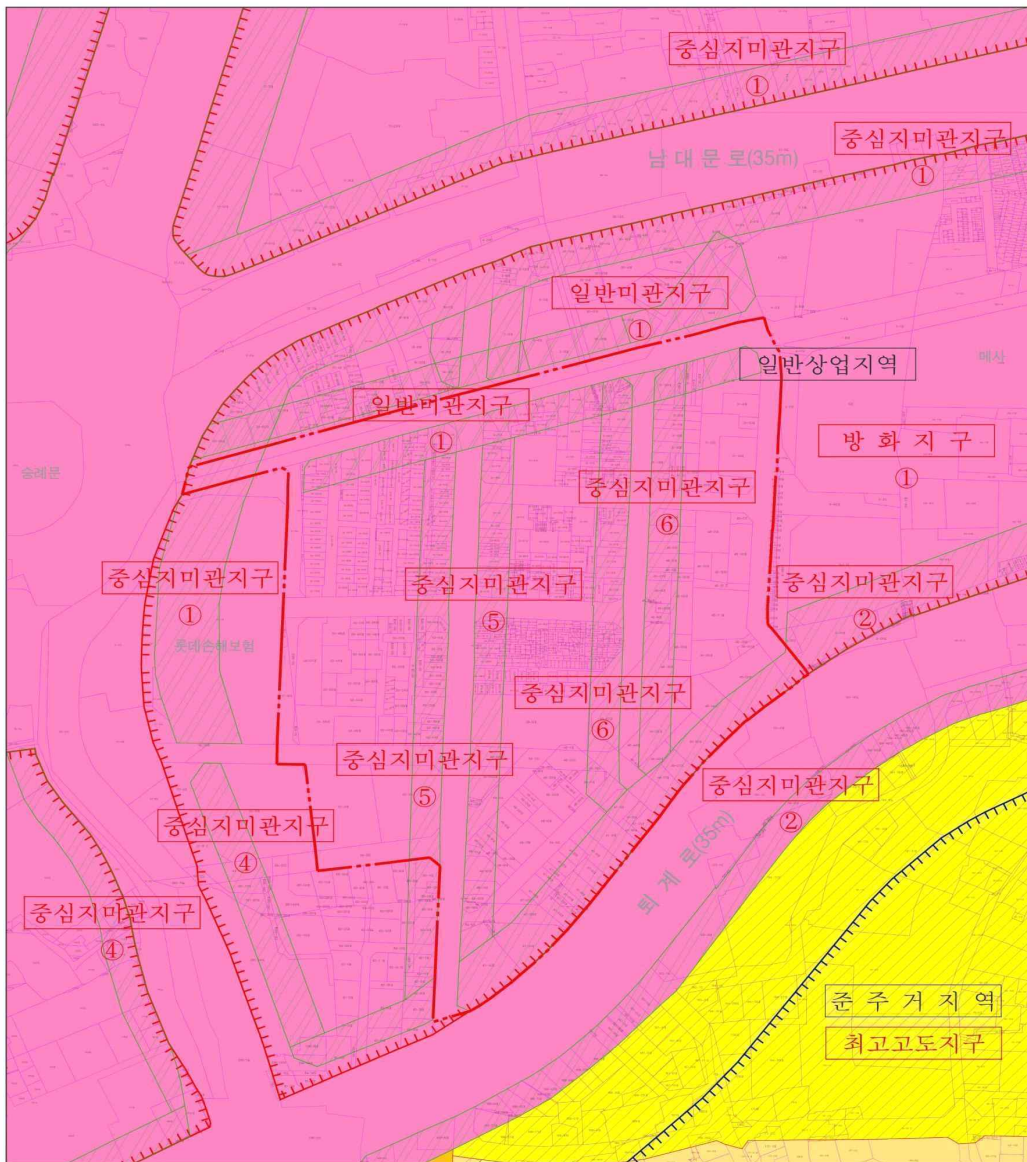
■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 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 남대문시장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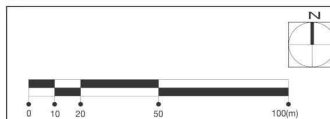


LEGEND

- | | |
|-----------------|---------|
| 지구단위계획구역 | 중심지미관지구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일반미관지구 |
| 준주거지역 | 방화지구 |
| 일반상업지역 | 최고고도지구 |

남대문시장 제1종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도 및 지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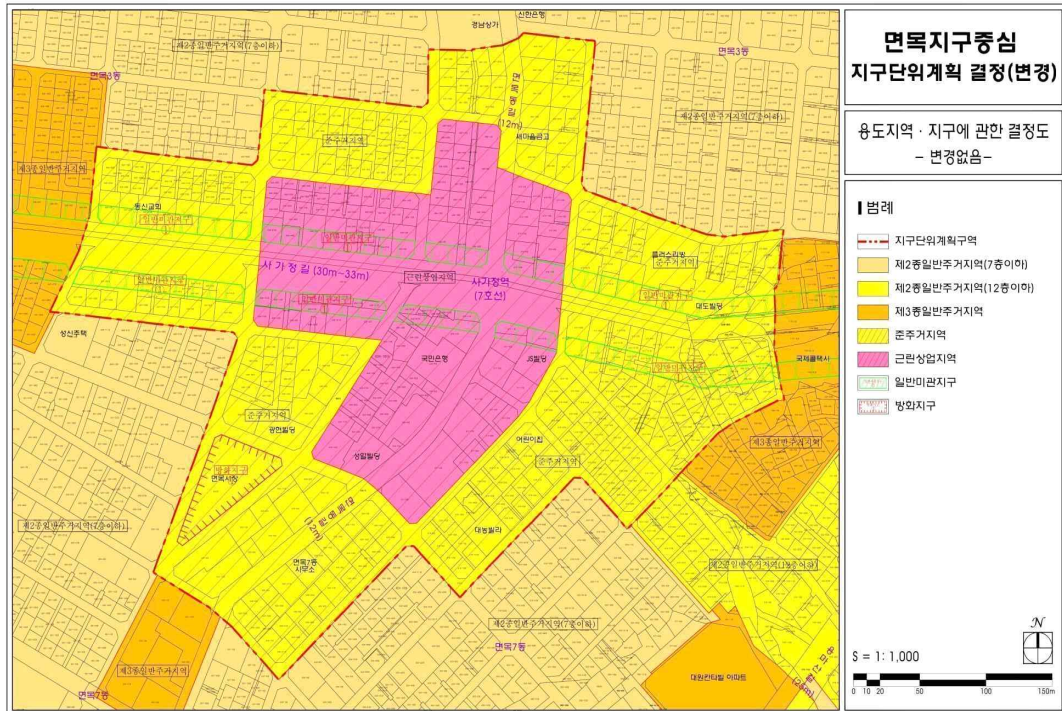
■ 소공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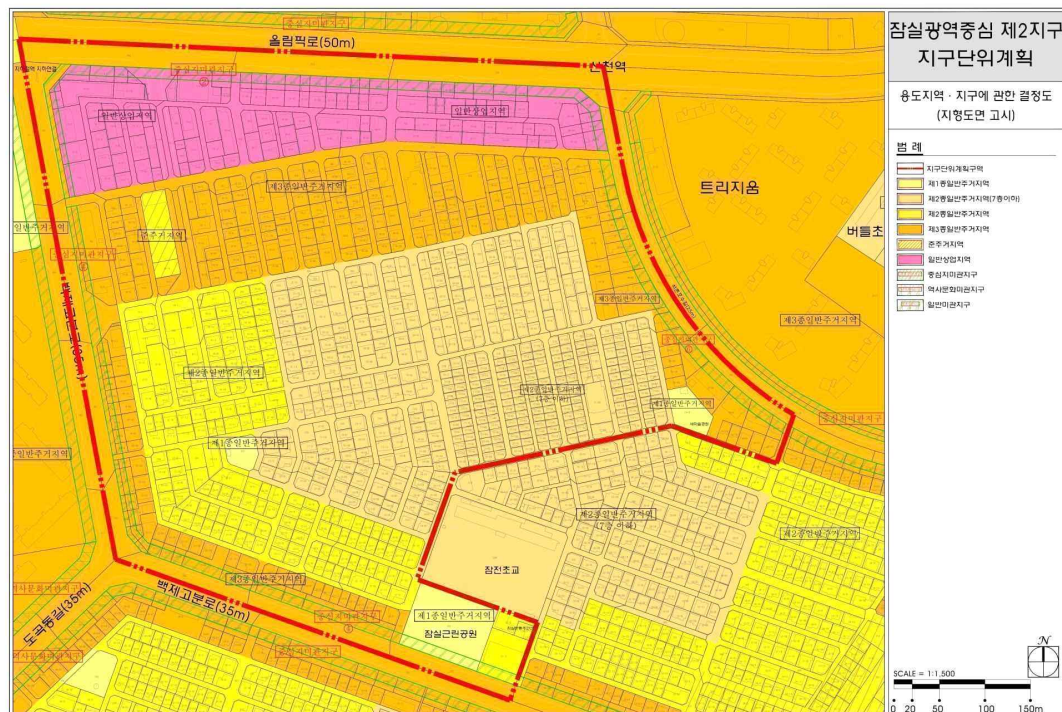
■ 목동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 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 잠실광역중심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90호

도시관리계획(온수역일대 지구단위계획, 한주물류센터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165호(2005. 6. 2.)로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었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81호(2008. 5. 29.)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65호(2022. 12. 1.)로 도시관리계획(온수역일대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결정(변경)된 온수역일대 지구단위계획 내 한주물류센터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2025년 제19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을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19일

서울특별시장

I. 결정(변경) 취지

- 구로구 오류동 326-16 일원 특별계획구역 신설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온수역 일대 지구단 위계획 및 한주물류센터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하는 사항임

II.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조서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①	온수역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로구 온수동 50번지 일대	550,363	-	550,363	서울시고시 제2005-165호 (2005. 6. 2)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550,363.0	-	550,363.0	100.0	
주거지역	소 계	341,405.2	-	341,405.2	62.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204,304.0	감) 2,426.2	201,877.8	36.7	
	제2종일반주거지역	61,190.0	증) 2,426.2	63,616.2	11.5	
	제3종일반주거지역	47,642.0	-	47,642.0	8.7	
	준주거지역	28,269.2	-	28,269.2	5.1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29,148.8		29,148.8	5.3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179,809.0	-	179,809.0	32.7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구로구 오류동 326-16 일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2,426.2	· 주변지역 여건 변화에 따른 효율적 토지 이용 및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용도 지역 변경 · 한주물류센터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변경

나. 용도지구: 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교통시설: 변경없음

나. 공간시설: 변경없음

다. 유통 및 공급시설: 변경없음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변경없음

마. 방재시설: 변경없음

바. 환경기초시설: 변경없음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가구번호		비고
	기정	변경	
온수역 북측 일대	· A1, A2, A3, A4, A5, A6, A7	· A1, A2, A3, A4, A5, A6, A7	· 온수산업단지 특별계획구역
온수역 일대	· B1, B2, B3, B4	· B1, B2, B3, B4	· 대흥 · 성원 · 동진빌라 특별계획구역
력비구장부지 일대	· C1, C2	· C1, C2	· 가든아파트 특별계획구역 · 력비구장 특별계획구역 · 한주물류센터 특별계획구역(신설)
교통안전공단 일대	· D1, D2	· D1, D2	· 화창기공 특별계획구역
동부제강부지	· E1	· E1	· 동부제강 특별계획구역

■ 단위대지의 최대개발규모 : 변경없음

■ 공동개발계획 결정(변경)조서

가구 번호	면적(㎡)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후		기정	변경후	기정	변경후	
C1	129 (20,338)	-	오류동 89-5도	706	-	공동개발 (권장)	-	특별계획구역 신설로 인한 공동개발(권장/지정) 해제
	49 (1,709)	-	오류동 109-4도					
	268 (620)	-	오류동110-10전					
	1	-	오류동116-5전					
	24	-	오류동 326-3구					
	127 (236)	-	오류동 326-7도					
	108 (164)	-	오류동 326-11대					
	455 (795)	-	오류동 114답	1,211	-	공동개발 (권장)	-	
	139 (250)	-	오류동 114-1답					
	14 (93)	-	오류동 114-2답					
	24 (221)	-	오류동 114-3답					
	579 (5,870)	-	오류동 326-1구	1,069	-	공동개발 (지정)	-	
	47 (3,248)	-	오류동 111-8답					
	130 (910)	-	오류동 111-11답					
	477 (510)	-	오류동 115-7답					
	415	-	오류동 115-14답	3,255	-	공동개발 (지정)	-	
	343	-	오류동 115-3답					
	15	-	오류동 115-5답					
	420	-	오류동 115-6답					
	517	-	오류동 115-11답					
	520	-	오류동 115-12답					
	569	-	오류동 115-13답					
	363	-	오류동 116-3대					
	267	-	오류동 326-16대					
	241	-	오류동 326-17대					
	2,052	2,052	오류동 115-1대	3,566	3,566	공동개발 (권장)	공동개발 (권장)	

가구 번호	면적(㎡)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후		기정	변경후	기정	변경후	
	1,005	1,005	오류동 115-4대					
	117 (5,870)	117 (5,870)	오류동 326-1구					
	106	106	오류동 326-5대					
	286	286	오류동 326-12대					

※ 면적의 ()는 해당 필지 전체의 공부상 면적임

※ 각 필지의 면적은 추후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동개발계획 결정(변경)조서 사유서

변경 내용	변경사유
공동개발 해제	· 한주물류센터 특별계획구역 신설을 위한 공동개발(권장/지정) 해제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계획: 변경없음

나. 건축물의 밀도계획

- 1) 건폐율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2) 용적률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3) 건축물 높이에 관한 사항

■ 높이 결정(변경)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변 경	
온수역 주변	단독주거용지	30m 이하	30m 이하	온수역 북측부
	상업업무시설	50m 이하	50m 이하	온수동길, 온수역전
경인로 변	상업업무시설	50m 이하	50m 이하	경인로 변
		50m 이하	90m 이하	한주물류센터 특별계획구역
	산업업무시설	80m 이하	80m 이하	교통안전공단 변, 재건축예정부지
		132m 이하	132m 이하	대흥·성원·동진빌라 특별계획구역
온수산업단지 변	공장용지	20m 이하	20m 이하	아파트형 공장에 한하여 30m 이하 적용
	주거용지	40m 이하	40m 이하	자동차면허시험장 부지

■ 높이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변경 내용	변경 사유
경인로 변 상업 업무시설	· 한주물류센터 특별계획구역 높이 변경 - 50m이하 → 90m이하	·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제2종) 및 주변지역 개발현황 을 고려한 높이계획 조정

다. 건축물의 배치 및 외관·형태 등에 관한 계획

■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계획내용
건축선	건축한계선	· 간선도로변 5m, 이면도로변 3m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 1개소 위치 지정 - 단지 결정부 배치(166.41㎡)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후퇴부분은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에 관한 계획

- 한주물류센터 특별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경인으로 변 주차출입구 및 차량출입금지구역 변경
- ※ 지형도면 참조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①	온수산업단지 특별계획구역	온수동 100-27 일원	104,872.0	-	104,872.0	
기정	②	대흥·성원·동진빌라 특별계획구역	온수동 45-31 일원	57,063.0	-	57,063.0	
기정	③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	오류동 111-1 일원	66,704.7	-	66,704.7	
기정	④	가든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오류동 97-4 일원	27,914.0	-	27,914.0	
기정	⑤	화창기공특별계획구역	오류동 94-11 일원	10,535.0	-	10,535.0	
기정	⑥	동부제강 특별계획구역	오류동 123 일원	97,184.0	-	97,184.0	
신설	⑦	한주물류센터 특별계획구역	오류동 326-16 일원	-	증) 6,241.0	6,241.0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결정 사유
신설	⑦	한주물류센터 특별계획구역	구로구 오류동 326-16 일원	6,241.0	· 인접지역 대규모 개발 시행 등 주변 환경 여건 변화에 따라 노후화 및 저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합리적 공간활용을 통해 온수역 주변 지역을 활성화하고자 한주물류센터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함

나.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 1) 온수산업단지 특별계획구역: 변경없음
- 2) 대흥·성원·동진빌라 특별계획구역: 변경없음
- 3)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 변경없음
- 4) 가든아파트 특별계획구역: 변경없음
- 5) 화창기공 특별계획구역: 변경없음
- 6) 동부제강 특별계획구역: 변경없음
- 7) 한주물류센터 특별계획구역: 신설

■ 구역개요

구역명	위 치	면적(㎡)	지 정 목 적
한주물류센터 특별계획구역	구로구 오류동 326-16 일원	6,241.0	· 인접지역 대규모 개발 시행 등 주변 환경 여건 변화에 따라 노후화 및 저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합리적 공간활용을 통해 온수역 주변 지역을 활성화하고자 한주물류센터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함

■ 특별계획구역 지침

구분		계획내용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제2종일반주거지역(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건축·비밀요도	권장용도	저층부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 판매시설 다목 제1호
	불허용도	· 단독주택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총포판매소, 장의사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제외)	

구분		계획내용	
건축물 밀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기준/허용/상한)	· 190% / 200% / 300% 이하 (임대주택 제공/친환경 인센티브 적용)	
	최고높이	· 90m 이하	
공공기여		·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 확보	
기타 사항	건축한계선	· 간선도로변 : 5m	· 이면도로변 : 3m
	대지 내 공지	· 공개공지 : 1개소 위치 지정 ·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후퇴부분 조성	

※ 공공기여항목은 세부개발계획시에 관련부서 및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 공공기여시설은 조성 후 기부채납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2025. 1.)」 개발사업형 용적률 계획 준용

구분	계획내용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 주변 가로망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등 조성 (지역권* 설정) - 기준 : 기준용적률 X [조성면적/대지면적] X α ※ $\alpha = 1$ 이하	10%p 이내
열린단지	· 단지 외곽 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상가 등 열린 단지 조성 (지형도면 고시) - 기준 : 개방공간, 열린 단지 조성기준 준수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개방되는 공간은 결정도면에 표기 (준공 후에도 유지)	5%p
공개공지	· 지역주민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공원·광장 형태 등으로 설치 - 기준 : 기준용적률 X [조성면적(의무면적제외)/대지면적] X α ※ $\alpha = 1$ 이하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에 따른 설치기준 준수시 / 실내형 공개공지 포함	5%p 이내
돌봄시설	· 지역에 필요한 놀이·돌봄시설* 설치 및 제공 (무상임대) - 기준 : 놀이·돌봄시설을 전체 주민공동시설(의무면적)의 1/5이상 설치 * 국공립어린이집, 서울형 키즈카페, 우리동네키움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실내어린이놀이터 등	5%p
방재안전	· 화재·소방·피난 안전 등 공동주택 안전성능 개선 - 기준 : 시설 성능을 의무기준 보다 초과 설치·개선하는 경우 관련 위원회 심의·자문을 통해 적용	5%p

구분	계획내용	
기반시설 등 정비	- 사업구역 주변 환경 정비 (도로, 공원, 통학로 등 주택단지와 직접 관련된 시설) - 기준 : 기준용적률 X (환산부지면적*/대지면적) X α *$\alpha = 1$이하 *정비비용/사업지 대지가액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준용)	5%p 이내
지역특화 인센티브	- 감성디자인 등 정책사업, 지역맞춤형 항목 신설 가능 - 기준 : 지역여건에 맞는 항목 및 산정방식 신설(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10%p 이내(합산)
합계	최대 20%p 이내	

■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구분	계획내용
공공시설 등 제고	- 공공시설등을 제공(기부채납)하는 경우 인센티브 산정기준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및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을 따름 $\text{허용 or 기준용적률} \times (1 + 1.3 \times \text{가중치} \times \alpha \text{토지} + 1.0 \times \alpha \text{건축물} + 1.0 \times \alpha \text{현금})$ * 건축물 계수는 기부채납 건축물의 종류, 위치, 층수, 규모, 용도 및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1.0 ~ 1.2 범위 내에서 적용 - α토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α건축물: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α현금: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현금 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구분	계획내용																														
임대주택 건립 시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 제1항제4호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의 120%이하 완화 : $250\% \text{이하} \times 120\% = 300\% \text{이하}$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1조(용적률의 완화)] ① 제48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제48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라 임대주택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는 용적률은 다음 각 목을 따를 것. 다만, 임대주택 유형별 임대임대기간에도 불구하고 20년 이상 임대운영할 계획으로 건축하는 임대주택은 가목을 적용할 수 있다. 가. 임대임대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제48조에 따른 용적률(200%)의 20% - 적용산식 : 용적률 $\times 20\% = 200\% \times 20\% = 40\%$																														
	① 적용대상 -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서울시 녹색건축물설계기준에서 정한 친환경건축물 의무인증 기준을 초과 획득한 건축물 ② 적용산식 : 용적률 $\times (1 + \text{완화기준})$ - 서울시 녹색 건축물 설계 기준 및 관계 법령 개정시 의무기준 및 요율은 변경된 규정에 따름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7호, 2025. 1. 2.)준용) ③ 완화기준 : 가~다목을 합산하여 최대 15%까지 적용한다. - 가. 녹색건축 인증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비율 <table border="1"> <thead> <tr> <th>완화조건</th><th>최대완화비율</th></tr> </thead> <tbody> <tr> <td>녹색건축 최우수 등급</td><td>6%</td></tr> <tr> <td>녹색건축 우수 등급</td><td>3%</td></tr> </tbody> </table> - 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 비율 <table border="1"> <thead> <tr> <th>완화조건</th><th>최대완화비율</th></tr> </thead> <tbody> <tr> <td>제로에너지건축물 1등급</td><td>15%</td></tr> <tr> <td>제로에너지건축물 2등급</td><td>14%</td></tr> <tr> <td>제로에너지건축물 3등급</td><td>13%</td></tr> <tr> <td>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td><td>12%</td></tr> <tr> <td>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td><td>11%</td></tr> <tr> <td>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td><td>6%</td></tr> <tr> <td>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td><td>3%</td></tr> </tbody> </table> - 다. 건축물의 골조공사에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에 따른 완화비율 <table border="1"> <thead> <tr> <th>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의 용적비율</th><th>최대완화비율</th></tr> </thead> <tbody> <tr> <td>25% 이상 사용하는 경우</td><td>15%</td></tr> <tr> <td>20% 이상 사용하는 경우</td><td>10%</td></tr> <tr> <td>15% 이상 사용하는 경우</td><td>5%</td></tr> </tbody> </table>	완화조건	최대완화비율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	6%	녹색건축 우수 등급	3%	완화조건	최대완화비율	제로에너지건축물 1등급	15%	제로에너지건축물 2등급	14%	제로에너지건축물 3등급	13%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12%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11%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6%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3%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의 용적비율	최대완화비율	25% 이상 사용하는 경우	15%	20% 이상 사용하는 경우	10%	15% 이상 사용하는 경우	5%
완화조건	최대완화비율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	6%																														
녹색건축 우수 등급	3%																														
완화조건	최대완화비율																														
제로에너지건축물 1등급	15%																														
제로에너지건축물 2등급	14%																														
제로에너지건축물 3등급	13%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12%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11%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6%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3%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의 용적비율	최대완화비율																														
25% 이상 사용하는 경우	15%																														
20% 이상 사용하는 경우	10%																														
15% 이상 사용하는 경우	5%																														

④ 한주물류센터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 관한 결정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신설)조서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신설)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설	①	한주물류센터 특별계획구역	구로구 오류동 326-16 일원	-	증) 6,241.0	6,241.0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결정 사유
신설	①	한주물류센터 특별계획구역	구로구 오류동 326-16 일원	6,241.0	· 인접지역 대규모 개발 시행 등 주변 환경 여건 변화에 따라 노후화 및 저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합리적 공 간활용을 통해 운수역 주변 지역을 활성화하고자 한주물류센 터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함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6,241.0	-	6,241.0	100.0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2,426.2	감) 2,426.2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3,814.8	증) 2,426.2	6,241.0	100.0	-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①	구로구 오류동 326-16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2,426.2	· 주변지역 여건 변화에 따른 효율적 토지 이 용 및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나. 용도지구: 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가구번호	구역명	지번	면 적	비 고
변경	C1	한주물류센터 특별계획구역	구로구 오류동 326-16 일원	6,241.0㎡	

나.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건축물의 용도계획

구 분		특별계획구역 지침		세부개발계획
건축물 용도	권장	저층부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 판매시설 다목 제1호	최등
	불허	- 단독주택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총포판매소, 장의사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제외)		최등

2) 건축물의 밀도계획

(1) 건폐율 계획

구 분	특별계획구역 지침	세부개발계획
건폐율	60% 이하	최등

(2) 용적률 계획

구 분		특별계획구역 지침	세부개발계획
제2종일반주거지역	기준용적률	190% 이하	최등
	허용용적률	200% 이하	최등
	상한용적률	300% 이하	최등

■ 허용용적률 적용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2025. 1.)」 개발사업형 용적률 계획 준용

구 분	기 준		세부개발계획
열린단 지	- 단지 외곽 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상가 등 열린 단지 조성 (지형도면 고시) - 기준: 개방공간, 열린 단지 조성기준 준수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개방되는 공간은 결정도면에 표기 (준공 후에도 유지)	5%p	- 인센티브: 5% 적용 -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로서 최 대5%p 적용
공개공 지	- 지역주민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공원·광장 형태 등으로 설치 - 기준: 기준용적률 X [조성면적(의무면적제외)/대지면적] X α ※ α = 1이하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에 따른 설치기준 준수시 / 실내형 공개공지 포함	5%p 이내	· 면적: 166.41㎡ · 인센티브: 5.06% > 5% = 190x(166.41㎡/6,241.0㎡) = 5% 적용

※ 향후, 건축계획에 의해 공개공지 면적이 조정될 수 있음

■ 상한용적률 적용에 관한 사항

구 분	기 준				
공공시설 등 제공	• 허용 or 기준용적률 X (1+1.3 X 가중치 X α토지 + 1.0 X α건축물 + 1.0 X α현금) = 200 X {1+(1.3 X 1 X 366.61 / 5,874.39 + 1.0 X 1,074.99 / 5,874.39)} = 200 x {1+(1.3 X 1 X 0.0624 + 1.0 X 0.1830)} = 252.83% ≥ 250.00% • 공공산후조리원 연면적 : 1,962.99㎡ (전용 1,290.07㎡) • 시설별 건축비 : 지상 *4,965,000원/㎡ / 지하 **1,024,000원/㎡ (부가세 포함) *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 따름(2024년) **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참조(2025.3.18.)] ※설치비용 연면적 × 건축비 : 6,843,388,529원 ※건축설계 대가요율 제2종(보통) / 상급 / 100억원 이하에 해당 : 5.07 적용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 제2종(보통) / 100억원 이하에 해당 : 1.04 적용				
임대주택 건립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 제1항제4호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의 120%이하 완화 : 250%이하 X 120% = 300%이하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1조(용적률의 완화)] ① 제48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제48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라 임대주택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는 용적률은 다음 각 목을 따를 것. 다만, 임대주택 유형별 임대의무기간에도 불구하고 20년 이상 임대운영할 계획으로 건축하는 임대주택은 가목을 적용 할 수 있다. 가. 임대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제48조에 따른 용적률(200%)의 20% - 적용산식 : 용적률 X 20% = 200% X 20% = 40%				
친환경 항목 적용	①적용산식 : 용적률 X (1 + 완화기준) = 200 X (1 + 11%) = 22% - 서울시 녹색 건축물 설계 기준 및 관계 법령 개정시 의무기준 및 요율은 변경된 규정에 따름(「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7호, 2025. 1. 2.)준용) ② 완화기준 - 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비용				
	<table><tr><th>완화조건</th><th>최대완화비율</th></tr><tr><td>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td><td>11%</td></tr></table>	완화조건	최대완화비율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11%
완화조건	최대완화비율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11%				

(3) 높이 계획

구 분	특별계획구역 지침	세부개발계획
제2종일반주거지역	90m 이하	좌동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경인로 변	한주물류센터 특별계획구역	90m 이하 상업업무시설

※ 건축물 높이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최고 높이 범위내에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산정식 적용 및 중심지 위계에 따른 높이 반영

3) 건축물 배치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특별계획구역 지침	세부개발계획
건축한계선	• 간선도로변: 5m • 이면도로변: 3m	• 간선도로변: 5m • 이면도로변: 3m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가.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특별계획구역 지침	세부개발계획
공개공지	• 공개공지 1개소 위치 지정	• 좌동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후퇴부분 조성	• 좌동

5. 공공기여 계획에 관한 결정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관리청)
신규	공공산후조리원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326-16	• 대지지분: 1,441.60㎡ • 연면적 : 1,962.99㎡ (공용 : 672.92㎡)	복합설치 (서울특별시청)

※ 신규 공공산후조리원은 서울특별시로 귀속되며, 서울특별시청이 운영 및 관리함
 ※ 향후 토지가격 및 건축계획 등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층고·형태는 조정될 수 있음
 ※ 공공기여시설의 세부용도에 대해서는 서울시 기부채납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 추후 확정함
 ※ 전기실·기계실 등 공용공간의 면적은 별도로 표기 바람

6.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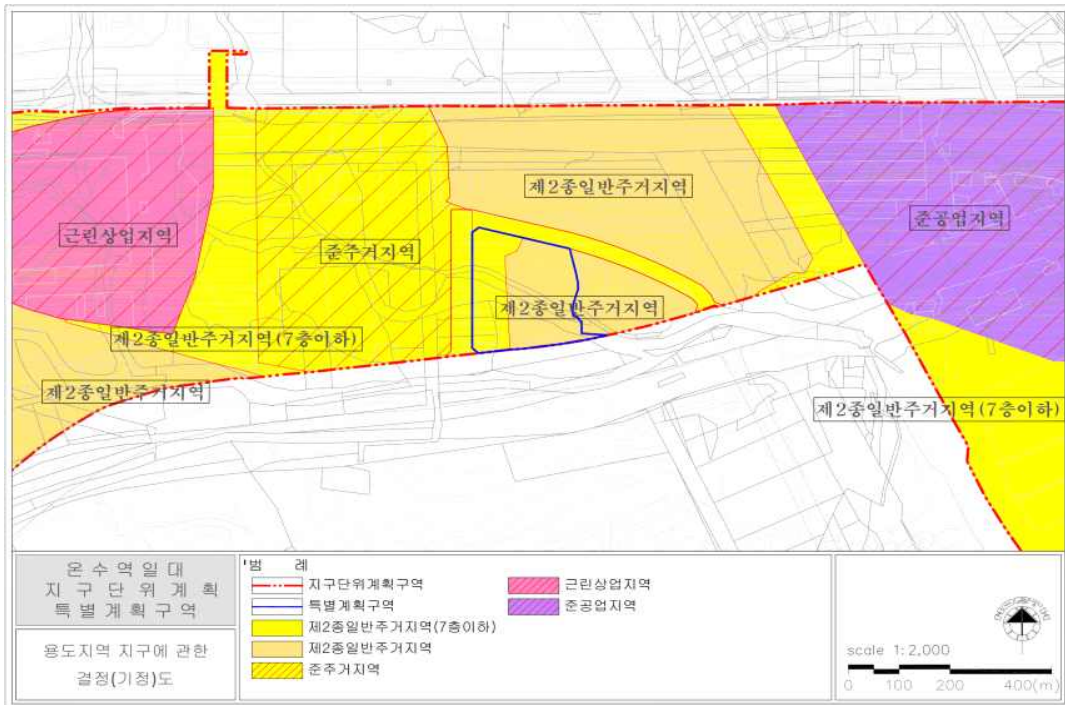
구 분		특별계획구역 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건축물 용도	권장	저층부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 판매시설 중 상점 제1호	• 좌동	
	불허	- 단독주택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총포판매소, 장의사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제외)		• 좌동	
건폐율		• 60% 이하		• 좌동	
용적률 (기준/허용/상한)		• 190% / 200% 이하 / 300% 이하 (임대주택 제공/친환경 인센티브 적용)		• 좌동	
최고높이		• 90m 이하		• 좌동	
건축한계선		• 간선도로변: 5m	• 이면도로변: 3m	• 좌동	
공공기여		•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 확보		• 공공산후조리원	• 연면적 1,960㎡ 이상 • 지하1층
기타사항		• 공개공지 : 1개소 위치 지정 •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후퇴부분 조성		• 좌동	• 공개공지 : 166.41㎡

※ 향후, 건축계획에 의해 공개공지 면적이 조정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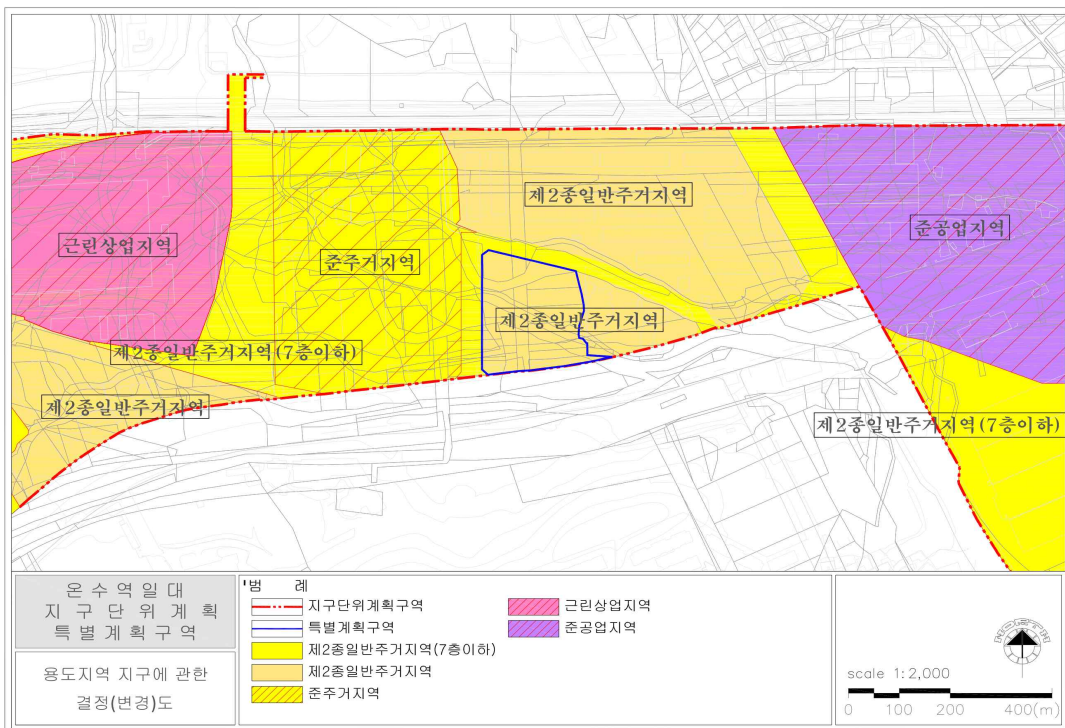
○ 지형도면 : 붙임참조

[붙임] 지형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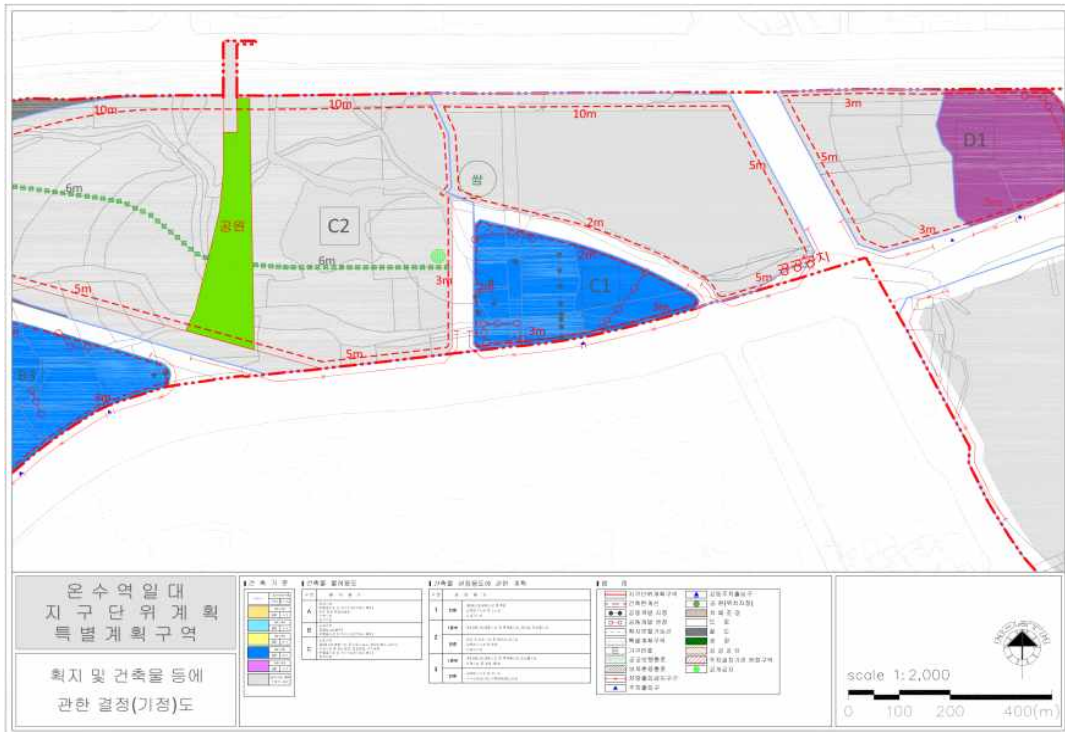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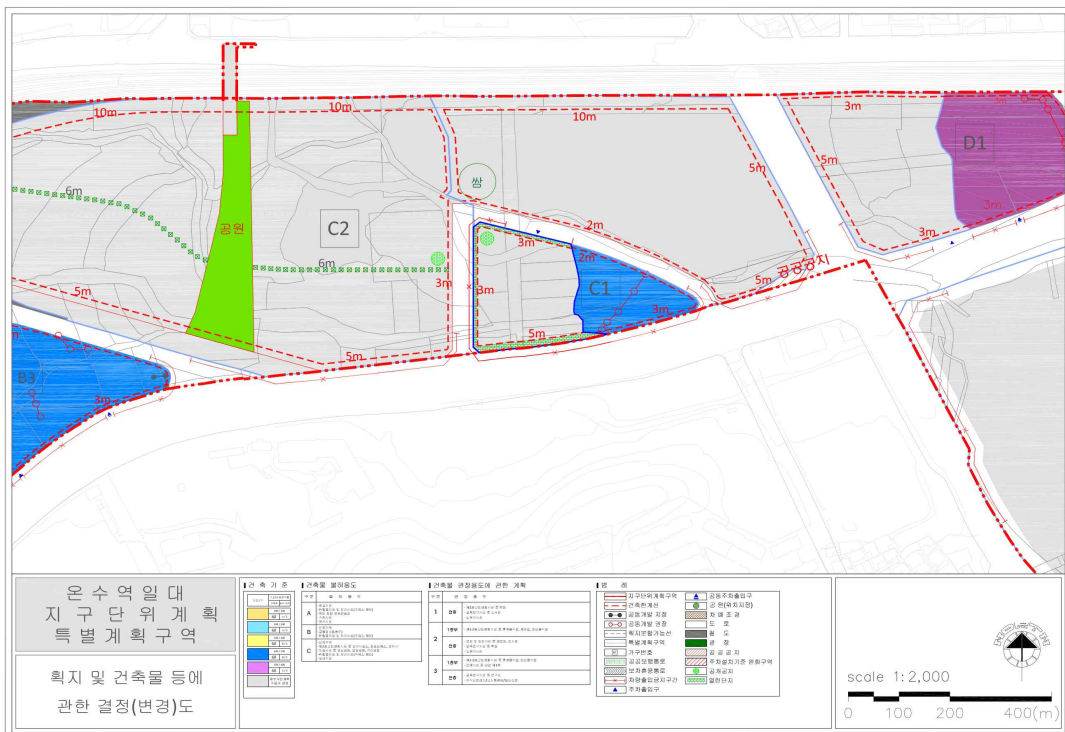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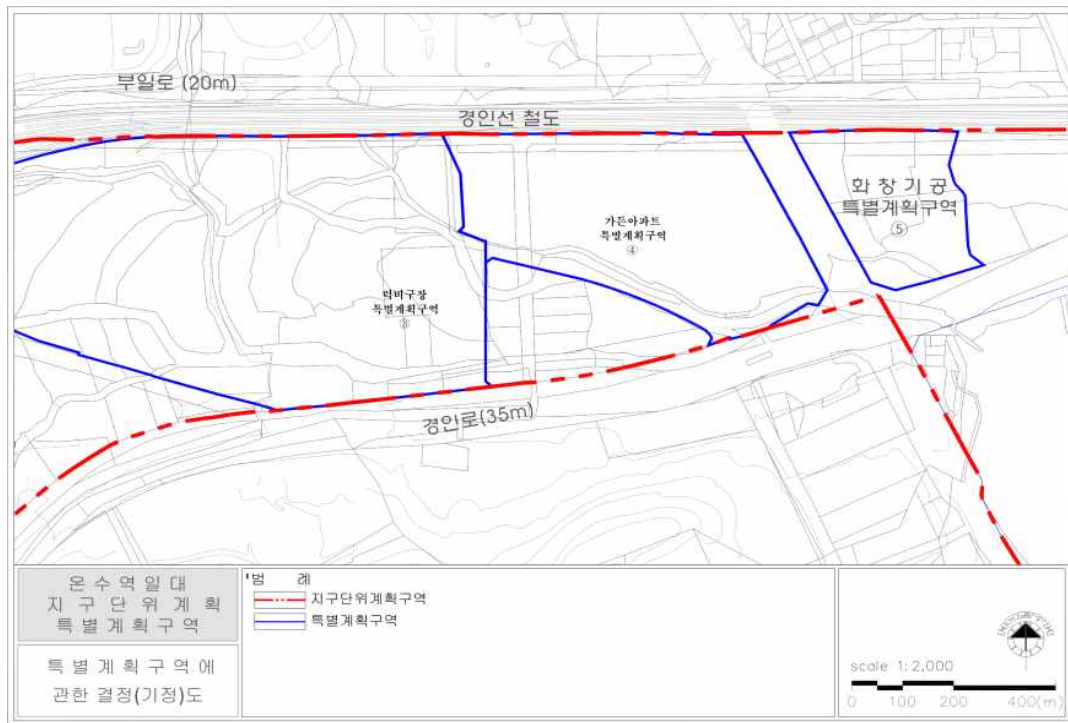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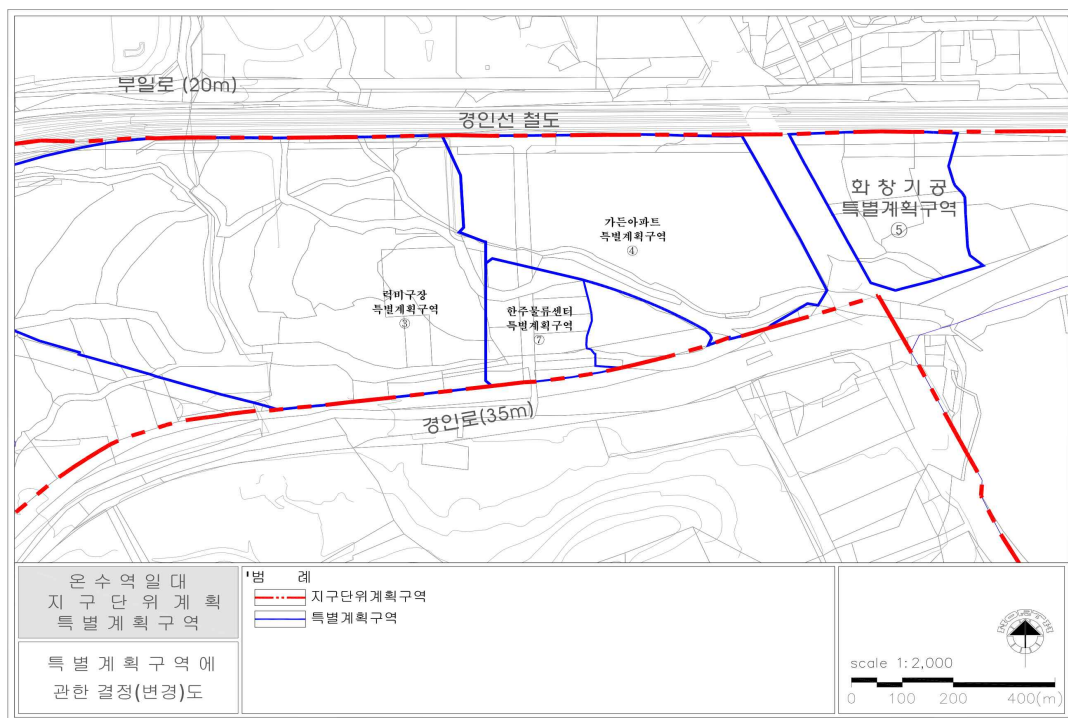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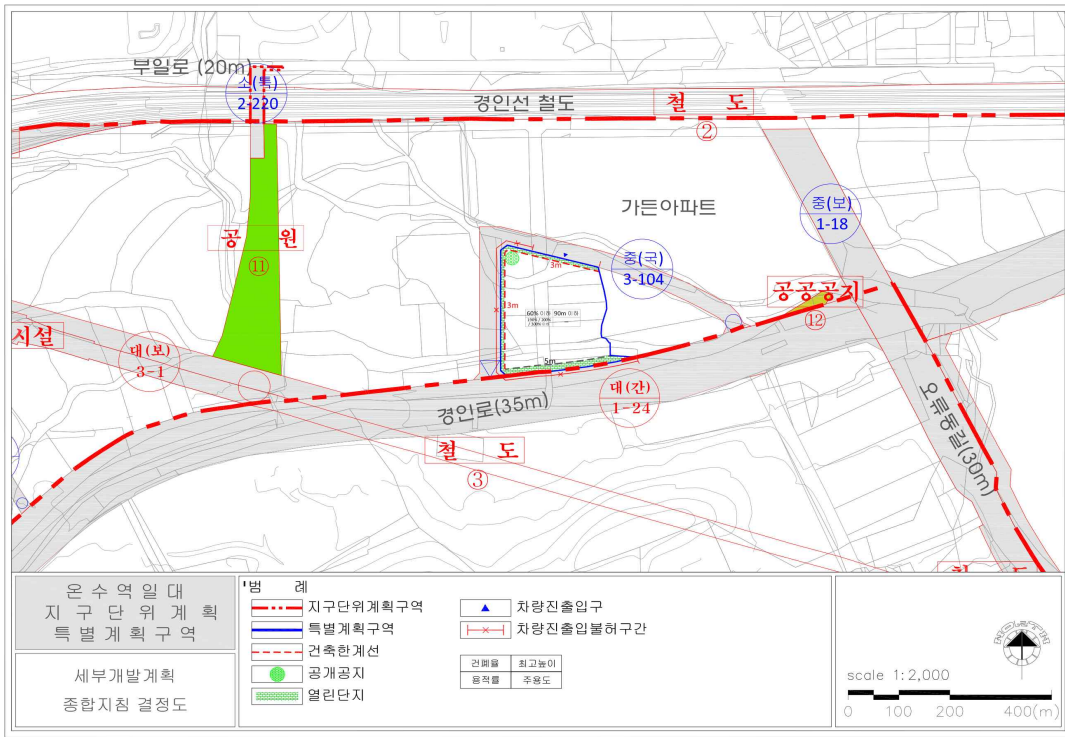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기정)도]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도]



[세부개발계획 종합지침 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88호
청파 제1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해제(일몰) 기한 연장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01호(2022. 7. 14.)로 정비구역 결정·고시된 청파 제1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기한을 연장하고, 같은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19일

서울특별시

1.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 정비구역 현황

구역명	위치	구역면적(㎡)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비고 (최초결정고시)
청파 제1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용산구 청파동2가 11-1번지 일대	32,390.4	2028.2.17.까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301호 (2022.7.1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른 해제기한 2년 연장

2.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6항제1호에 의거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하여 정비구역등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정비구역 해제기한을 연장함

3. 관련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02-2133-7188) 및 용산구 재정비사업과(☎02-2199-7466)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517호

도시관리계획(동부화물터미널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42호(2023.10.19.)로 결정된 동부화물터미널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285호(2025.11.20.)로 열람공고하고, 2026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6.01.28.)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19일
서울특별시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본청 11층 공공개발담당관(☎02-2133-8357)
동대문구청 9층 도시계획과(☎02-2127-4396)

다. 열람내용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주요내용

Ⅰ 동부화물터미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동부화물터미널 지구단위계획구역	장안동 283-1 일원	49,987.9	감) 22,340.5	27,647.4	최초결정 서고 제2023-442호 (2023.10.19.)

2. 토지이용 및 시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 생략(열람도서 참조)

② 특별계획구역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1. 특별계획구역 결정 : 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8,417.7	-	18,417.7	100.0	-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6,301.3	증) 7,465.8	13,767.1	74.7	-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6,522.8	감) 6,522.8	-	-	-
	유통상업지역	5,593.6	감) 943.0	4,650.6	25.3	-

나. 용도지구 결정 : 해당없음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 생략(열람도서 참조)

3. 획지 및 건축물 등, 세부개발계획에 관한 결정 : 생략(열람도서 참조)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530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수도법 제68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 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 통지를 소유자에게 송달해야하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④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①항 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9일
서울특별시

1. 공고기간 : 2026. 2. 19. ~ 2026. 3. 5.

2. 공시송달 내역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비고
		과목	납 기	횟수	금 액	
020058119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35(청암동)	수도요금	2024.11납기 등 4납기	5회	340,210원	

나. 압류 내역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 건 소 유 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주민번호 (불가사유)	주 소		
부동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632 201동 204호 건물	노호성	830622-1***** (주소불명)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로140번길 **, ***호	340,210원	2026. 1.16

3.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이 공고문에 대해 의견제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동 법 제27조에 따라 공고기간 내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 혹은 유선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의견제출기관 :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5.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추성진(☎02-3146-208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교육청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26-57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기록관 운영 규정 폐지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기록관 운영 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2월 19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 폐지 이유

- 가. 현행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기록물 관리 체계가 「서울특별시교육청 기록관 운영 규정」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지원에 관한 조례」로 이원화되어 법령 간 불일치와 중복 운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함
- 나. 또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조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삭제·정비 권고를 받은 바 있음
- 다. 따라서 상위법에 부합하고 효율적이며 통합적인 기록물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와 훈령을 통합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제9912호, 2026. 1. 8.)함에 따라 기존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교육청 기록관 운영 규정」 폐지

3. 의견 제출

위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0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교육청 (담당부서: 총무과)
 -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신문로 2가)
 - 연 락 처: 전화 02-399-9264, FAX 02-6973-9916
 - 전자우편: archives@sen.go.kr

※ 이 교육규칙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 [행정정보-법무 행정서비스-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기록관 운영 규정 폐지규정안」

입법예고 의견 제출

성명: (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 :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폐지안	수정요구안	사 유
제0조(00)	제0조(00)	○ —

2026년 월 일

구 고 시

◆ 성북구고시 제2026-28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변경)작성 취소 고시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25-147호(2025.09.25.)로 실시계획(변경)작성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성북동 210-57 외 3필지 한양도성 산책로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작성을 취소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19일

성 북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나. 사업개요

사업의 명칭	사업의 위치	사업의 규모	최초 결정고시
한양도성 산책로 조성(2차)사업	성북동 210-57번지 외 3필지	1,000㎡	2023-12-28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23-194호)

1) 당초 : 면적 994m²

2) 변경 : 면적 1,000m²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성북구청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1) 실시계획작성고시일로부터 2027.12.31. 까지

마. 취소사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절차 보완 후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하고자 함

바. 토지조서 : 불임과 같음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문화체육과(☎02-2241-26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토 지 조 서

사 업 시 행 자 : 성북구청장

사업시행자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사 업 의 명 칭 : 한양도성 산책로 조성

입원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평면 면적 (㎡)	소 유 권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소유권이외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성북구 성북동 210-57	대	337	326	서울특별시					
2	성북구 성북동 210-59	대	16	16	이*익	서울 성북구 성북동 ***-***				
3	성북구 성북동 210-60	대	129	129	나*정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 **, ***동 ***호(성주동, *****)	대*****합	대구 동구 등북로 ***호(신암동)(*****)	근저당권	
4	성북구 성북동 210-3				이*중	서울 용산구 이촌로 ***, ***동 ***호(이촌동, *****)				
					이*영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길 **, ***동 ***호(잠실동, *****)				
					신*애	인천 부평구 배곶북로*번길 ***-*, ***호(심정동, *****)	이*숙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호(구로동, *****)	근저당권	
					양*원	서울 성북구 길음로**길 **, ***동 ***호(길음동, *****)				

◆ 강서구고시 제2026-24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사업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91호(2007.12.28)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98호(2008.12.30.)로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인가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75호(2020.12.24.)로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된 마곡 도시개발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에 따른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19일

강 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743-2 (마곡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사회복지시설용지(H1블록))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사업
- 2) 명칭 : 강서구 마곡지구 내 마곡노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

다. 사업시행의 면적 및 규모

구 분	내 용	비 고
대지면적	1,700㎡	
연 면 적	2,732.30㎡	
건축면적	744.80㎡	
건 폐 율	43.81%(법정 50% 이하)	
용 적 륜	147.27%(법정 200% 이하)	
층 수	지하1층~지상4층	
주 차 장	21대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1) 사업시행자 : ㈜이랜드월드
- 2) 주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59

마. 시행기간

- 1) 2024. 9. 1. ~ 2025. 11. 2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시설 면적 (㎡)	소유자		관계인(사업시행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마곡동	743-2	대	1,700	2,732.30	강서구청 장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302	㈜이랜드월 드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59	사업시행자 설치 후 기부채납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건축과(☎02-2600-63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등포구고시 제2026-22호

영등포구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19일

영 등 포 구 청 장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폐지	소로	2	2	8	국지도 로	103	신길동 263-37	신길동 321-1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2006-56호 (2006.2.16.)	실효
폐지	소로	3	1	6	국지도 로	97	신길동4902-16	신길동 4902-5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2006-56호 (2006.2.16.)	실효

2. 실효일자: 2026. 2. 16.

3. 실효사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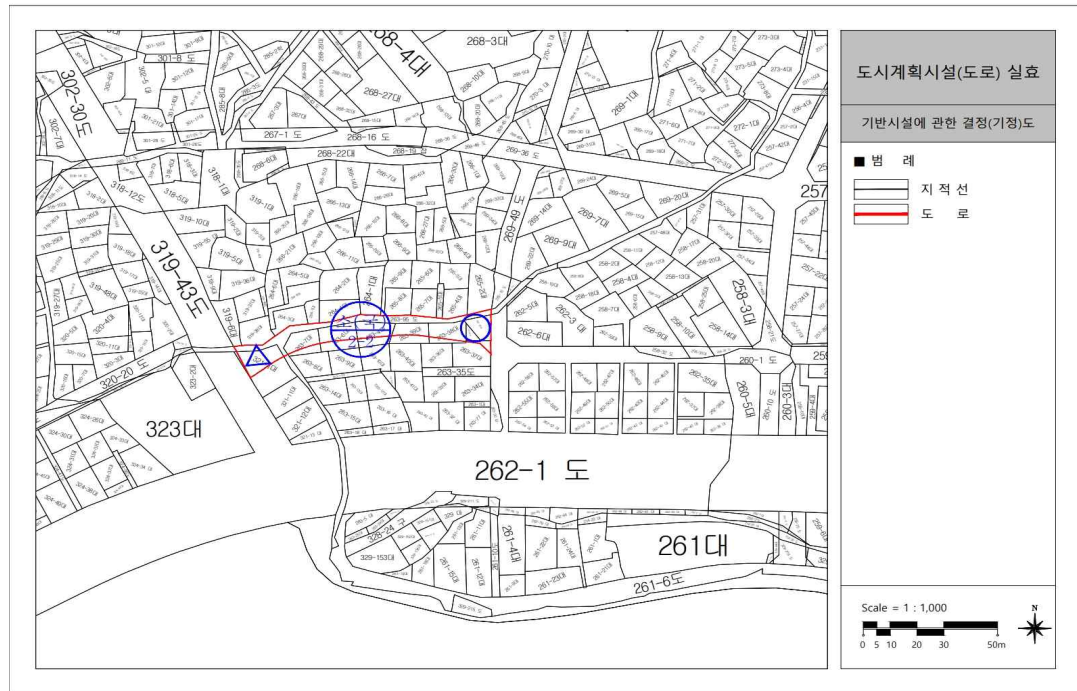
4. 지형도면: 불임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문의사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과(☎02-2670-3523)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지형도면 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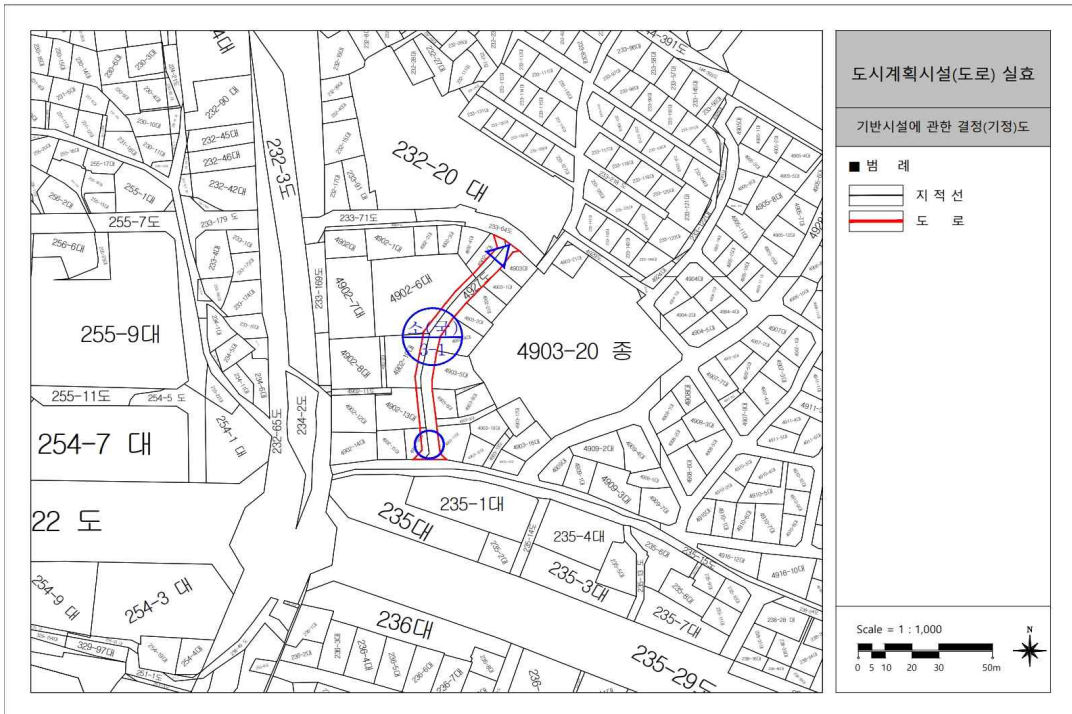
○ 기 정



○ 변 경



○ 기 정



○ 변경



구 공 고

◆ 중구공고 제2026-183호

서소문역사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460호(1973.11.22.)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40호(1998.7.15.)로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서울특별시고시제2014-38호(2014.2.6.)로 공원변경결정(면적증가 및 세분)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2022-429호(2022.10.27.)로 조성계획결정(변경) 고시된 서소문역사공원에 대하여 현황반영 등의 사유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26년 2월 19일

중 구 청 장

가. 도시계획시설(공원)명 : 서소문역사공원

나. 위 치 : 중구 의주로2가 16-4번지 일원

다. 면 적 : 21,363㎡

라. 조성계획 변경(안) : 붙임 참조

마. 관계도서 : 열람 장소에 비치

바.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로부터 14일간

사.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공원녹지과(☎02-3396-5854)

아. 본 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 공원녹지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청 공원녹지과(☎02-3396-58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소문역사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 (위치 : 중구 의주로2가 16-4번지 일대)

구	분	변경						변경						비고
		면적			진			면적			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공작물 (기)	등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공작물 (기)	등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기반 시설	21,363.00	9,949.90	200		782.84	24,822.16	21,363.00	9,176.88	62		871.17	36,467.20	감) 773.02㎡ (감 1387)
		5,580.29	5,580.29					5,495.07	5,495.07					감) 85.22㎡
		2,698.99	2,698.99					2,791.66	2,791.66					증) 92.67㎡
		2,881.30	2,881.30					2,703.41	2,703.41					감) 177.89㎡
	조경 시설	468.77	468.77	13				316.41	316.41	1				감) 152.36㎡ (감 127)
	휴양 시설	958.42	958.42	74				484.63	484.63	38				감) 473.79㎡ (감 367)
	유흥 시설													
	운동 시설									4				증 47기
	교양 시설	2,459.68	2,459.68	1		293.35	24,549.57	2,515.31	2,515.31	1		293.35	24,526.47	증) 55.63㎡
	편의 시설	436.98	436.98	11		247.60	236.50	260.24	260.24	11		127.44	127.44	감) 176.74㎡
	공원관리시설	45.76	45.76	101		42.05	36.09	105.22	105.22	11		105.22	105.22	증) 59.46㎡ (감 907)
	누지 및 기타	11,413.10	(1,312.73)			199.84		12,186.12	(1,804.86)			345.16	11,708.07	증) 773.02㎡ (부지) 증) 482.55㎡ (시설)
	시설율 (법적제한없음)	(9,949.90 / 21,363.00) × 100 = 46.58%						(9,176.88 / 21,363.00) × 100 = 42.96%						
	건폐율 (법정 20% 이하)	(782.84 / 21,363.00) × 100 = 3.66%						(871.17 / 21,363.00) × 100 = 3.64%						

2. 시설조서

구 분	변 경				전 경				변 경				후 경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		공작물 (기)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21,363.00	9,949.90		839.69	24,780.76	200		21,363.00	9,176.88		882.10	36,574.39	62	감) 773.02㎡ (감) 1397)	
기 반 시 설	소 계		5,580.29	5,580.29						5,495.07	5,495.07					감) 85.22㎡	
	도 로		2,698.99	2,698.99						2,791.66	2,791.66					증) 92.67㎡	
	광 장	가	4개소	2,881.30	2,881.30				가	4개소	2,703.41	2,703.41					감) 177.89㎡
	가-1	진입마당1	(855.73)	(855.73)					가-1	진입마당1	(681.80)	(681.80)					
	가-2	진입마당2	(204.76)	(204.76)					가-2	진입마당2	(300.91)	(300.91)					
	가-3	기념광장1	(1,203.72)	(1,203.72)					가-3	기념광장1	(1,085.49)	(1,085.49)					
가-4	기념광장2	(617.09)	(617.09)					가-4	기념광장2	(635.21)	(635.21)						
소 계		12개소	468.77	468.77				13		316.41	316.41				1	감) 152.36㎡ (감) 127)	
벽천	다	기념광장1 주변	54.55	0.00				1								폐지	
민초못	나	하늘광장(B3F) 주변	200.70	0.00				1								폐지	
중간수로	라	소로3-1	61.55	0.00				1								폐지	
식재대	①	소로3-3	49.50	277.68												폐지	

조 경 시 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입구 낮은벽	②	3개소	210.52	182.25															
	②-1	진입마당1	(9.17)	(9.17)					1										
	②-2	서소문로측	(5.95)	(5.95)					1										
	②-3	진입마당2	(17.58)	(17.58)					1										
조형벽	③	3개소	95.43	254.47															
	③-1	진입마당1	(13.50)	(13.50)					1										
	③-2	기념광장2	(19.39)	(19.39)					1										
	③-3	기념광장2	(8.70)	(8.70)					2										
뚜개 우물터	④	산책로3	28.18	0.00					1										
										나	3개소	316.41	316.41						
										나-1	하늘광장(B3F) 주변	(197.76)	(197.76)						
										나-2	소로3-1	(58.64)	(58.64)						
수경시설										나-3	산책로3	(60.01)	(60.01)						
화단	⑤	하늘광장(B3F) 주변	(65.18)	(65.18)					2	①	하늘광장(B3)주 변								감 65.18㎡ ⑤ → ①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소 계		15개소	958.42	958.42					74				484.63					38	감) 473.79㎡ (감 36기)
	휴게소	8개소	958.42	958.42						다	7개소	484.63	484.63						감) 473.79㎡ 마 → 다
	마-1	산책로1	(90.00)	(90.00)						다-1	산책로1	(89.98)	(92.95)						
	마-2	녹지	(88.45)	(88.45)						다-2	산책로2	(72.80)	(72.80)						마-1 → 다-1
	마-3	매점주변	(196.82)	(196.82)						다-3	기념광장2주변	(150.08)	(150.08)						마-2 → 다-2
	마-4	기념광장2주변	(232.53)	(232.53)						다-4	산책로4.5주변	(38.32)	(25.76)						마-3 → 다-3
	마-5	산책로4.5주변	(38.48)	(38.48)						다-5	지하주차장 출입로위	(59.34)	(59.34)						마-4 → 다-4
	마-6	지하주차장출입로위	(56.76)	(56.76)						다-6	산책로9	(24.85)	(24.85)						마-5 → 다-5
마-7	산책로9	(24.85)	(24.85)						다-7	소로3-1주변	(49.26)	(49.26)						마-6 → 다-6	
마-8	소로3-1주변	(230.53)	(230.53)															마-7 → 다-7	
이외특자	⑥	녹지	(17.94)	(17.94)					3										폐지
	등근평상	⑦	휴게소5	(12.56)	(12.56)				1										폐지

유 양 시 설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소계	⑧	5개소	(227.41)	(227.41)															폐지
	⑨-1 동근 간의자	휴게소4	(88.59)	(88.59)					3										폐지
	⑩-2 간의자	전지역	(80.47)	(80.47)					28										폐지
	⑩-3 데크의자	휴게소 내	(24.15)	(24.15)					6										폐지
	⑩-4 등반이 의자	휴게소1	(15.00)	(15.00)					3										폐지
휴게면치	⑩-5 사각의자	진입마당1	(19.20)	(19.20)					30										폐지
										② 시설지내							38		현황반영
소계																	4		현황반영
	채력단련시설									③ 산책로 주변							(4)		현황반영
아산 백운 시 설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응급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교 양 시 설	소 계	18개소	2,459.68	2,459.68			293.35	24,549.57	1	증) 55.63㎡
	현양탑	바	117.68	117.68					1	바 → 라 증) 0.7㎡
	소계 (역사 전시관)	사	2,342.00	2,342.00			293.35	24,549.57		사 → 1 증) 54.93㎡
	전일광장 (B1F)	사-1	(526.84)	(526.84)			(103.48)	(57.21)	1-1	사-1 → 1-1
	하늘광장 (B3F)	사-2	(1,353.69)	(1,353.69)			(59.35)	(42.08)	1-2	사-2 → 1-2
	계단실 및 승강기1	사-3	(154.72)	(154.72)			(7.47)	(7.47)	1-3	사-3 → 1-3
	계단실 및 승강기2	사-4	(306.75)	(306.75)			(123.05)	(98.61)	1-4	사-4 → 1-4
	대강당	사-4	(B2F-B3F)					(841.99)		폐지
소강당	사-5	(B2F)					(304.63)		폐지	
준비실	사-6	(B2F-B3F)					(159.99)		폐지	
전시관	사-7	(B2F-B3F)					(1,963.91)		폐지	
수장고	사-8	(B1F,B3F)					(1,190.38)		폐지	

구분	변경								전경								변경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사무공간	사-9	(B1F)						(684.25)												폐지		
	도서실	사-10	(B1F)						(175.02)												폐지		
	교육강당	사-11	(B1F)						(205.85)												폐지		
	세미나실	사-12	(B1F)						(144.89)												폐지		
	기념품점	사-13	(B1F)						(151.08)												폐지		
	매점	사-14	(B1F)						(178.93)												폐지		
	기계전기실	사-15	(B1F-B4F)						(1,510.32)												폐지		
	공용면적	사-16	(B1F-B4F)						(5,068.65)												폐지		
지하주차장	사-17	(B1F-B4F)						(11,764.31)												폐지			
	지하 건축시설																		(24,321.1)		현황반영		

구 분	경 변 전						경 변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바닥면적	연면적	간축물 (㎡)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소 계		6개소	436.98	436.98			247.60	236.50		127.44	127.44	11	감) 176.74㎡
	공원화장실 (남,여)	진입광장(B1F) 주변	143.90	0.00			132.22	0.00		101.14	101.14		감) 42.76㎡ 아 → 2
매점	자	기림광장2주변	116.98	0.00			93.24	82.10					폐지
자전거 보관소	차	2개소	303.89	0.00									감) 289.89㎡ 차 → 마
	차-1	진입마당1	(7.00)	(7.00)								(6)	차-1 → 마-1
	차-2	소로3-3	(6.00)	(6.00)								(5)	차-2 → 마-2
지하주차장 출입로	카	서측입구주변	138.72	36.33									감) 19.92㎡ 카 → 마
계단실	타	매점주변	24.38	0.00			22.14	22.18		26.30	26.30		지하주차장연결 중) 1.92㎡ 타 매점주변 → 3 산책로4주변
소 계		7개소	45.76	45.76			42.05	36.09		105.22	105.22	11	감) 59.46㎡ (감 90기)
관리사무소	파	진입마당 주변	45.76	0.00			42.05	36.09					폐지

표의시설

표의시설

구	부	변경								변경								비고		
		전				후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휴지통	⑨	전지역						4											
	디자인웍스	⑩	녹지						1											
	공원등	⑪	전지역						35											
	볼라드등	⑫	전지역						30											
	잔디등	⑬	전지역						20											
	공원 안내판	⑭	전지역						11	④	전지역								(11)	⑭ → ④
	공원관리 휴게실 및 창고									4	진입광장(BIF) 주변	105.22	105.22				105.22	105.22		현장인영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소 계		11개소	11,413.10	(1,322.31)			199.84					12,186.12	(1,804.86)				345.16	11,708.07	증) 773.02㎡ (부지) 증) 482.55㎡ (시설)
	녹지	-	9,724.08							-		10,381.26							증) 657.18㎡
	기타	1	3개소	270.83	(260.32)			(132.53)			4	11개소	1,804.86	(1,804.86)			345.16	11,708.07	1 → 4
	재활용 처리장 비상계단1	1-1	차량진입로주변	(49.85)	(49.85)			(46.14)											폐지
재활용 처리장 비상계단2	1-2	현영담주변	(55.36)	(55.36)			(20.66)												폐지
재활용 처리장 주출입구	1-3	청소차진입로 주변	(165.62)	3 (165.62)			(65.73)												폐지
재활용 처리장 청소차 진입로	2	서측입구	(602.14)	(602.14)															폐지
재활용 처리장 사무동	3	청소차진입로 주변	(50.40)	(50.40)			38.61												폐지

부 지 맞 기 타

부 지 및 토 기 다

구	분	변						경						전						변						경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환기탑	4	매점주변	167.34	105.60				164.91																	폐지					
		4-1	매점주변	(31.66)	(31.66)				(28.70)																	폐지					
		4-2	녹지	(45.60)	(45.60)																					폐지					
		4-3	녹지	(26.74)	(26.74)																					폐지					
	가스 정압시설	5	녹지	143.82	(143.82)																					폐지					
		6	철도부지경계	376.29																						폐지					
		7	도로측경계	141.54	(141.54)																						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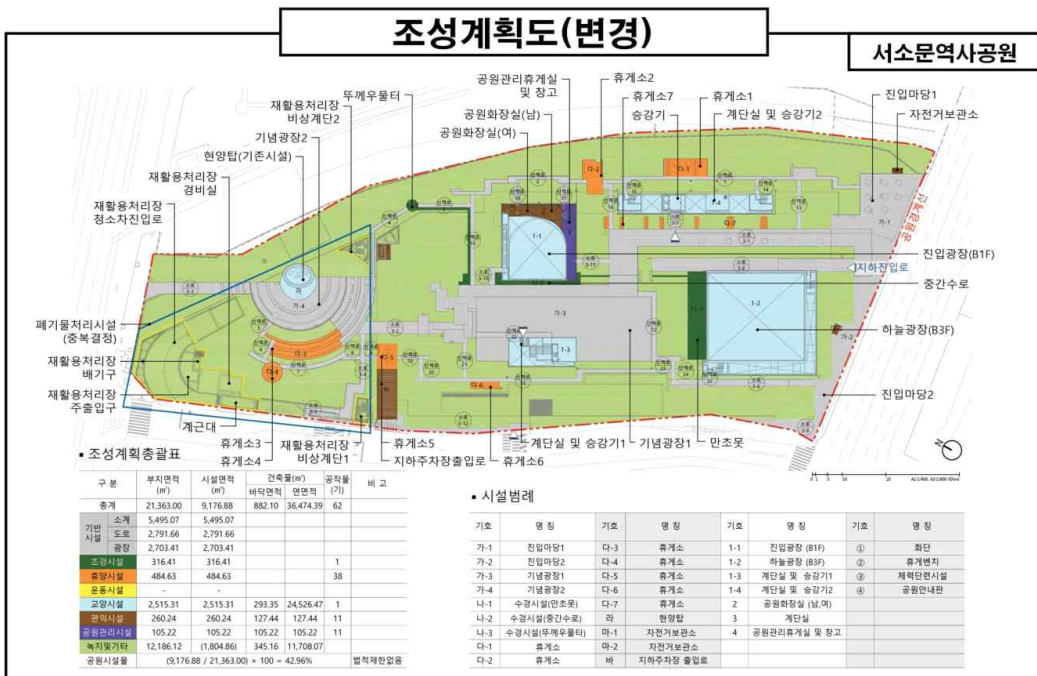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계				1,015.05	2,698.99				
변경					942.64	2,791.66				증)92.67㎡
당초	소로	소계			561.22	2,072.31				
변경					494.83	2,019.78				감)52.53㎡
당초		3	1	6.0	145.45	832.29	연결로	진입마당1	녹지	
변경		3	1	4.0~9.9	145.45	830.70	연결로	진입마당1	녹지	
당초		3	2	4.0	47.00	310.65	연결로	소로3-1	기념광장2	
변경		3	2	4.0~7.6	47.78	315.78	연결로	소로3-1	기념광장2	
당초		3	3	8.0	34.90	231.04	진입로	서소문로	기념광장2	
변경		3	3	4.0	25.43	108.05	진입로	서소문로	기념광장2	
당초		3	4	2.0	29.86	66.53	연결로	소로3-5	소로3-2	
변경		3	4	1.85~3	34.81	83.47	연결로	소로3-5	소로3-2	
당초		3	5	3.2	38.14	76.56	진입로	지하주차장출입로	소로3-4	
변경		3	5	1.3~1.6	17.76	24.10	진입로	지하주차장출입로	소로3-4	
당초		3	6	2.3	49.10	106.85	연결로	진입마당2	녹지	
변경		3	6	2.4	49.38	120.93	연결로	진입마당2	녹지	
당초		3	7	3.0	5.15	15.44	연결로	소로3-1	엘리베이터실	주출입구
변경		3	7	3.0	6.34	18.71	연결로	계단실 및 승강기2	소로3-1	주출입구
당초		3	8	4.0	61.00	252.01	연결로	진입마당1	진입광장(B1F)	지하진입로
변경		3	8	4.5	61.20	267.49	연결로	진입마당1	진입광장(B1F)	지하진입로
당초		3	9	4.0	142.37	166.40	연결로	진입마당2	지하주차장출입로	
변경		3	9	6.5	8.83	77.05	연결로	진입마당2	지하주차장출입로	
당초		3	10	1.8	8.25	14.54	연결로	소로3-1	계단실	
변경		3	10	1.7	16.8	16.34	연결로	진입광장(B1F)	소로3-1	
신설		3	11	1.8	11.05	19.89	연결로	진입광장(B1F)	소로3-1	
신설		3	12	0.8~3.5	70.00	137.27	연결로	진입마당2	지하주차장출입로	

당초	산책로	소계			453.83	626.68				
변경					528.86	771.88				증)145.20㎡
당초		-	1	1.2	86.25	128.09	산책로	진입마당1	휴게소2	
변경		-	1	1.2	92.20	141.79	산책로	진입마당1	휴게소	
당초		-	2	1.2	49.90	65.47	산책로	휴게소2	녹지	
변경		-	2	1.2	52.29	76.06	산책로	휴게소	녹지	
당초		-	3	1.2	21.10	25.35	산책로	녹지	뚜깨우물터	
변경		-	3	1.2	17.80	21.46	산책로	산책로19	뚜깨우물터	
당초		-	4	1.2	12.76	15.47	산책로	녹지	휴게소5	
변경		-	4	1.2	29.90	35.93	산책로	뚜깨우물터	기념광장4	
당초		-	5	1.2	24.11	29.10	산책로	휴게소5	녹지	
변경		-	5	1.5	5.90	8.85	산책로	휴게소	기념광장4	
당초		-	6	1.2	6.33	7.62	연결로	산책로5	소로3-4	
변경		-	6	1.5	7.00	10.66	연결로	산책로7	휴게소	
당초		-	7	1.2	4.20	5.03	연결로	소로3-4	휴게소6	
변경		-	7	1.5	35.50	47.59	연결로	산책로8	녹지	
당초		-	8	1.2	11.00	13.20	연결로	휴게소6	녹지	
변경		-	8	1.5	5.90	8.87	연결로	소로3-4	산책로7	
당초		-	9	1.2	94.10	115.40	산책로	녹지	녹지	
변경		-	9	1.5	3.90	5.85	산책로	녹지	소로3-4	
당초		-	10	2.0	9.95	21.90	연결로	녹지	기념광장1	
변경		-	10	1.2	11.00	13.20	연결로	녹지	휴게소	
당초		-	11	1.5	16.60	24.90	연결로	소로3-1	산책로1	
변경		-	11	1.2	90.90	111.56	연결로	산책로23	녹지	
당초		-	12	1.5	4.80	7.20	연결로	계단실	산책로1	
변경		-	12	1.8	36.55	65.97	연결로	녹지	소로3-1	
당초		-	13	1.5	4.80	7.20	연결로	관리사무소	산책로1	
변경		-	13	1.5	16.60	24.90	연결로	산책로1	소로3-1	
당초		-	14	1.5	4.80	7.20	연결로	계단실	산책로1	
변경		-	14	1.5	4.70	7.12	연결로	산책로1	계단실 및 승강기2	
당초		-	15	1.5	13.60	20.40	연결로	소로3-1	휴게소2	
변경		-	15	1.5	3.50	5.32	연결로	산책로1	계단실 및 승강기2	
당초		-	16	1.5	7.80	11.70	연결로	화장실	산책로2	
변경		-	16	1.5	17.40	26.10	연결로	휴게소	소로3-1	
당초		-	17	1.5	7.80	11.70	연결로	화장실	산책로2	
변경		-	17	2.0	6.97	14.64	연결로	산책로2	공원화장실(남,여)	
당초		-	18	1.5	5.80	8.70	연결로	산책로3	산책로2	
변경		-	18	1.8	7.00	12.58	연결로	산책로2	공원화장실(남,여)	
당초		-	19	1.5	28.40	42.60	연결로	소로3-1	산책로3	

변경		-	19	1.5	30.60	46.00	연결로	산책로2	소로3-1	
당초		-	20	1.5	15.64	22.32	연결로	기념광장2	산책로4	
변경		-	20	1.5	6.40	9.57	연결로	산책로11	산책로10	
당초		-	21	1.5	6.40	9.60	연결로	산책로8	산책로9	
변경		-	21	1.5	11.95	17.91	연결로	산책로11	소로3-2	
당초		-	22	1.5	11.95	17.92	연결로	소로3-2	산책로9	
변경		-	22	1.8	25.75	46.92	연결로	기념광장4	소로3-2	
당초		-	23	1.5	2.10	3.15	연결로	산책로10	산책로9	
변경		-	23	1.5	6.10	9.15	연결로	소로3-6	산책로12	
당초		-	24	1.5	2.30	3.44	연결로	산책로9	소로3-6	
변경		-	24	1.2	1.70	2.04	연결로	녹지	산책로23	
당초		-	25	1.5	1.35	2.02	연결로	계단실	소로3-6	
변경		-	25	1.35	1.35	1.84	연결로	하늘광장 (B3F)	소로3-6	



조성계획도(당초)

서소문역사공원



• 조성계획총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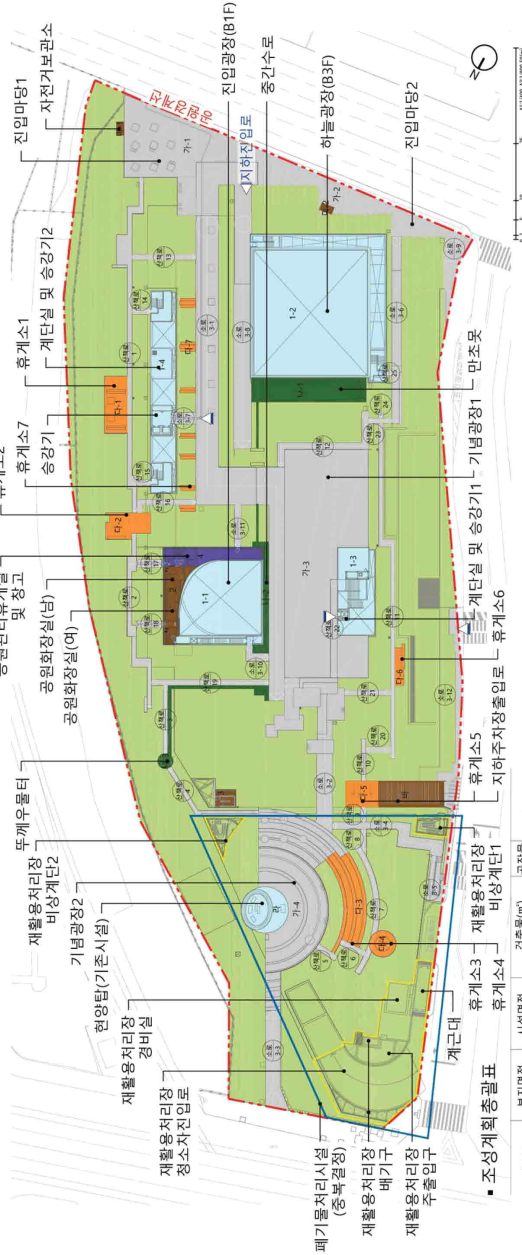
구분	부지면적 (㎡)	사업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공익용 (㎡)	비고
총계	21,363.00	9,949.90	782.84	24,822.16	200	
기타	5,380.29	5,380.29				
도로	2,698.99	2,698.99				
광장	2,881.30	2,881.30				
조경시설	468.77	468.77			13	
휴양시설	958.42	958.42			74	
운동시설	2,459.68	2,459.68	393.35	24,549.57	1	
공연시설	438.98	438.98	247.60	236.50	11	
문화시설	45.76	45.76	42.05	36.09	101	
문화관리시설	11,413.10	(13,117.73)	199.84			
녹지및기타						
공원시설용		(9,949.90/21,363.00) × 100 = 46.58%				법적제한내용

■ 시설별례

기호	명칭	기호	명칭	기호	명칭	기호	명칭
가-1	진입마당1	마-4	휴게소4	자	매점	4	환기탑
가-2	진입마당2	마-5	휴게소5	자	자정거보관소	5	기소정압시설
가-3	기념광장1	마-6	휴게소6	키	지하주차장통입로	①	식재대
가-4	기념광장2	마-7	휴게소7	타	계단실	②	인구난입벽
나	민조못	마-8	휴게소8	파	관리사무소	③	조형벽
다	벽천	배	현양탑기존시설	3.1	계단실1	④	투광유물터
라	웅진수로	사-1	진입광장(B3F)	3.2	계단실2	⑤	외단
마-1	휴게소1	사-2	하늘광장(B3F)	1.3	수출입구	⑥	이외벽자
마-2	휴게소2	사-3.4	계단실 및 승강기1,2	2	정소자진입로	⑦	통고광장
마-3	휴게소3	아	화장실	3	경비실	⑧	긴의자

조성계획도(변경)

서소문역사공원



■ 조성계획총괄표

구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면적 (㎡)	면적 (㎡)	공작용 (㎡)	비고
총계	21,363.00	9,176.88	882.10	36,474.39	62	
기타	5,495.07	5,495.07				
도로	2,791.66	2,791.66				
공원	2,703.41	2,703.41			1	
조경시설	316.41	316.41			38	
운동시설	484.63	484.63				
공영시설	2,515.31	2,515.31	293.35	24,526.47	1	
문화시설	260.24	260.24	127.44	127.44	11	
문화시설	105.22	105.22	105.22	105.22	11	
문화시설	12,186.12	(1,804.86)	345.16	11,708.07		
문화시설	(9,176.88 / 21,363.00) × 100 = 42.96%					법제제정준용

■ 시설범례

기호	명칭	기호	명칭	기호	명칭	기호	명칭
가-1	진입마당1	다-3	휴게소	1-1	진입광장 (81F)	①	회단
가-2	진입마당2	다-4	휴게소	1-2	하늘광장 (83F)	②	휴게벤치
가-3	기념광장1	다-5	휴게소	1-3	계단실 및 승강기1	③	계단실/벤치
가-4	기념광장2	다-6	휴게소	1-4	계단실 및 승강기2	④	공원안내관
나-1	수경시설(관조용)	다-7	휴게소	2	공원화장실 (난야)		
나-2	수경시설(관조용)	라	휴게소	3	계단실		
나-3	수경시설(관조용)	마-1	휴게소	4	공원관리휴게실 및 창고		
다-1	휴게소	바	지하수자정출입로				
다-2	휴게소						

◆ 강북구공고 제2026-29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완료 공고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07.09.)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1-393호(2021.09.29.)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63호(2024.10.04.)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오동근린공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7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6조의 2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 합니다.

2026년 2월 19일

강 북 구 청 장

가. 공 원 명 : 오동근린공원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산28-6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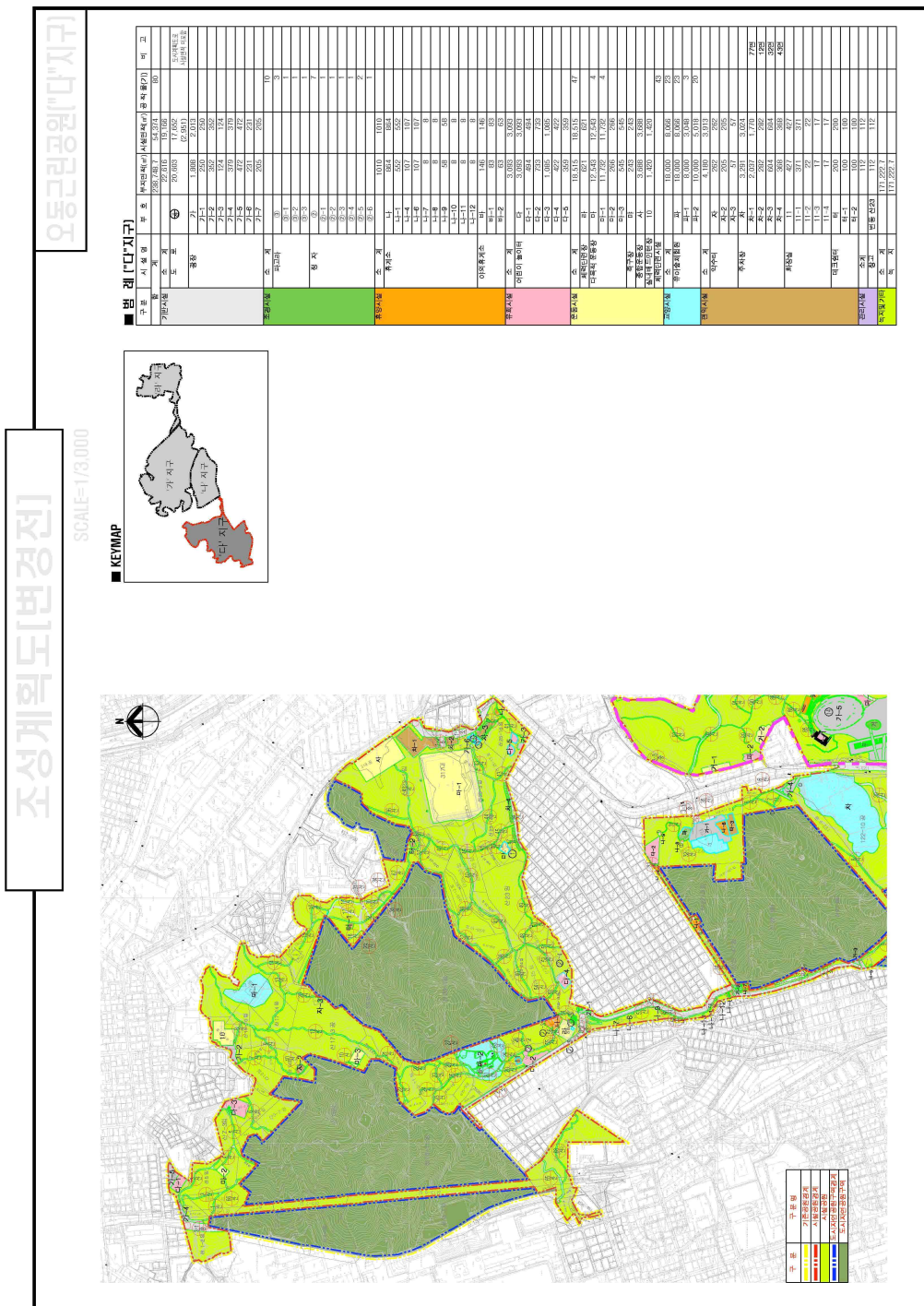
다. 면 적 : 238,748.7㎡

라. 관계도서 : 열람 장소에 비치

마.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익일부터 14일간

바.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공원녹지과 ☎ 02-901-6929)

- 주 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덕릉로 138(번동, 창강빌딩)



오동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오동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1. 총괄표(위치 : 서울시 강북구 번동 산28-6일대)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면적 (㎡)	건축물 면적 (㎡)	건축물 면적 (㎡)	건축물 면적 (㎡)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면적 (㎡)	건축물 면적 (㎡)	
합 계	1,259,273.8	346,004	28	19,253.97	44,258.24	200	200
소 계	123,771	108,049					
도 로	101,166	85,444 (15,722)					
오동교	200	200					
광 장	22,405	22,405					
조경시설	54,985	54,985	1	3,786.05	9,726.01	63	63
휴양시설	18,877	18,877	2	244.80	244.80	5	5
유희시설	15,768	15,768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건축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건축면적 (㎡)	연면적 (㎡)		
운동시설	50,346	48,916	4	6,275.76	13,039.68	92	50,845	49,415	4	6,275.76	13,039.68	92	
교양시설	89,677	79,743	7	5,235.76	16,208.5	24	89,677	79,743	7	5,235.76	16,208.50	24	
편익시설	16,412	16,145	9	2,454.20	2,956.92	1	16,312	16,045	9	2,454.20	2,956.92	1	
관리시설	2,981	2,981	5	957.40	1,782.33	2	2,981	2,981	5	957.4	1,782.33	2	
녹지 및 기타	886,456.8	540					880,002.8	540					
공영시설물 (범정40%)	$(346,004\text{㎡} / 1,259,273.8\text{㎡}) \times 100\% = 27.47\%$						$(352,458\text{㎡} / 1,259,273.8\text{㎡}) \times 100\% = 27.99\%$						
건폐율(10%)	$(19,253.97\text{㎡} / 1,259,273.8\text{㎡}) \times 100\% = 1.53\%$						$(19,253.97\text{㎡} / 1,259,273.8\text{㎡}) \times 100\% = 1.53\%$						

※ 총괄표 (지구별)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건축면적	연면적				동수	건축면적			연면적
계	1,259,273.8	346,004	28	19,253.97	44,258.24	200	1,259,273.8	347,419	28	19,253.97	44,258.24	200	
"가" 지구	684,156.6	195,062	12	9,851.81	22,313.80	80	684,156.6	195,062	12	9,851.81	22,313.80	80	
"나" 지구	115,490.2	33,989	1	1,249.0	5,574.0	31	115,490.2	33,989	1	1,249.0	5,574.0	31	
"다" 지구	238,748.7	54,374	3	3,121.0	9,239.91	80	238,748.7	60,828	3	3,121.0	9,239.91	79	
"라" 지구	220,878.3	62,579	12	5,032.16	7,130.53	9	220,878.3	62,579	12	5,032.16	7,130.53	9	

1. “가” 지구
가. 시설별 총괄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건축면적	연면적				동수	건축면적	연면적			
합 계		684,156.6	195,062	12	9,851.81	22,313.80	80	684,156.6	195,062	12	9,851.81	22,313.80	80		
기 반 시 설		소 계	52,663					52,663	52,663						
		도로	37,581					37,581	37,581						
		오동고	200					200	200						
		광 장	14,882					14,882	14,882						
조 경 시 설		54,045	54,045	1	3,786.05	9,726.01	34	54,045	54,045	1	3,786.05	9,726.01	34		
휴 양 시 설		13,749	13,749	1	44.80	44.80		13,749	13,749	1	44.80	44.80			
유 희 시 설		4,159	4,159					4,159	4,159						
운 동 시 설		8,291	6,861				31	8,291	6,861				31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건축면적	연면적				동수	건축면적	연면적		
교 양 시 설	51,503	51,503	4	3,284.59	8,674.97	1	51,503	51,503	4	3,284.59	8,674.97	1	
편 의 시 설	9,713	9,713	5	2,188.97	2,495.69	1	9,713	9,713	5	2,188.97	2,495.69	1	
관 리 시 설	1,829	1,829	1	547.40	1,372.33	1	1,829	1,829	1	547.40	1,372.33	1	
녹지 / 기타	488,204.6	540					488,204.6	540					
공원시설율 (법정40%)	$(195,062 \text{ ㎡} / 684,156.6\text{㎡}) \times 100\% = 28.51\%$						$(195,062 \text{ ㎡} / 684,156.6\text{㎡}) \times 100\% = 28.51\%$						
건폐율(10%)	$(9,851.81\text{㎡} / 684,156.6\text{㎡}) \times 100\% = 1.44\%$						$(9,851.81\text{㎡} / 684,156.6\text{㎡}) \times 100\% = 1.44\%$						

나.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번 경 전						번 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 축 물(㎡)		규모 (동)	구조	건 축 물(㎡)		공작물 (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기 반 시 설	합 계			684,156.6	195,062		12	9,851.81	22,313.8	80		9,851.81	22,313.8	80
	소 계				52,663									
	도 로		전지역	37,581	37,581									
	오동교		미아네동 산35-1, 25-1	200	200									
		가	10개소	14,882	14,882									
광 장		가-1	변동 산28-6, 산28-9, 가-129,87, 87-189, 89-3, 95-7,627-1,	2,873	2,873									
		가-2	변동 92,93-2	33	33									
		가-3	변동 산28-6	14	14									
		가-4	변동 산28-6	300	300									
		가-5	변동 산28-6, 산28-3, 120-1, 120-6,121	11,316	11,316									
		가-6	변동 916	127	127									
		가-7	변동 93	54	54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 축 물(㎡) 건축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 축 물(㎡) 건축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가-8	변동 산28-6	79	79					가-8	변동 산28-6	79	79					
		가-9	변동 92,828	58	58					가-9	변동 92,828	58	58					
		가-10	변동 산28-6	28	28					가-10	변동 산28-6	28	28					
	소 계			54,045	54,045		1	3,786.05 9,726.01	34			54,045	54,045		1	3,786.05 9,726.01	34	
조 경 시 설	월영연못	나	변동 산28-6	12,526	12,526					나	변동 산28-6	12,526	12,526					
	계 류	다	2개소	3,971	3,971					다	2개소	3,971	3,971					
		다-1	변동 산28-6, 28-3	2,829	2,829					다-1	변동 산28-6, 28-3	2,829	2,829					
		다-2	변동 산28-6 외 5필지	1,142	1,142					다-2	변동 산28-6 외 5필지	1,142	1,142					
조 경 시 설	칠곡연못	라	변동 산28-6 외 5필지	3,598	3,598					라	변동 산28-6 외 5필지	3,598	3,598					
	미러폰드	무	변동 120-1 외 3필지	2,400	2,400					무	변동 120-1 외 3필지	2,400	2,400					
	점핑반수	저	변동 산28-3	386	386					저	변동 산28-3	386	386					
	저류지	마	변동 산28-6	467	467					마	변동 산28-6	467	467					

구분	시설명	변경						변경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축물(㎡)		공작물 (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시설	아생초원	9	변동 산28-6 산28-7	7,793	7,793		지하2층 지상2층	3,786.05	9,726.01		9	변동 산28-6 산28-7	7,793	7,793		지하2층 지상2층	3,786.05	9,726.01	
		사	2개소	21,664	21,664						사	2개소	21,664	21,664					
	잔디마당	사-1	변동 산28-6	13,228	13,228						사-1	변동 산28-6	13,228	13,228					
		사-2	변동 산28-6 외 6필지	8,436	8,436						사-2	변동 산28-6 외 6필지	8,436	8,436					
	창포원	아	변동 산28-6 120-1	1,167	1,167						아	변동 산28-6 120-1	1,167	1,167					
	낙수대	누	변동 산28-6	73	73						누	변동 산28-6	73	73					
	월광폭포	④	변동 산28-6	-	-	철근 인강 암			1	1	④	변동 산28-6	-	-	철근 인강 암			1	
	월관대	⑤	변동 산28-6	-	-	철근 석재			1	1	⑤	변동 산28-6	-	-	철근 석재			1	
	월영대	⑥	변동 산28-6	-	-	철근 석재			1	1	⑥	변동 산28-6	-	-	철근 석재			1	
	전통정자	⑦	변동 산28-6	-	-				2	2	⑦	변동 산28-6	-	-				2	
	⑦-1	변동 산28-6	-	-	목재				1	1	⑦-1	변동 산28-6	-	-	목재			1	

서울

구분	시설명	변경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축물(㎡)		공작물 (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2	반동 산28-6	-	-	목재				1	㉠-2	반동 산28-6	-	-	목재				1	
	피고라	㉡	반동 산28-6	-	-	목재				12	㉡	반동 산28-6	-	-	목재				12	
	환경 조형물	㉢	반동 산28-7	-	-					6	㉢	반동 산28-7	-	-					6	
	조형화관	㉣	반동 산28-10	-	-					4	㉣	반동 산28-10	-	-					4	
	정자	㉤	전지역	-	-					1	㉤	전지역	-	-					1	
		㉤-1	번3동 산28-10일대			목재 (플라)				1	㉤-1	번3동 산28-10일대			목재 (플라)				1	
	상징조형물	(1)	반동 90							1	(1)	반동 90							1	
	소 계			13,749	13,749	1		44.8	44.8	5			13,749	13,749		1	44.8	44.8	5	
	한강시정	자	13개소	2,677	2,677						자	13개소		2,677	2,677					
		자-1	반동 산28-6	364	364						자-1	반동 산28-6		364	364					
		자-2	반동 산28-6	303	303						자-2	반동 산28-6		303	303					
		자-3	반동 산28-6	126	126						자-3	반동 산28-6		126	126					

구분	시설명	전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 축 물(㎡) 건축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 축 물(㎡) 건축면적 연면적
		자-4	변동 산28-10	215	215					자-4	변동 산28-10	215	215				
		자-5	변동 산28-10	188	188					자-5	변동 산28-10	188	188				
		자-6	변동 산28-10	310	310					자-6	변동 산28-10	310	310				
		자-7	변동 산28-10	137	137					자-7	변동 산28-10	137	137				
		자-8	변동 산28-10	545	545					자-8	변동 산28-10	545	545				
		자-9	변동 산28-10	200	200					자-9	변동 산28-10	200	200				
		자-10	변동 산28-10	80	80					자-10	변동 산28-10	80	80				
		자-11	변동 산28-10	130	130					자-11	변동 산28-10	130	130				
		자-12	변동 산28-10	24	24				2	자-12	변동 산28-10	24	24				2
		자-13	변동 산28-10	55	55				1	자-13	변동 산28-10	55	55				1
		카	10개소	10,443	10,443				2	카	10개소	10,443	10,443				2
		카-1	변동 산28-6	780	780					카-1	변동 산28-6	780	780				
		데크쉘터															

구분	시설명	변경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 축 물(㎡)		공작물 (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카-2	반동 산28-6	146	146						카-2	반동 산28-6	146						
		카-3	반동 산28-6	72	72						카-3	반동 산28-6	72						
		카-4	반동 산28-6	419	419						카-4	반동 산28-6	419						
		카-5	반동 산28-6	7,735	7,735			지상 1층	44.80	44.80	카-5	반동 산28-6	7,735			지상 1층	44.80	44.80	
		카-6	반동 산28-6 산28-3	966	966						카-6	반동 산28-6 산28-3	966						
		카-7	반동 산28-10	79	79						카-7	반동 산28-10	79						
		카-8	반동 산35-64	92	92						카-8	반동 산35-64	92						
		카-9	반동 산28-3	119	119						카-9	반동 산28-3	119						
		카-10	반동 90	35	35					2	카-10	반동 90	35					2	
한양시정	수변센터	타	5개소	629	629						타	5개소	629						
		타-1	반동 산28-6	49	49						타-1	반동 산28-6	49						
		타-2	반동 산28-6	268	268						타-2	반동 산28-6	268						
		타-3	반동 산28-6	41	41						타-3	반동 산28-6	41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 축 물(㎡)		공작물 (기)								
								건축면적	연면적									
아 린 이 돌 이 터	어린이 놀이터	타-4	번동 산28-6, 92	195	195					타-4	번동 산28-6, 92	195	195					
		타-5	번동 산28-6, 628	76	76					타-5	번동 산28-6, 628	76	76					
				4,159	4,159			-	-	13			4,159	4,159		-	13	
		파	8개소	4,159	4,159					13	파	8개소	4,159	4,159			13	
		파-1	번동 산28-6		482						파-1	번동 산28-6	482	482				
		파-2	번동 산28-1		458						파-2	번동 산28-1	458	458				
		파-3	번동 산28-10		715						파-3	번동 산28-10	715	715				
		파-4	번동 90		61					1	파-4	번동 90	61	61			1	
아 린 이 돌 이 터	어린이 놀이터	파-5	번동 90		146					1	파-5	번동 90	146	146			1	
		파-6	번동 90		138					2	파-6	번동 90	138	138			2	
		파-7	번동 90		1353					7	파-7	번동 90	1353	1353			7	
		파-8	번동 90		806					2	파-8	번동 90	806	806			2	
				8,291	6,816					31			8,291	6,816			31	
		하	1개소		310						하	1개소	310	310				
		하-1	번동 산28-10		310						하-1	번동 산28-10	310	310				
		아 린 이 돌 이 터	소 계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축물(㎡)		공작물 (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다목적 운동장	다목적 운동장	거	2개소	1,068	1,068						거	2개소	1,068	1,068						
		거-1	변동 산28-1	491	491						거-1	변동 산28-1	491	491						
		거-2	변동 산28-1	577	577						거-2	변동 산28-1	577	577						
		너	4개소	1,904	1,904						너	4개소	1,904	1,904						
		너-2	변동 산28-10	537	537						너-2	변동 산28-10	537	537						
		너-4	변3동산28-87	519	519						너-4	변3동산28-87	519	519						
배드 민탕장	배드 민탕장	너-6	변3동산35-65 산 28-88	848	848						너-6	변3동산35-65 산 28-88	848	848						
		더	1개소	561	561						더	1개소	561	561						
족구장	족구장	더-1	변동 산28-68	561	561						더-1	변동 산28-68	561	561						
		러	1개소	1,759	1,759						러	1개소	1,759	1,759						
테니스장	테니스장	러-1	변동 115-10	1,759	1,759						러-1	변동 115-10	1,759	1,759						
		어	1개소	531	531						어	1개소	531	531						
체력단련시설	체력단련시설	어-1	변3동산28-8 산 28-71	531	531						어-1	변3동산28-8 산 28-71	531	531						
		㉔	전지역	2,158	728					31	㉔	전지역	2,158	728					31	
소계	소계			51,503	51,503		4	3,284.59	8,674.97	1			51,503	51,503		4	3,284.59	8,674.97	1	
		1	변동 93-1일대	800	800		2	204.96	204.96		1	변동 93-1일대	800	800		2	204.96	204.96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축물(㎡)		공작물 (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문화센터	2	변동 산28-6	4,108	4,108	철근조	지하2층 지상3층	2,707.85	7,525.64		2	변동 산28-6	4,108	4,108	철근조	지하2층 지상3층	2,707.85	7,525.64		
	미술관	3	변동 산28-6	1,187	1,187	철근조	지하1층 지상2층	371.78	944.37		3	변동 산28-6	1,187	1,187	철근조	지하1층 지상2층	371.78	944.37		
	단풍식물원	더	변동 산28-10일대	33,610	33,610						더	변동 산28-10일대	33,610	33,610						
	화목원	머	변3동 산28-8	11,798	11,798						머	변3동 산28-8	11,798	11,798						
	무대조형물	㉔	변동 산28-6	-	-					1	㉔	변동 산28-6	-	-					1	
	소계			9,713	9,713		5	2,188.97	2,495.69	1			9,713	9,713		5	2,188.97	2,495.69	1	
편의시설	주차장	머	변동 산28-6	3,026	3,026						머	변동 산28-6	3,026	3,026						
	주차장	버	변동 산28-6	125	125						버	변동 산28-6	125	125						
	주차장	서	변동 산28-6	226	226						서	변동 산28-6	226	226						
	점막대	4	변동 산28-6	2,169	2,169	철근조	지상3층	852.79	1,075.03		4	변동 산28-6	2,169	2,169	철근조	지상3층	852.79	1,075.03		
	레스토랑	5	변동 산28-6	3,082	3,082	철근조	지상1층	667.39	667.39		5	변동 산28-6	3,082	3,082	철근조	지상1층	667.39	667.39		
	클래스 파빌리온	6	변동 산28-6 120-1	446	446	철근조	지하1층 지상1층	381.95	466.43		6	변동 산28-6 120-1	446	446	철근조	지하1층 지상1층	381.95	466.43		

구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축물(㎡)		공작물 (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이외 화장실	7	변동 산28-6	558	558	철근조	지상1층	206.28	206.28		7	변동 산28-6	558	558	철근조	지상1층	206.28	206.28				7	변동 산28-6	558	558	철근조	지상1층	206.28	206.28									
	이외 화장실	7-1	변동 115-10	81	81	철근조	지상1층	80.56	80.56		7-1	변동 115-10	81	81	철근조	지상1층	80.56	80.56						81	81	철근조	지상1층	80.56	80.56									
	1층								80.56									80.56										80.56										
	경사형엘리베이터	㉔	변동 산28-6							1	㉔	변동 산28-6								1											1							
관리 시설	소 계			1,829	1,829		1	547.40	1,372.33				1,829	1,829		1	547.40	1,372.33							1	547.40	1,372.33											
	방문자 안전 센 터	8	변동 산28-9임	1,829	1,829	철근조	지하1층	547.40	1,372.33		8	변동 산28-9임	1,829	1,829	철근조	지하1층	547.40	1,372.33							지하1층	547.40	1,372.33											
녹지 및 기타	소 계			488,204.6	540								488,204.6	540																								
	녹지			487,664.6									487,664.6																									
	동물원이터	동-1	변동 산28-10	540	540						동-1	변동 산28-10	540	540																								

2. “나” 지구
가. 시설별 총괄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시설면적 (㎡)	부지면적 (㎡)	건 축 물				
			동수 (동)	건축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건축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공작물 (기)					공작물 (기)		
합 계	115,490.2	33,989	1	1,249.0	5,574.0	31	115,490.2	33,989	1	1,249.0	5,574.0	31
기 반 시 설	소 계	17,308					17,308	8,748				
	도 로	14,297	5,737 (8,560)				14,297	5,737 (8,560)				
	광 장	3,011	3,011				3,011	3,011				
조 경 시 설		408	408			17	408	408				17
휴 양 시 설		1,417	1,417				1,417	1,417				
유 희 시 설		1,446	1,446				1,446	1,446				
운 동 시 설		2,336	2,336			14	2,336	2,336				14
교 양 시 설		18,467	18,467	1	1,249.0	5,574.0	18,467	18,467	1	1,249.0	5,574.0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등수 (동)	건축면적 (㎡)	연면적 (㎡)				등수 (동)	건축면적 (㎡)			연면적 (㎡)
편 의 시 설	847	847					847	847					
관 리 시 설	320	320					320	320					
녹 지 / 기 타	72,941.2						72,941.2						
공영시설물 (보통40%)	$(33,989㎡ / 115,490.2㎡) \times 100\% = 29.43\%$					$(33,989㎡ / 115,490.2㎡) \times 100\% = 29.43\%$							
건폐율(10%)	$(1,249.0㎡ / 115,490.2㎡) \times 100\% = 1.08\%$					$(1,249.0㎡ / 115,490.2㎡) \times 100\% = 1.08\%$							

나.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 축 물(㎡) 건축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 축 물(㎡) 건축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기 단 시 설	합	계			115,490.2	33,989		1	1,249.0	5,574.0	31				1	1,249.0	5,574.0	31	
		소	계			17,308	8,748												
		도	로			14,297	5,737 (8,560)												
			가	4개소	3,011	3,011					가	4개소	3,011	3,011					
			가-1	번2동 산27-108일대	1,813	1,813					가-1	번2동 산27-108일대	1,813	1,813					
			가-2	번2동 산27-117일대	217	217					가-2	번2동 산27-117일대	217	217					
			가-3	미아동 산25-80일대	91	91					가-3	미아동 산25-80일대	91	91					
			가-4	번2동 산27-122일대	890	890					가-4	번2동 산27-122일대	890	890					
			소	계		408	408				17		408	408				17	
	조 경 시 설		파고라	①	전지역							13	①	전지역					13
		연못	파	번2동 산27-108일대	408	408						파	번2동 산27-108일대	408	408				
			②	4개소			목재				4	②	4개소			목재		4	
			②-1	미아9동 산25-50일대			목재 (팔각)				1	②-1	미아9동 산25-50일대			목재 (팔각)		1	
			②-2	미아9동 산25-1일대			목재 (육각)				1	②-2	미아9동 산25-1일대			목재 (육각)		1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종류)	건 축 물(㎡)		규모 (동)	시원면적 (㎡)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규모 (동)	공작물 영작물 (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후계소		②-3	번2동 산27-120일대			목재 (사각)		1	②-3	번2동 산27-120일대						1	
		②-4	미아8동 산25-46일대					1	②-4	미아8동 산25-46일대						1	
	소 계			1,417	1,417						1,417	1,417					
		나	7개소	1,417	1,417				나	7개소			1,417	1,417			
		나-1	번2동 산27-120일대	364	364				나-1	번2동 산27-120일대			364	364			
		나-4	번2동 산27-108일대	68	68				나-4	번2동 산27-108일대			68	68			
		나-5	번2동 산27-8일대	12	12				나-5	번2동 산27-8일대			12	12			
		나-6	번2동 산27-108일대	433	433												
		나-7	번2동 산27-5일대	453	453												
		나-8	번2동 산27-108일대	37	37												

한양시정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동)	건 축 물(㎡)		규모 (동)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동)	건 축 물(㎡)		공작물 (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유 한 시 설		나-9	번2동 산 27-108일대	50	50											
	소 계			1,446	1,446											
	다	2개소	1,446	1,446				433								
	다-1	미아동 산25-43일대	446	446				433								
	다-2	번2동 산27-108일대	1,000	1,000				번2동 산27-108 일대								
안원시정	소 계			2,336	2,336				14	나-6						
	라	4개소	1,459	1,459				나-7	번2동 산27-5일대	453	453					
	라-1	미아동 산25-52	250	250				나-8	번2동 산27-108일대	37	37					
	라-2	미아동 산34-9	441	441				나-9	번2동 산 27-108일대	50	50					
	라-3	미아동 산25-52	708	708						1,446	1,446					
	라-4	미아동 산25-52	60	60				다	2개소	1,446	1,446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 축 물(㎡)		공작물 (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교 양 시 설	게이트볼장	거	미아동 산25-52	362	362							다-1	미아동 산25-49일대						
	다목적 운동장	마	미아동 산25-48일대	515	515							다-2	번2동 산27-108일대						
	배드민턴장																		
	체육단련시설		전지역									라	4개소						14
	소 계			18,467	18,467		1	1,249	5,574			라-1	미아동 산25-52						
	도서관 1		번2동 산27-108일대	1,720	1,720	철근콘크리트 라멘 구조	지하1층 지상4층	1,249	5,574			라-2	미아동 산34-9						
	관목원											라-3	미아동 산25-52						
	자연학습장	아	번동 산27-126	129	129							라-4	미아동 산25-52						
	보태기	자	번동 122	3,888	3,888							거	미아동 산25-52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 축 물(㎡)		공작물 (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편 의 시 설	생 태 습지원	차	번2동 122-10일대	12,730	12,730					마	미09동 산25-46일대	515	515							
	소 계			847	847															
	약수터										전지역								14	
	타		2개소	836	836							18,467	18,467		1	1,249	5,574			
	주차장 타-2		미09동 산25-46일대	307	307					1	번2동 산27-108일대	1,720	1,720	철근 콘크리트 라멘 조	지하 1층 지상 4층	1,249	5,574			
관 리 시 설	타-3		번2동 산27-108일대	529	529															
	화장실 2		미이동 산25-52	11	11					아	번동 산27-126	129	129							
	소계			320	320					자	번동 122	3,888	3,888							
	창고 3		3개소	210	210					차	번2동 122-10일대	12,730	12,730							
	3-1		번동 산27-121	150	150							847	847							

구분	시설명	전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물(㎡)	건축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3-2	빈동 신27-121	30	30									
		3-3	빈동 신27-121	30	30									
		화장실 4	빈동 신27-121	30	30									
	사무실	5	빈동 신27-121	80	80									
	녹지 및 기타			72,941.2										
		2	미아동 신25-52	11	11									
		타-2	미아동 신25-46일대	307	307									
		타-3	빈2동 신27-108일대	529	529									

3. “다” 지구
가. 시설별 총괄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건축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건축면적 (㎡)			연면적 (㎡)
계	238,748.7	54,374	3	3,121.0	9,239.91	80	238,748.7	60,828	3	3,121.0	9,239.91	79	
기 반 시 설	소 계	22,616	19,665				28,286	25,335					
	도 로	20,603	17,652 (2,951)				26,478	23,527 (2,951)					
	광 장	2,013	2,013				1,808	1,808					
조 경 시 설						10						9	
휴 양 시 설	1,010	1,010				10	1,395	1,395				10	
유흥 시 설	3,093	3,093					3,093	3,093					
운동 시 설	18,515	18,515	2	3,027.77	9,146.68	47	19,014	19,014	2	3,027.77	9,146.68	47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수 (동)	건축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수 (동)	건축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교 양 시 설	18,000	8,066				23	18,000	8,066				23	
편 의 시 설	4,180	3,913	1	93.23	93.23		4,080	3,813	1	93.23	93.23		
관 리 시 설	112	112					112	112					
녹지 / 기타	171,222.7						164,768.7						
공원시설물 (면적40%)	$(54,374㎡ / 238,748.7㎡) \times 100\% = 22.77\%$						$(60,828㎡ / 238,748.7㎡) \times 100\% = 25.48\%$						
건폐율(10%)	$(3,121.0㎡ / 238,748.8㎡) \times 100\% = 1.31\%$						$(3,121.0㎡ / 238,748.8㎡) \times 100\% = 1.31\%$						

나.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축면적 (㎡)	연면적	공작물 (기)	건축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기	반	시	합계			238,748.7	54,374		3	3,121.0	9,239.91	80		3	3,121.0	9,239.91	79		
			소계			22,616	19,665												
			도로			20,603	17,652 (2,951)												
			가	6개소	1,808	2,013													
			가-1	번2동 148-383일대	250	250					가-1	번2동 148-383일대	250						
			가-2	번2동 산12일대	352	352					가-2	번2동 산12일대	352						
			가-3	번2동 산25-2일대	124	124					가-3	번2동 산25-2일대	124						
			가-4	미이동 산1-5일대	379	379					가-4	미이동 산1-5일대	379						
			가-5	번2동 산5일대	472	472					가-5	번2동 산5일대	472						
			가-6	번2동 314일대	231	231					가-6	번2동 314일대	231						
조	경	시	가-7	번2동 산23일대	205	205													
			소계															9	
			파고라 ㉓	3개소							㉓	2개소							2

구분	시설명	번						경						변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등)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등)	건 축 물(㎡)		공작물 (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③-1	광장 내 (가-6)							1	③-1	광장 내 (가-6)								1	
		③-2	광장 내 (가-6)							1	③-2	광장 내 (가-6)								1	
		③-3	체력단련장내 (라)							1	③-3										
		②	6개소							7	②	6개소								7	
		②-1	번2동 산16일대							1	②-1	번2동 산16일대								1	
		②-2	미093동 산25-44일대							1	②-2	미093동 산25-44일대								1	
정 자		②-3	휴게소내 (나-1)							1	②-3	휴게소내 (나-1)								1	
		②-4	번2동 산23일대							1	②-4	번2동 산23일대								1	
		②-5	체력단련장내 (라)							2	②-5	체력단련장내 (라)								2	
		②-6	휴게소내 (나-9)							1	②-6	휴게소내 (나-9)								1	
		소 계			1010	1010								1,395	1,395						
		나	9개소		864	864					나	10개소		1,249	1,249						
합	양 양 시 설	나-1	번2동 산20-1일대	552	552					나-1	번2동 산20-1일대		552	552							
		소 계			1010	1010															

구분	시설명	번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원면적 (㎡)	구조	규모 (등)	건축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원면적 (㎡)	구조	규모 (등)	건축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나-4	번2동 산25-2일대	107	107						나-4	번2동 산25-2일대	107	107						
		나-6	미아9동 산25-21일대	107	107						나-6	미아9동 산25-21일대	107	107						
		나-7	미아9동 산25-51일대	8	8						나-7	미아9동 산25-51일대	8	8						
		나-8	미아9동 산25-51일대	8	8						나-8	미아9동 산25-51일대	8	8						
		나-9	미아9동 산25-51일대	58	58						나-9	미아9동 산25-51일대	58	58						
		나-1 0	미아9동 산25-38일대	8	8						나-1 0	미아9동 산25-38일대	8	8						
		나-1 1	미아9동 산25-38일대	8	8						나-1 1	미아9동 산25-38일대	8	8						
		나-1 2	미아9동 산25-38일대	8	8						나-1 2	미아9동 산25-38일대	8	8						
											나-1 3	미아9동 산25-14일대	385	385						
		바	2개소	146	146						바	2개소	146	146						
	야외 휴게소	바-1	번2동 산23일대	83	83						바-1	번2동 산23일대	83	83						
		바-2	번2동 산23일대	63	63						바-2	번2동 산23일대	63	63						
	소 계			3,093	3,093								3,093	3,093						
	합 계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축물(㎡)		공작물 (기)				
								건축면적	연면적					
시설	어린이 놀이터	다	5개소	3,093	3,093									
		다-1	번2동 산5일대	494	494									
		다-2	미아3동 산25-44일대	733	733									
		다-3	미아9동 산9-3일대	1,085	1,085									
		다-4	번2동 산23일대	422	422									
소계	체력 단련장	다-5	번2동 산25-2일대	359	359									
				18,515	18,515	2	2	3,027.77	9,146.68	47				
		라	미아3동 산25-14일대	621	621									
		마	3개소	12,543	12,543			441	441					
		마-1	번2동 산23-1일대	11,732	11,732			441	441	4				
안보 시설	다목적 운동장	마-2	번2동 산5일대	266	266									
		마-3	번2동 산17일대	545	545									

구분	시설명	번						경						전						번						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등)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등)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등)	건 축 물(㎡)		공작물 (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구분	시설명	번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등)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등)	건 축 물(㎡)		공작물 (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설																						
		자-2	번2동 산14-1일대	205	205						자-2	번2동 산14-1일대	205	205								
		자-3	번2동 산17-1일대	57	57						자-3	번2동 산17-1일대	57	57								
	주차장	차	4개소	3,291	3,024						차	4개소	3,291	3,024								
		차-1	번2동 317일대	2,037	1,770						차-1	번2동 317일대	2,037	1,770								
		차-2	번2동 315-15일대	282	282						차-2	번2동 315-15일대	282	282								
		차-3	번2동 314일대	604	604						차-3	번2동 314일대	604	604								
		차-4	번2동 23-14일대	368	368						차-4	번2동 23-14일대	368	368								
		11	4개소	427	427						11	4개소	427	427								
화장실	11-1	미이3동 산25-44일대	371	371	철근 조	지상 1층	93.23	93.23		11-1	미이3동 산25-44일대	371	371	철근 조	지상 1층	93.23	93.23					
	11-2	번동 산23-17일대	22	22						11-2	번동 산23-17일대	22	22									
	11-3	번동 산23-32	17	17						11-3	번동 산23-32	17	17									
	11-4	번동 산12	17	17						11-4	번동 산12	17	17									
데크 승터	터	2개소	200	200						터	1개소	100	100									

설

구분	시설명	번						번						후				비고
		경			전			변			경			후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타-1	변동 336-2공	100	100					타-1	변동 336-2공	100	100					
		타-2	변동 336-2공	100	100					타-2								
관리 시설	소계			112	112							112	112					
	창고		변동 산23	112	112						변동 산23	112	112					
누계 및 기타				171,222.7								164,768.7						

4. “라” 지구(성북지역)
가. 시설별 총괄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건축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건축면적 (㎡)	연면적 (㎡)				
기 반 시 설	합 계	220,878.3	62,579	12	5,032.16	7,130.53	9	220,878.3	62,579	12	5,032.16	7,130.53	9		
	소 계	31,184	26,973					31,184	26,973						
		도 로	28,685	24,474 (4,211)					28,685	24,474 (4,211)					
		광 장	2,499	2,499					2,499	2,499					
조경시설		532	532				8	532	532				8		
휴양시설		2,701	2,701	1	200.0	200.0		2,701	2,701	1	200.0	200.0			
유흥시설		7,070	7,070		300.0	300.0	1	7,070	7,070		300.0	300.0	1		
운동시설		21,204	21,204	2	3,247.99	3,893.00		21,204	21,204	2	3,247.99	3,893.00			
교양시설		1,707	1,707	2	702.17	1,959.53		1,707	1,707	2	702.17	1,959.53			
편익시설		1,672	1,672	3	172.0	368.0		1,672	1,672	3	172.0	368.0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공작물 (기)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건축면적 (㎡)	연면적 (㎡)		
관리시설	720	720		4	410.0	410.0		
녹지,기타	154,088.3							
공원시설을 응원(40%)	$(62,579㎡ / 220,878.3㎡) \times 100\% = 28.33\%$			$(62,579㎡ / 220,878.3㎡) \times 100\% = 28.33\%$				
건폐율(10%)	$(5,032.16㎡ / 220,878.3㎡) \times 100\% = 2.28\%$			$(5,032.16㎡ / 220,878.3㎡) \times 100\% = 2.28\%$				

나.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동)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동)	건 축 물(㎡)		공작물 (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기	합 계			220,878.3	62,579	11	4,728.44	6,634.28	9			220,878.3	62,579	11	4,728.44	6,634.28		
	소 계			31,184	26,973							31,184	26,973					
	도 로			28,685	24,474 (4,211)							28,685	24,474 (4,211)					
	나	나	2개소	2,499	2,499				나	2개소	2,499	2,499						
진입광장																		
	나-2	하월곡동 산2-1	76	76					나-2	하월곡동 산2-1	76	76						
	나-3	하월곡동 산2-1	2,423	2,423					나-3	하월곡동 산2-1	2,423	2,423						
	소 계			532	532			8			532	532						
조경시설		①	4개소						4 ①	4개소								
	①-1	상월곡동 101-6						1 ①-1	상월곡동 101-6									
	①-2	상월곡동 101-8						1 ①-2	상월곡동 101-8									
	①-3	상월곡동 산1-1						1 ①-3	상월곡동 산1-1									
	①-4	하월곡동 228-4						1 ①-4	하월곡동 228-4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 축 물(㎡)		공작물 (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정자	②	4개소							4	②	4개소							
	②-1	장위동 신3-86							1	②-1	장위동 신3-86							
	②-2	장위동 신3-104							1	②-2	장위동 신3-104							
	②-3	장위동 신3-104							1	②-3	장위동 신3-104							
	②-4	하월곡동 신2-1							1	②-4	하월곡동 신2-1							
아생화단지	가	하월곡동 신2-1	532	532						가	하월곡동 신2-1	532	532					
소 계				2,701	2,701		1	200.0	200.0			2,701	2,701		1	200.0	200.0	
소공원	다	장위동 신3-104	274	274						다	장위동 신3-104	274	274					
노인정	1	장위동 신3-92	540	540			1	200.0	200.0	1	장위동 신3-92	540	540		1	200.0	200.0	
휴게소	라	5개소	1,887	1,887						라	5개소	1,887	1,887					
	라-1	장위 신3-104	418	418						라-1	장위 신3-104	418	418					
	라-4	하월곡동 신2-1	468	468						라-4	하월곡동 신2-1	468	468					

한양시정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 축 물(㎡)		공작물 (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라-1 0	하월곡동 산2-1	710	710					라-1 0	하월곡동 산2-1	710	710							
		라-1 1	장위동 산3-92	125	125					라-1 1	장위동 산3-92	125	125							
		라-1 4	장위동 산3-92	166	166					라-1 4	장위동 산3-92	166	166							
		소 계			7,070	7,070			300.0	300.0	1		7,070	7,070			300.0	300.0	1	
유 한 시 설	어린이 놀이터	마	4개소	7,070	7,070					마	4개소	7,070	7,070							
		마-1	하월곡동 산2-1	866	866					마-1	하월곡동 산2-1	866	866					300.0	300.0	1
		마-2	하월곡동 산2-140	705	705					마-2	하월곡동 산2-140	705	705							
		마-3	상월곡동 산1-1	993	993					마-3	상월곡동 산1-1	993	993							
		마-5	하월곡동 228-4	4,506	4,506					마-5	하월곡동 228-4	4,506	4,506							
유 한 비 유 시 설	소 계			21,204	21,204		2	3,247.99	3,893.00			21,204	21,204		2	3,247.99	3,893.00			
		체육관	하월곡동 산2-1	3,985	3,985	RC	1	1,505.13	2,041.26	2	하월곡동 산2-1	3,985	3,985	RC	1	1,505.13	2,041.26			
		사	2개소	2,622	2,622					사	2개소	2,622	2,622							
유 한 비 유 시 설	테니스장	사-1	하월곡동 산2-1	1,953	1,953					사-1	하월곡동 산2-1	1,953	1,953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축물(㎡)		규모 (동)	구조	건축물(㎡)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인공시설	배드민턴장	사-2	하월곡동 산2-1	669	669											
		아	1개소	343	343											
		아-4	하월곡동 산2-1	343	343											
		자	2개소	11,880	11,880											
	축구장	자-1	하월곡동 산2-1	5,441	5,441											
		자-2	상월곡동 산1-1	6,439	6,439											
	농구장	차	하월곡동 산2-1	547	547											
		12	하월곡동 산2-86	1,827	1,827	철근 철골	1	1,742.86	1,851.74	1	철근 철골	1,742.86	1,851.74			
	소계				1,707	1,707		2	702.17	1,959.53	2		702.17	1,959.53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문화의집)	8	하월곡동 산2-1	1,046	1,046	RC	1	398.45	1,463.28	1	RC	398.45	1,463.28		
본심 어린이집		9	상월곡동 산1-1	661	661		1	303.72	496.25	1		303.72	496.25			
소계			1,672	1,672		3	172.0	368.0	3		172.0	368.0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축물(㎡)		공작물 (기)	구조	규모 (동)	건축물(㎡)		공작물 (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시설	전망대	4	상월곡동 산1-1	545	545		1	64.0	128.0				1	64.0	128.0		
		타	4개소	968	968												
		타-1	하월곡동 산2-1	54	54												
		타-2	하월곡동 산2-73	337	337												
	주차장	타-3	장위동 산3-92	203	203												
		타-4	장위동 산3-113	374	374												
		5	2개소	159	159		2	108.0	240.0				2	108.0	240.0		
		화장실	5-1	장위동 산3-86	24	24		1	24.0	24.0				1	24.0	24.0	
소계	5-2	하월곡동 산2-1	135	135		1	84.0	216.0				1	84.0	216.0			
			720	720		4	410.0	410.0				4	410.0	410.0			
관리시설	6	3개소	684	684		3	374.0	374.0				3	374.0	374.0			
	6-1	하월곡동 산2-1	540	540		1	264.0	264.0				1	264.0	264.0			
	6-2	상월곡동 산1-1	108	108		1	74.0	74.0				1	74.0	74.0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축물(㎡)		공적물 (가)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축물(㎡)		공적물 (가)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6-3	상월곡동 산1-1	36	36		1	36.0	36.0		6-3	상월곡동 산1-1	36	36		1	36.0	36.0		
	창고	7	하월곡동 산2-1	36	36		1	36.0	36.0		7	하월곡동 산2-1	36	36		1	36.0	36.0		
	녹지 및 기타			154,088.3									154,088.3							

다. 도로조서
“가” 지구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합계				14,738	37,581 (4,685)				
당초	대로	3류	1	25	445	(3,325)	도시계획도	8-221, 공원경계	83,공원경계	
당초	중로	3류	3	12	175	(1,360)	도시계획도	바-4	광장 가-9	
당초	소로	소계			2,878	13,834				
당초		3	1	5	456	1441	연결로	광장 가-1	산책로 75	
당초		3	2	5	499	2490	연결로	소로 3-3	광장 가-6	
당초		3	3	6	135	924	연결로	녹지	광장 가-1	
당초		3	4	4	94	495	연결로	야생초화원	소로 3-3	
당초		3	5	4	9	37	연결로	주차장 버	소로 3-4	
당초		3	6	4	45	648	연결로	소로 3-2	소로 3-3	
당초		3	7	4	37	152	연결로	소로 3-6	미술관	
당초		3	8	5	494	2502	연결로	소로 3-14	소로 3-3	
당초		3	9	3	81	241	연결로	미술관	소로 3-11	
당초		3	10	3.6	48	116	연결로	소로 3-8	소로 3-11	
당초		3	11	4.5	51	217	연결로	소로 3-9, 10	소로 3-2	
당초		3	12	4	247	982	연결로	휴게소 가-5	휴게소 가-2	
당초		3	13	4	223	878	연결로	광장 가-6	소로 3-1	
당초		3	14	4.5	91	424	진입로	광장 가-6	소로 3-8	
당초		3	15	6	368	2287	진입로	부지경계	주차장 어	
당초	산책로	소 계			11,240	19,062				
당초			1	2.5	270	532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 4	
당초			2	2.9	29	90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 1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산책로		3	1.5	127	186	산책로	산책로 2	산책로 10	
당초			4	1.5	157	228	산책로	산책로 3	운동시설 너-6	
당초			5	1.5	3	7	산책로	산책로 4	파고라	
당초			6	1.5	43	60	산책로	산책로 4	산책로 12	
당초			7	1.5	13	32	산책로	산책로 4	운동시설 너-4	
당초			8	1.2	32	41	산책로	산책로 4	산책로 10	
당초			9	1.2	21	54	산책로	산책로 4	산책로 10	
당초			10	1.5	255	387	산책로	산책로 12	전망대	
당초			11	1.5	22	33	산책로	산책로 12	운동시설 너-4	
당초			12	2	289	508	산책로	산책로 12	산책로 15	
당초			13	1	78	97	산책로	휴게시설 자-8	운동시설 너-6	
당초			14	1.3	54	75	산책로	운동시설 너-6	산책로 15	
당초			15	1.5	114	175	산책로	부지경계	휴게시설 자-6	
당초			16	1.5	40	57	산책로	산책로 15	산책로 17	
당초			17	1.5	201	344	산책로	산책로 15	부지경계	
당초			18	2	56	111	산책로	산책로 134	산책로 17	
당초			19	1.5	19	38	산책로	산책로 17	휴게소 자-7	
삭제			20	-	-	-	-	-	-	
당초			21	1.2	108	130	산책로	산책로 17	휴게소 자-6	
삭제			22	-	-	-	-	-	-	
당초			23	1.5	4	9	산책로	휴게소 자-6	운동시설 어-1	
당초			24	1.2	24	29	산책로	산책로 17	휴게소 자-6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25	1.5	20	30	산책로	산책로 10	휴게소 자-5	
당초			26	1.5	230	344	산책로	산책로 10	소로 3-12	
당초			27	1.5	107	160	산책로	광장 가-7	산책로 134	
당초			28	1.5	24	34	산책로	산책로 27	산책로 134	
당초			29	1.5	16	29	산책로	산책로 134	산책로 30	
당초			30	1.5	25	41	산책로	산책로 33	산책로 29	
당초			31	1.5	2	3	산책로	산책로 30	녹지	
당초	산책로		32	2	29	48	산책로	산책로 34	부지경계	
당초			33	1.5	7	11	산책로	녹지	산책로 34	
당초			34	1.5	185	265	산책로	데크쉼터 카-2	산책로 31	
당초			35	1.5	172	254	산책로	저류지	소로 3-12	
당초			36	1.5	27	37	산책로	저류지	광장 가-3	
당초			37	2	48	99	산책로	광장 가-3	데크쉼터 카-4	
당초			38	1.5	49	72	산책로	광장 가-3	소로 3-1	
당초			39	1.5	87	129	산책로	데크쉼터 카-4	데크쉼터 카-5	
당초			40	1.5	100	150	산책로	소로 3-12	산책로 35	
당초			41	1.2	45	90	산책로	광장 가-1	소로 3-1	
당초			42	1.2	44	53	산책로	광장 가-1	소로 3-1	
당초			43	1.5	18	28	산책로	광장 가-1	산책로 45	
당초			44	2	16	32	산책로	광장 가-1	산책로 45	
당초			45	2.8	31	89	산책로	산책로 43, 44	소로 3-1	
당초			46	1.5	21	32	산책로	산책로 48	산책로 45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47	1.5	33	69	산책로	광장 가-1	산책로 46	
당초			48	2	57	118	산책로	산책로 49	소로 3-1	
당초			49	2	46	92	산책로	광장 가-1	소로 3-1	
당초			50	2	52	104	산책로	광장 가-1	소로 3-1	
당초			51	2	69	111	산책로	광장 가-1	방문자센터	
당초			52	2	8	15	산책로	산책로 53	소로 3-3	
당초			53	2	49	100	산책로	소로 3-3	소로 3-1	
당초			54	2.5	15	37	산책로	소로 3-8	구한옥	
당초			55	1.2	25	28	산책로	구한옥	광장 가-2	
당초			56	2	33	66	산책로	광장 가-2	광장 가-6	
당초			57	1.5	93	141	산책로	광장 가-2	광장 가-9	
당초			58	1.5	24	34	산책로	산책로 57	수변쉼터 타-4	
당초		산책로	59	1.5	16	25	산책로	산책로 57	산책로 58	
당초			60	2	5	9	산책로	소로 3-8	광장 가-9	
당초			61	1.5	40	67	산책로	산책로 57	월영연못	
당초			62	2.3	6	15	산책로	소로 3-8	산책로 63	
당초			63	1.5	118	176	산책로	광장 가-9	소로 3-8	
당초			64	1.5	14	20	산책로	산책로 63	월영연못	
당초			65	1.5	12	18	산책로	월영연못	월영연못	
당초			66	2	7	15	산책로	소로 3-6	월영연못	
당초			67	1.5	24	39	산책로	수변쉼터 타-2	소로 3-6	
당초			68	1.5	34	51	산책로	수변쉼터 타-4	수변쉼터 타-5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69	2	17	33	산책로	수변쉼터 타-2	수변쉼터 타-1	
당초			70	1.8	6	10	산책로	소로 3-8	산책로 69	
당초			71	2.4	4	11	산책로	소로 3-8	수변쉼터 타-1	
당초			72	1.2	39	46	산책로	소로 3-10	창포원	
당초			73	1.2	40	48	산책로	창포원	산책로 74	
당초			74	2	52	106	산책로	창포원	소로 3-11	
당초			75	2	198	457	산책로	소로 3-13	광장 가-4	
당초			76	2.6	5	13	산책로	소로 3-11	소로 3-2	
당초			77	1.5	15	36	산책로	소로 3-2	월영연못	
당초			78	2	19	40	산책로	산책로 35	데크쉼터 카-3	
당초			79	1.5	72	107	산책로	문화센터	광장 가-6	
당초			80	1.5	118	177	산책로	광장 가-8	산책로 79	
당초			81	1.5	80	122	산책로	광장 가-8	전망대	
당초			82	1.5	7	10	산책로	광장 가-8	문화센터	
당초			83	2	27	54	산책로	소로 3-14	광장 가-6	
당초			84	2	39	78	산책로	소로 3-14	데크쉼터 카-6	
당초	산책로		85	1.5	32	45	산책로	산책로 86	어린이놀이터 파-1	
당초			86	1.5	67	100	산책로	광장 가-6	산책로 87	
당초			87	2	362	656	산책로	부지경계	휴게소 자-1	
당초			88	2	35	73	산책로	산책로 87	산책로 90	
당초			89	1.5	40	57	산책로	산책로 90	다목적 운동장 가-2	
당초			90	1.5	223	335	산책로	산책로 92	산책로 87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91	1.5	87	129	산책로	산책로 90	산지	
당초			92	2.5	305	619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 99	
당초			93	1.5	160	243	산책로	산책로 92	중로 3-1	
당초			94	2	199	401	산책로	산책로 96	산책로 92	
당초			95	1.5	63	95	산책로	산책로 94	산책로 99	
당초			96	2	180	369	산책로	산책로 97	부지경계	
당초			97	2	72	164	산책로	녹지	산책로 99	
당초			98	1.5	38	57	산책로	산책로 98	산책로 97	
당초			99	2	548	1096	산책로	산책로 92	산책로 120	
당초			100	1.5	208	310	산책로	산책로 87	산책로 98	
당초			101	1.3	191	272	산책로	산책로 99	산책로 87	
당초			102	1.5	245	363	산 책 로	산책로 87	휴게소 자-3	
당초			103	2	53	99	산 책 로	휴게소 자-4	산책로 70	
당초			104	1.5	85	127	산 책 로	휴게소 자-4	운동시설 너-8	
당초			105	1.2	35	40	산 책 로	산책로 104	운동시설 너-8	
당초			106	1.2	55	66	산 책 로	운동시설 너-8	산책로 108	
당초			107	1.2	20	28	산 책 로	산책로 106	운동시설 너-8	
당초			108	1.5	120	173	산 책 로	휴게소 자-2	운동시설 너-1	
당초			109	2	332	567	산 책 로	산책로 108	녹지	
당초			110	1.5	173	260	산 책 로	휴게소 자-2	산책로 99	
당초			111	1.5	25	38	산 책 로	운동시설 너-1	산책로 109	
당초	산책로		112	1.5	37	60	산 책 로	산책로 111	산책로 109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113	2	73	123	산책로	산책로 109	운동시설 너-1	
당초			114	1.2	26	31	산책로	산책로 115	산책로 113	
당초			115	1.5	43	65	산책로	산책로 113	운동시설 너-2	
당초			116	1	7	10	산책로	운동시설 너-2	산책로 117	
당초			117	1	25	25	산책로	녹지	산책로 109	
당초			118	1.2	99	115	산책로	산책로 109	산책로 120	
당초			119	1.2	143	173	산책로	산책로 121	산책로 118	
당초			120	1.8	270	383	산책로	녹지	산책로 121	
당초			121	1	48	48	산책로	산책로 119	산책로 109	
당초			122	1.5	104	152	산책로	산책로 120	녹지	
당초			123	1.2	132	171	산책로	산책로 123	데크쉼터 카-7	
당초			124	1.5	75	111	산책로	산책로 123	데크쉼터 카-7	
당초			125	1.5	24	46	산책로	산책로 123	산책로 124	
당초			126	1.2	15	19	산책로	산책로 122	산책로 121	
당초			127	1	40	40	산책로	녹지	부지경계	
당초			128	2	126	256	산책로	산책로 99	운동시설 너-7	
당초			129	1.5	38	67	산책로	산책로 128	부지경계	
당초			130	1.5	26	38	산책로	산책로 99	부지경계	
당초			131	2	77	167	산책로	산책로 99	산책로 133	
당초			132	2	186	407	산책로	부지경계	부지경계	
당초			133	2	113	227	산책로	산책로 132	산책로 96	
당초			134	2.3	341	716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 18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135	2	166	316	산책로	소로 3-8	소로 3-8	
당초			136	2.5	125	350	산책로	산책로 109	운동시설 러-1	
당초			137	1.5	30	45	산책로	산책로 136	산책로 115	

다. 도로조서
 “나” 지구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합 계				3,492	5,737 (8,560)				
당초	중로	소 계			557	(6,633)				
당초		1류	1	20	544	(6,455)	도시계획도	주차장 타-4	산책로19	
당초		3류	1	12	13	(178)	도시계획도	번동 148-429도	광장 가-1	
당초	소로	소 계			519	661 (1,927)				
당초		3류	1	6	162	661	시설연결로	소로 3-2	휴게소 나-7	
당초		3류	2	6	357	(1,927)	도시계획도	중로 1-1	산책로9	
당초	산책로	소 계			2,429	5,076				
당초			3	4	126	343	산책로	소로3-1	휴게소 나-7	
당초			6	2	58	110	산책로	광장 가-4	산책로8	
당초			7	2	32	66	산책로	광장 가-4	산책로8	
당초			8	2	230	459	산책로	주차장 타-3	산책로9	
당초			9	2	268	590	산책로	소로3-2	산책로26	
당초			10	2	82	164	산책로	어린이놀이터 다-1	산책로9	
당초			11	2	132	265	산책로	보태닉가든 자	산책로9	
당초			12	2	70	137	산책로	산책로11	보태닉가든 자	
당초			13	2	22	64	산책로	122-59임	산책로9	
당초			14	2	58	112	산책로	소로 3-2	체력단련장 라-4	
당초			15	2	14	30	산책로	도자구역	보태닉가든 자	
당초			19	2~2.5	57	123	산책로	중로 1-1	다목적운동장 마	
당초			20	2	189	375	산책로	산책로 19	도자구역 산책로 20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21	2	137	255	산책로	체력단련장 라-2	산책로26	
당초			22	2	48	62	산책로	산책로25	산책로26	
당초			23	2	27	51	산책로	산책로26	산25-52공	
당초			24	2	28	51	산책로	산책로25	산책로26	
당초			25	2	160	326	산책로	산책로20	산책로26	
당초			26	2	137	276	산책로	소로 3-2	산책로21	
당초			27	2	19	39	산책로	산책로25	산책로29	
당초			28	2	31	64	산책로	소로 3-2	산25-62묘	
당초			29	2	49	78	산책로	산책로27	산책로25	
당초			30	4	88	327	산책로	생태습지원 차	보태닉가든 자	
당초			31	1	73	73	산책로	휴게소 나-9	휴게소 나-8	
당초			32	1	13	13	산책로	광장 가-1	휴게소 나-8	
당초			33	2	5	10	산책로	휴게소 나-4	어린이놀이터 다-2	
당초			34	2	249	498	산책로	광장 가-2	휴게소 나-4	
당초			35		27	115	산책로	중로 3-1	광장 가-1	

다. 도로조서
“다” 지구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합 계				6,421	17,652 2,951				
변경	합 계				10,365	23,527 2,951				
당초	중로	소 계			178	1,297				
당초		3류	1	12~ 15	144	864	도시계획도	산1-4,공원경계	도자구역	
당초		3류	2	12	34	433	도시계획도	광장 가-1	소로2-1	
당초	소로	소 계			777	4,655 1,654				
당초		1류	1	10	190	1,931	진 입 로	변2동 637-7	변2동 산25-8	
당초		1류	2	11	20	230	진 입 로	소로 1-1	다목적운동장 마-1	
당초		2류	1	6	285	1,654	도시계획도	중로 3-2종점	산책로 1종점	
당초		2류	2	8	282	2,494	시설연결로	소로 3-1종점	중로 3-2시점	
당초		소 계			6,100	12,997				
변경	산책로	소 계			9,410	18,872				
당초			1	2	109	249	산책로	광장 가-4	도자구역	
변경			1	2	153	323	산책로	도자구역	다목적운동장 마-2	
당초			2	2	94	185	산책로	광장 가-4	산책로1	
변경			2	2	95	188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 1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3	2	122	268	산책로	광장 가-4	부지경계	
당초			4	2	37	77	산책로	다목적운동장 마-2	산책로5	
변경			4	2	136	260	산책로	다목적운동장 마-2	도자구역	
당초			5	2	148	301	산책로	부지경계	도자구역	
변경			5					삭제	삭제	
당초			6	2	103	220	산책로	부지경계	도자구역	
당초			7	2	135	394	산책로	광장 가-2	도자구역	
변경			7	2	73	145	산책로	광장 가-2	산책로9	
당초			8	1.5	39	83	산책로	광장 가-2	산책로12	
변경			8	2	100	200	산책로	산책로 75	광장 가-2	
당초			9	2	74	149	산책로	산책로 12	산책로7	
변경			9	2	80	160	산책로	산책로 75	산책로 7	
당초			10	2	55	112	산책로	산책로7	다목적운동장 마-3	
당초			12	2	394	809	산책로	부지경계	도자구역	
변경			12	2	242	483	산책로	산책로 75	도자구역	
당초			13	2	210	418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12	
변경			13	2	122	244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 74	
당초			14	2	72	145	산책로	산책로13	번동 산19-10	
당초			15	2	80	318	산책로	산책로31	번동 산19-10	
변경			15	2	81	162	산책로	산책로 31	도자구역	
당초			16	2	65	127	산책로	산책로15	산책로15	
변경			16	2	28	56	산책로	산책로 17	도자구역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17	2	52	113	산책로	산책로18	산책로15	
변경			17	2	380	815	산책로	도자구역	도자구역	
당초			18	2	73	132	산책로		도자구역	
당초			20	2	177	361	산책로	산책로13	소로 2-1	
변경			20	2	20	39	산책로	산책로 75	도자구역	
당초			21	2	40	99	산책로	산책로12	산책로22	
당초			22	2	136	292	산책로	산책로23	산책로12	
당초			23	2	94	191	산책로	산책로20	산책로1	
당초			24	2	39	75	산책로	산책로23	번동 산 19-11	
당초			25	2	75	132	산책로	산책로20	산책로23	
당초			26	2	64	125	산책로	산책로20	어린이놀이터 다-2	
당초			27	2	33	66	산책로	도자구역	산책로20	
당초	산책로		28	2	39	77	산책로	도자구역	어린이놀이터 다-2	
당초			29	2	8	16	산책로	산책로18	도자구역	
당초			30	2	47	92	산책로	산책로31	도자구역	
당초			31	2	13	40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32시점	
당초			32	2	30	69	산책로	산책로31	도자구역	
변경			33	2	11	22	산책로	산책로 17	번동 산 19-10	
당초			34	2	37	79	산책로	유아숲체험원 겨	도자구역	
당초			35	2	32	89	산책로	산책로32	도자구역	
당초			36	2	85	168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40	
변경			36	2	200	398	산책로	부지경계	강북웰빙 스포츠센터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37	2	378	788	산책로	산책로40	산책로54	
변경			37	2	365	729	산책로	산책로 72	산책로 54	
당초			38	2	40	81	산책로	산책로40	산책로37	
당초			39	2	38	78	산책로	산책로37	산책로40	
당초			40	2	549	1,098	산책로	강북웰빙	산책로54	
								스포츠센터		
변경			40	2	327	654	산책로	산책로 72	산책로 54	
당초			41	1.5	96	144	산책로	소로 1-1	광장 가-3	
당초			42	1.5	37	58	산책로	소로 1-1	산책로41	
당초			43	2	140	294	산책로	주차장 차-3	대지경계	
변경			43	2	59	118	산책로	산책로 72	대지경계	
당초			44	1.5	149	288	산책로	산책로43	산책로45	
변경			44	1.5	17	29	산책로	산책로 72	산책로 45	
당초			45	1.5	119	179	산책로	산책로40	산책로64	
당초			46	1.5	14	21	산책로	산책로45	족구장 마	
당초			47	1.5	20	30	산책로	족구장 마	산책로 64	
당초			48	2	72	138	산책로	산책로49	산책로40	
당초			49	2.8	137	382	산책로	산책로64	산책로48	
당초			50	1.8	37	66	산책로	광장 가-7	아외휴게소 바-1	
당초			51	2	44	87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52	
당초			52	2	99	196	산책로	산책로48	산책로53	
당초			53	2	37	75	산책로	산책로54	어린이놀이터	
									다-4	
당초			54	2	100	175	산책로	산책로37	중로 3-2	
당초			55	2	65	142	산책로	어린이놀이터	체력단련장 라	
								다-2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56	2	19	35	산책로	산책로 55	휴게소 나-1	
당초			57	1.8	191	349	산책로	중로 3-2	휴게소 나-9	
당초			58	2	92	183	산책로	산책로62	휴게소 나-6	
당초			61	2	38	67	산책로	후계소 나-9	미아3동 산25-38	
당초			62	2	6	12	산책로	285-110 차	산책로 61	
당초			63	2	36	82	산책로	도자구역	산책로 26	
당초			64	3	121	433	산책로	산책로 49	주차장 차-4	
당초			65	3	110	342	산책로	미아동 258-56	산 19-106	
당초			66	2	22	44	산책로	산책로1	다목적운동장 마-2	
당초			67	2	346	672	산책로	산책로40	유아숲체험원-2	
변경			67	2	53	106	산책로	산책로 72	산책로 72	
당초			68	2	156	312	산책로	산책로 65	공원경계	
당초			69	2.5	27	68	산책로	야외휴게소 바-1	산책로 40	
변경			69	2	173	346	산책로	315-15 임	산책로 72	
당초			70	2	4	7	산책로	산책로 13	화장실 11-4	
변경			70	2	34	68	산책로	가-6	산책로 69	
변경			71	2	35	70	산책로	148-519 공	산책로 72	
변경			72	2	352	725	산책로	산책로 69	도자구역	
변경			73	2	209	418	산책로	산책로 72	강북웰빙 스포츠센터	
변경			74	2	421	864	산책로	도자구역	부지경계	
변경			75	2	147	294	산책로	산책로 74	산책로 76	
변경			76	2	55	109	산책로	산책로 75	산책로 74	
변경			77	1.8	1,013	1,936	산책로	산책로 6	산책로 7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변경			78	1.8	1,081	1,975	산책로	산책로 72	산25-24묘	
변경			79	1.8	14	21	산책로	광장 가-4	산책로 2	
변경			80	2	37	62	산책로	휴게소 나-13	체력단련장 라	
변경			81	2	91	184	산책로	산책로 9	도자구역	
변경			82	2	129	230	산책로	산책로 90	다목적운동장 마-3	
변경			83	2	79	115	산책로	산책로 9	약수터 자-2	

다. 도로조서
“라” 지구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합 계				6,715	24,474 (4,211)				
당초	중로	소 계		-	39	534				
당초		2	1	15	39	534	간선도로	부지서측	부지동측	
당초	소로	소 계			2,879	15,647 (4,211)				
당초		1	3	10	269	(2,434)	주진입로	소1-13종점	소1-4기점	
당초		1	4	10	83	801	주진입로	소1-3종점	소1-5기점	
당초		1	5	10	89	781	주진입로	소1-4	소1-6	
당초		1	6	10	160	1,520	주진입로	부지남측경계	소3-13기점	
당초		1	9	6~10	475	4,481	주진입로	축구장(자-1)	소3-8	
당초		3	2	6	105	(428)	주진입로	부지북측경계	소1-3	도시계획 도로
당초		3	7	6	153	705	주진입로	부지북측경계	부지북측경계	
당초		3	8	6	167	1,702	주진입로	부지북동측경계	부지동측경계	
당초		3	9	6	12	61	주진입로	부지서측경계	산3-18	
당초		3	10	6	54	322	주진입로	부지동측경계	소3-8	
당초		3	11	6	71	379	주진입로	부지동측경계	소1-9	
당초		3	13	4	318	1,112	주진입로	소1-6종점	산3-26	
당초		3	14	4	257	957	주진입로	소3-8	전망대(4)	
당초		3	15	4	64	191	주진입로	소로1-9	도자구역	
당초		3	16	4	67	(264)	주진입로	부지동남측경계	소3-11	도시계획 도로
당초		1	11	9	104	732	주진입로	소로1-6	도자구역	
당초		1	12	4~12	199	1,460	주진입로	주차장(타-1)	휴게소(라-10)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1	13	10	136	(1,085)	주진입로	산3-19종점	소1-3기점	도시계획 도로
당초		3	17	5	96	443	주진입로	소3-8	장위동 산3-92	
당초	산책로	소 계			3,797	8,293				
당초		3	17	3	187	518	산책로	산3-104공	부지남측경계	
당초		3	18	4	213	746	산책로	부지북측경계	부지경계	
당초		3	19	2	132	434	산책로	소1-13	소3-13	
당초	산책로	3	20	2	33	67	산책로	산3-25	휴게소(라-14)	
당초		3	21	2	62	247	산책로	소1-5	부지남측경계	
당초		3	22	2	61	186	산책로	산3-33	소3-17	
당초		3	23	3	135	244	산책로	산3-17	산3-17	
당초		3	24	3	28	84	산책로	소1-6	주차장 (타-6)	
당초		3	25	2	213	427	산책로	산3-26	산3-33	
당초		3	26	2	168	305	산책로	소3-7	소3-14	
당초		3	27	2	132	261	산책로	산3-31	소3-13	
당초		3	28	2~4	13	46	산책로	정자 (㉔-4)	소3-13	
당초		3	29	2	13	25	산책로	휴게소(라-4)	산3-14	
당초		3	31	1.5	161	242	산책로	상월곡 산1-1	소1-9	
당초		3	32	1.5	40	60	산책로	산3-31	산3-31	
당초		3	33	2	66	126	산책로	소3-14	소3-14	
당초		3	34	2	100	201	산책로	산3-25	소3-14	
당초		3	35	2	158	324	산책로	산3-20	휴게소(라-10)	
당초		3	36	2	14	27	산책로	소1-12	야생화단지(가)	
당초		3	37	2	38	82	산책로	주차장(타-1)	소1-12	
당초		3	38	3	66	152	산책로	데크로드(하-1)	휴게소(라-10)	
당초		3	39	2	55	92	산책로	소1-12	소1-12	
당초		3	40	4	95	257	산책로	소1-12종점	소1-3	
당초		3	41	2	11	17	산책로	체육시설장 (라-9)	정자(㉔-1)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3	42	2	23	46	산책로	휴게소(라-14)	소3-14	
당초		3	43	2	15	31	산책로	산3-25	산3-34	
당초		3	44	2	34	69	산책로	산3-26	소3-13	
당초		3	45	2	31	63	산책로	소1-6	진입광장(나-3)	
당초		3	46	2	284	636	산책로	소1-12	산3-49	
당초		3	47	1.5	11	17	산책로	산3-38	산3-46	
당초	산책로	3	48	2	17	38	산책로	산3-46	산3-47	
당초		3	49	2	25	49	산책로	산3-46	산3-46	
당초		3	50	1.8	41	75	산책로	소3-13	산3-51	
당초		3	51	1.8	61	125	산책로	산3-50	산3-52	
당초		3	52	1.8	186	380	산책로	산3-51	산3-53	
당초		3	53	1.8	22	48	산책로	산3-52	전망대(4)	
당초		3	54	1.5	115	173	산책로	산3-56	산3-31	
당초		3	55	1.5	37	56	산책로	산3-56	소3-14	
당초		3	56	1.8	684	1,285	산책로	전망대(4)	산1-1공	
당초		3	57	1.8	17	32	산책로	산1-1공	산3-56	

◆ 마포구공고 제2026-285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 열람 변경공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68-1번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26년 2월 19일

마 포 구 청 장

1. 공 고 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 열람 변경공고
2. 공고기간: 2026. 2. 19. ~ 2026. 3. 5.
3. 도시관리계획(안) 열람내용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공원명)
				기정	변경후		
기정	공원	어린이공원	마포구 동교동 168-1	3,251	-	' 63. 4. 26.	윗잔다리
변경	공원	문화공원	마포구 동교동 168-1	-	3,251	' 63. 4. 26.	윗잔다리

- 공원 결정(변경) 사유
 - 해당 어린이공원은 상업시설의 중심에 위치하여 어린이들의 이용도가 매우 낮으며 젊은 층의 이용도가 높아 현황에 맞게 문화공원으로 변경
 - 4. 관계도서: 열람장소에 비치
 - 5.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 마포구 환경녹지국 공원녹지과(☎02-3153-9554)
 - 온라인 제출(서울도시공간포털→도시관리계획→열람공고(주민의견제출)→마포구→주민의견서 작성
 - 6.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열람 내용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도시계획시설 (공원:어린이공원) 결정(기정)도



－ 도시계획시설 (공원:문화공원)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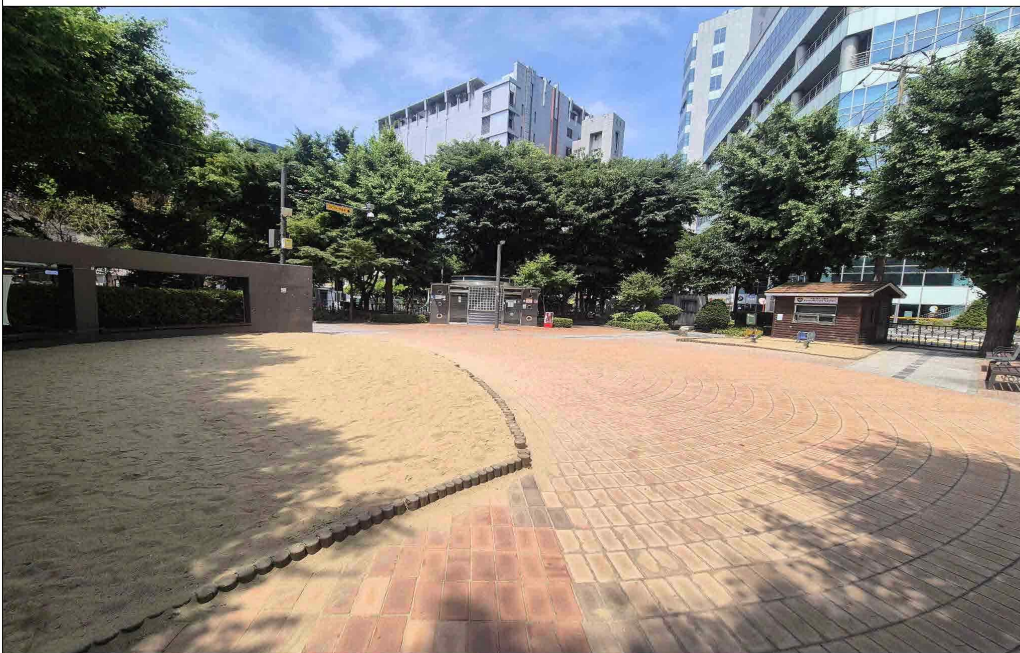


붙임

위치도 및 현황사진



위 치 도



윗잔다리어린이공원 전경

사업소고시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6-5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19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미래한강본부 수상교통사업과	서울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서울시계 내 한강 (강서구 개화동 168-2)	518.4㎡ (부선 1척)	정박대기 (공사용 선박 고정용)	' 26. 2. 12. ~ ' 26. 5. 31.	' 26. 2. 11.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6-5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19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미래한강본부 수상교통사업과	서울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서울시계 내 한강 (행주대교~ 영동대교)	598.41㎡ (기선1척, 부선1척)	서울숲 임시선착장 리모델링 공사 관련 중간작업장으로 함선 이동	' 26. 2. 12. ~ ' 26. 5. 31.	' 26. 2. 11.

기 타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6-6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1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안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국가철도공단 지티엑스본부
 -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78(5층 시설사업처)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732-4
 - 면 적: 3m²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경사로 설치
5. 점용기간: 2026.2.10.~2031.2.9.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